

#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발 연구

이상아·최상미·강명주·양가람·성경하·신시욱·정윤수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강명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양가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

성경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신시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정윤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

---

본 보고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CONTENTS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b>II. 자활역량평가표 현황</b> .....	<b>9</b>
1. 자활역량평가표 변화 .....	11
2. 자활역량평가표 현황 .....	23
<b>III. 국내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b> .....	<b>37</b>
1. 국내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	39
2. 국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	64
3. 소결 : 국내·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검토를 통한 함의 .....	90
<b>IV. 자활역량평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FGI 결과</b> ...	<b>93</b>
1. 조사개요 .....	95
2.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	98
3. 각 평가 항목별 문제점 .....	105
4. 소결 .....	112

---

<b>V.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b> .....	<b>115</b>
1.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	117
2. 정책제언 .....	128
<b>참고문헌</b> .....	<b>133</b>
<b>부 록</b> .....	<b>137</b>

CONTENTS

표목차

〈표 I-1〉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	4
〈표 I-2〉 근로능력평가, 자활역량평가표, 자립역량진단표 비교 .....	5
〈표 II-1〉 영역별 변화 1 : 연령 .....	17
〈표 II-2〉 영역별 변화 2 : 건강 상태 .....	17
〈표 II-3〉 영역별 변화 3 : 직업 이력 .....	18
〈표 II-4〉 영역별 변화 4 : 재량 점수 .....	19
〈표 II-5〉 영역별 변화 5 : 구직 욕구 .....	19
〈표 II-6〉 영역별 변화 6 : 가구 여건 .....	19
〈표 II-7〉 영역별 변화 7 : 가점 사항 .....	20
〈표 II-8〉 연도별 사업 배치 기준의 변화 .....	22
〈표 II-9〉 2023년도 자활역량평가표 .....	24
〈표 II-10〉 연도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비중 추이(2019년도-2022년도) .....	25
〈표 II-11〉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1) .....	26
〈표 II-12〉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2) .....	27
〈표 II-13〉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3) .....	28
〈표 II-14〉 항목별 점수입력 .....	30
〈표 II-15〉 자활역량평가 점수별 재량 점수 분포 .....	31
〈표 II-16〉 연령점수 미스매칭 .....	32
〈표 II-17〉 신체적 건강 - 건강점수 .....	33
〈표 II-18〉 정신적 건강 - 건강점수 .....	34
〈표 II-19〉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단 배치 현황 .....	35
〈표 III-1〉 근로능력평가 내 활동 능력 평가 항목 .....	42
〈표 III-2〉 구직역량 평가 설문지 .....	47
〈표 III-3〉 구직역량 평가 배점표 .....	49
〈표 III-4〉 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 진단표 .....	53

〈표 III-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	57
〈표 III-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시장형사업단 선발기준표 .....	60
〈표 III-7〉 장애인 일자리 -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	63
〈표 III-8〉 아리조나 주 자활매트릭스 예시 .....	67
〈표 III-9〉 오레건 주 고용능력척도 예시 .....	69
〈표 III-10〉 워싱턴주 자립경로발전도구 예시 .....	71
〈표 III-11〉 학습욕구사정도구 예시(캘리포니아 주) .....	73
〈표 III-12〉 음주/약물남용문제 스크리닝 간이도구(CAGE) .....	75
〈표 III-13〉 일리노이 주 청년/성인 고용지원 역량평가 스크리닝 도구 예시 .....	76
〈표 III-14〉 호주의 근로능력지표 예시 .....	79
〈표 III-15〉 호주의 구직자분류도구 예시 .....	81
〈표 III-16〉 영국의 근로역량조사 예시 .....	85
〈표 III-17〉 3개국 지표 주요 특징 및 비교표 .....	87
〈표 IV-1〉 FGI 조사개요 .....	96
〈표 IV-2〉 FGI 그룹별 참여자 특성 .....	97
〈표 IV-3〉 FGI 질문지 .....	98
〈표 IV-4〉 FGI 내용 요약 .....	114
〈표 V-1〉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	118
〈표 V-2〉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기초역량영역 .....	119
〈표 V-3〉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건강영역 .....	120
〈표 V-4〉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직무능력 .....	122
〈표 V-5〉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구직 및 근로의지 .....	125
〈표 V-6〉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근로여건(방해요인) .....	126
〈표 V-7〉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지자체 종합의견 .....	127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 방법 .....	7
[그림 II-1] 자활역량평가표 평가 항목 및 비중의 변화 .....	16
[그림 V-1] 수급자 근로 역량 평가 프로세스 .....	128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자활역량평가’는 시·군·구에서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또한 ‘자활역량평가’는 집중취업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도구이자, 대상자의 자활근로 실시기관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가 대상자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자활역량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그 단계로 첫 번째, 초기상담 과정에서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활역량평가를 참조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다음 단계로서 자활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의 자활능력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자활역량평가표의 내용인 근로능력, 자활욕구, 자활의지, 가구 여건,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수급, 조건유예, 조건부과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활고용팀 담당자는 자활역량평가표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를 의뢰하게 된다.

이처럼 자활역량평가는 집중취업 대상자를 판단하고, 개인 역량별 맞춤형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다. 현재 자활역량평가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체계는 높은 자활역량을 가진 사람은 일반노동시장 특성에 가까운 근무환경을 유지하는 사업단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I-1〉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평가 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0점 이상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조건부수급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의뢰자 운영 지침」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자활사업 안내(1).

하지만 현재, 이러한 자활역량평가의 한계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근로능력, 자활역량의 판정과 수급자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 및 배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활역량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판정과 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노대명 외, 2011; 문준혁, 2019). 또한,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와 이후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배치하는 자활역량평가가 매치되지 않는 점, 그리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배치하는 자활역량평가가 지역자활센터 배치 후 시행하는 자립역량진단표와 충분히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만 오직 근로능력의 유무만이 통지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세부 판정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조건부 수급자로 판정된 대상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들을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등을 초기상담을 통해 파악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표 I-2〉 근로능력평가, 자활역량평가표, 자립역량진단표 비교

근로능력평가	자활역량평가표	자립역량진단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 평가 1단계- 4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li> <li>- 건강 상태</li> <li>- 직업 이력</li> <li>- 구직 욕구</li> <li>- 가구 여건</li> <li>- 재량 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상황 연령, 근로의지, 학력, 근로능력, 질병정도(정서심리), 경력단절 기간, 자격증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능력 평가 (항목)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의존,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인관계, 이해력, 기초학습활용능력, 공간 지각력, 습득력, 대처능력, 동시업무 수행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적 상황 공적부조(현금급여), 가족사항, 신용정도</li> <li>- 담당자의견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서식 태도, 취업가능성</li> </ul>

자료 :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자활사업 안내(1).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 판정하는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즉, 판정하는 담당 공무원, 개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가 정확한 상담을 할 여력이 없어 읍·면·동에서 근로능력자를 상담하고 해당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 이를 기초로 필요한 선정 및 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자활센터에서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시·군·구로 해당 정보를 보내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판정을 하기도 한다(노대명 외, 2011). 하지만 단순히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판정의 전문성 부재 문제로 보기에는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 차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제의 부재, 합리성이 부족한 업무분담, 촉박한 판정의 기간 등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모두 작용하고 있다(노대명 외, 2011).

그러나 판정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각 수급자의 근로능력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판정 및 배치는 참여자의 역량과 욕구를 고려한 자활사업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자립역량 진단표 사이에 자활근로 전달체계 배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자활역량평가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활역량평가표(안)을 도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대상자의 개인맞춤형 자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역량평가표를 현장적합형으로 개발하고, 효과적 활용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외 자활역량평가와 연관된 선행연구 및 보고서들을 통해 자활역량평가 개편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자활역량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한다.

둘째, 자활역량평가 현황과 실제 자활 참여자 자활능력 현황, 미래 예상되는 환경 변화를 결합하여 자활능력 개편 방안을 도출한다.

본 조사는 자활역량평가에 초점을 두어, 자활참여자의 자활역량평가로서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도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1) 자활역량평가표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자활사업 안내를 활용하여 2002년~ 2023년 현재까지 자활역량평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자활역량평가표의 시기별 각 항목의 비중 및 세부 기준에 대해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22년~2013년까지 각 시기별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과거 취업성공패키지)의 배치기준과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이용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역량평가 점수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초점을 두고 통계 분석(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추출 2019년 1월 - 2023년 12월)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활역량평가 미스매칭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객관적 지표인 연령과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초기상담 시에 체크하는 건강 상태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 (2) 국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활역량평가 동향 분석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자활역량지표와 유사한 지표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자활역량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지표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역량평가표, 고용노동부의 취업역량평가표,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진단표를 비교하였고, 국외지표는 미국, 호주, 영국의 각종 지표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 (3) 자활역량평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FGI 조사

자활역량평가 담당 시·군·구 공무원,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고용노동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자활역량평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FGI는 반구조화 설문지를 바탕으로 책임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의 진행하에 이루어졌다. FGI 참여자의 경우에는 4개 그룹 총 13명으로,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종사자 1그룹, 시·군·구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2그룹, 고용복지센터 종사자 1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 인터뷰를 병행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 2) 연구 방법

[그림 I-1]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방법
제도 및 실태 분석	자활역량평가표(2002-2013년) 정책자료 분석, 자활역량평가표 미스매칭 현황 분석	정책자료, 통계자료분석 (자활정보시스템 DATA)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국내 유사 지표 비교 분석, 국외(미국, 호주, 영국) 지표 비교 분석	정책자료, 국내외 문헌, 보고서 등
현장 육구조사	자활역량평가 담당 현장종사자 조사 - 시·군·구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2그룹 -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종사자 1그룹 - 고용복지센터 종사자 1그룹	FGI(질적 조사 시행)
현장적합형 자활역량 평가표(안) 도출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제안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 자활역량평가표 현황

---

1. 자활역량평가표 변화
2. 자활역량평가표 현황



# II

## 자활역량평가표 현황 <<

### 1. 자활역량평가표 변화

자활역량평가표는 근로능력점수표(2002-2009), 자활역량평가표(2010), 자활역량평가표와 취업역량평가표(2011), 취업적성평가표 (2012), 자활역량평가표(2013-현재)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변화해왔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자활역량평가표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고, 자활역량평가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평가항목 및 비중의 변화

##### (1) 자활역량평가표 주요 변화

###### ① 평가 항목의 다원화

보건복지부의 2002-2023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역량 평가 항목은 해를 거듭할수록 다원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2002년부터 2004년의 자활역량평가는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및 학력’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2023년 현재는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그리고 ‘재량 점수’ 즉, 여섯 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평가 대상자들의 자활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 ② 평가 항목 간 비중 변화

자활역량평가표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참여자의 환경이나 욕구를 반영하는 평가 항목들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중요

성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활역량평가가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노대명 외 2011; 이문국 2016; 이진명·구혜경 2021; 최상미 2018).

### ③ 세부 기준의 보완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 기준들이 변경 및 보완되어 왔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 항목의 경우, 초기에는 ‘신체적 건강’만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근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2) 자활역량평가표 시기별 각 항목의 변화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2002-2023c)의 「자활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자활역량평가표의 시기별 각 항목의 비중 및 세부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① 연령

연령은 자활사업 초기부터 자활역량평가표에 대해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 지표이나, 자활역량평가표에서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소되었다. 자활사업 초기에 연령은 전체 배점 중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지만, 2006년에는 30%로, 2019년에 10%로 감소하였다.

연령에 따른 세부 배점 기준도 변화하였다. 2002년에는 대상자들의 연령 범주를 ‘18세 이상 35세 이하’, ‘36세 이상 50세 이하’, ‘51세 이상 60세’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순서대로 40점, 20점, 0점을 부과하였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능력이 높다고 간주하고 더 높은 점수를 부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2002)에 따르면, 18세 이상 35세 이하는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 36세 이상 50세 이하는 ‘자활능력 유지가 가능한 연령’, 51세 이상 60세 이하는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에 해당된다. 2009년에는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의 상한선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각각 30점, 20점, 10점을 부과하였다.

2013년부터는 연령을 세 집단이 아닌 네 집단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18세-30세)’,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31세-43세)’, ‘취업 및 자활능력 유지가 약화된 연령(44세-55세)’, ‘취업 가능성이 약화된 연령(56세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2019년에는 2013년의 세부 기준에 대한 일부 상

한 상향 조정이 있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30세 이하를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으로 보았다면, 2019년에는 35세 이하까지를 해당 범주로 재분류하였으며, 취업 및 자활능력 유지가 가능한 연령을 31세 이상 43세가 아닌 36세 이상 49세 이하로 조정하였다.

## ② 건강 상태

건강 상태 역시 연령 및 직업 이력과 더불어 자활사업 초기부터 매년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 지표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2002년에 건강 상태는 30점 만점으로 전체 30%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 25%로, 그리고 2013년에는 20%로 두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건강 상태는 세부 기준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항목이다. 2002년에 건강 상태는 ‘양호(30점)’ 또는 ‘보통이하(15점)’의 두 단계로 구분되었다. 이때, 건강이 ‘보통이하’라 함은 경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닐 경우를 뜻한다. 2006년부터는 건강을 ‘양호(25점)’, ‘보통(15점)’, ‘보통 이하(5점)’의 세 단계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경질환이 있지만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5-6급 장애가 있거나 비등록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보통 이하’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질환과 근로활동의 연관성 및 장애 유무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2013년에는 2006년 개정된 3단계 체계를 유지하되, 건강 상태의 배점이 20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양호 20점, 보통 10점, 보통 이하에 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9년에는 신체 건강과 더불어 정신 건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신체적 경질환이 있더라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며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보통’ 등급을 받지만, 중증 정신질환 이력이 있을 경우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도록 세부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 ③ 직업 이력

직업 이력은 2002년에 전체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25%로 그 비중이 조정되었는데, 이처럼 2006년에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직업 이력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평가 기준에 ‘재량 점수’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자활역량평가표에는 다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 직업 이력은 25점 만점이 아닌 20점(전체 20%)이라는 배점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에 평가 대상자들은 ‘상(30점)’, ‘중(15점)’, ‘하(0점)’의 세 단계 점수 중 하

나를 부과 받았다. 30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음(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제외)’과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증을 소지하되,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자격증은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정’이 있다. 한편, 평가대상이 최근 4-5년 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및 자영업 운영 경험이 있을 경우(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제외) 15점을,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였다.

2003년에는 직업 이력과 더불어 학력을 30점 내에서 함께 평가하게 되었는데, 대학(2년제) 졸업 이상일 경우 ‘상’을, 중·고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중’의 단계를 부여하였다. 이때 직업 이력과 학력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직업 이력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2006년에는 직업 이력의 비중이 축소되며, 상·중·하의 3단계 평가는 유지하되, 각각 점수를 25점, 15점, 5점으로 조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부터는 특정 유형의 자활사업에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한 것 역시 직업 이력으로 인정하고, 상 또는 중 등급에 세부 기준을 추가하였다. 2019년에 학력에 대한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문해력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 ④ 재량 점수

재량 점수는 2006년 신설된 평가 항목으로, 기존 항목에서 드러나지 않는 근로 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2006년 도입 당시 재량 점수는 전체 비중의 20%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 재량 점수 내에서 고려할 수 있었던 일부 평가 기준 즉, 구직 욕구와 가구 여건이 독립적인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지면서 재량 점수의 비중이 10%로 줄어들었다.

재량 점수의 도입 초기에는 개인의 직업 이력, 근로 욕구, 드러나지 않은 장애 여부,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하지만 근로 욕구와 가구 여건이 별도의 평가 항목을 통해 측정되면서, 재량 점수에서는 “향정신성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우울증·감정조절장애·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 전과 등” 근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세부 기준이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 ⑤ 구직 욕구

구직 욕구는 2013년 신설된 평가 항목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전체 비중의 10%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에 20%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구직 욕구는 상·중·하의 3단계 점수 체계를 갖는다. 2013년에는 ‘상’에 10점을 부과하면서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중(7점)’으로,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5점)’로 분류하였다. 2019년에는 상에 20점, 중에 10점, 하에 5점을 부과하면서 ‘중’의 세부 기준에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자활역량평가표에서는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2013-2023c). 그러나 여전히 취업 의사가 높다는 것과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주관적인 해석의 개입의 여지가 남아 있기에 향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⑥ 가구 여건

가구 여건은 구직 욕구와 더불어 기존 ‘재량 점수’로서 고려되다가 2013년에 독립적인 평가 항목이 되었다. 이 역시 2013년에는 전체의 10% 비중을 차지했다가, 2019년부터 2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취업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 ‘상(10점)’, 한 가지 이상의 취업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중(7점)’, 세 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하(5점)’를 부과하였다. 2019년에는 취업 장애요인과 더불어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 가능 여부를 함께 고려하며, 상에 20점, 중에 10점, 하에 5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취업 장애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2019년에는 이를 “가구원의 질병·부상, 양육·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 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정리하면, 현재 자활역량평가 체계 하에서는 취업 장애요인이 적어 근로가 용이할수록 가구 여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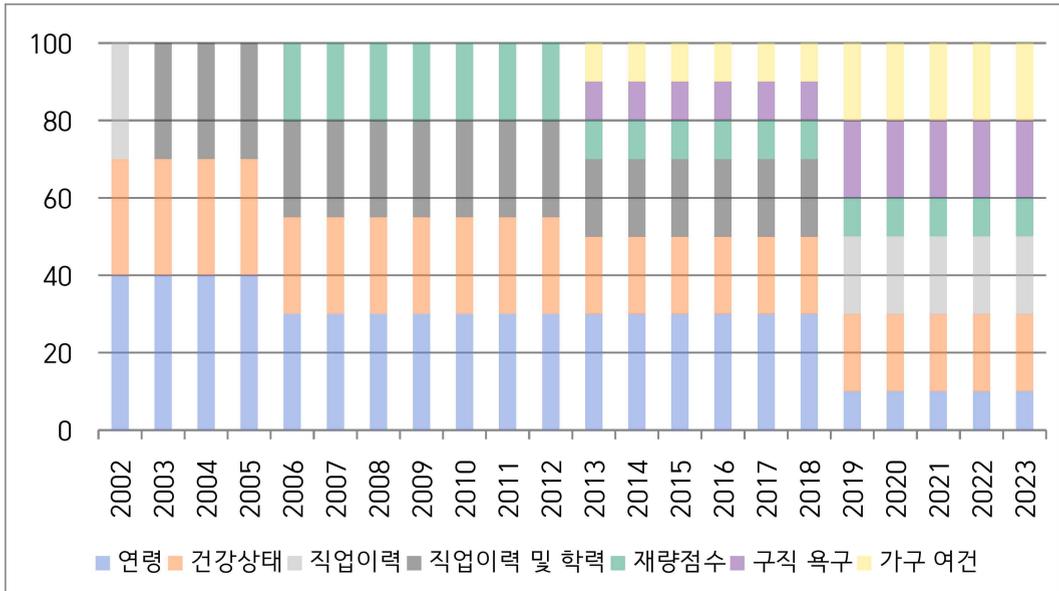
## ⑦ 가점 사항

2012년에는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및 학력, 재량 점수를 합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대상자의 자활 역량을 측정하였으나, 이외에도 가점 사항(재량 점수와 합쳐 최대 20점까지)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년 내 직업 경험이 있을 경우에 10점

을, 3년 내 고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을 경우 또 10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 고용프로그램이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직업학교, 직업훈련, 사설 직업 교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보건복지부, 2012). 가점 사항은 2013년에 폐지되었다. 아래 [그림 II-1]은 이상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1] 자활역량평가표 평가 항목 및 비중의 변화

(단위: 연도, %)



자료: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1〉 영역별 변화 1 : 연령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02-'05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단계 구분</li> <li>- 18세~35세 (40점) :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li> </ul>
'06-'0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세~50세 (20점) :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li> <li>- 51세~60세 (0점) :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li> </ul>
'09-'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단계 구분, 일부 구간 조정</li> <li>- 18세~35세 (30점) :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li> <li>- 36세~55세 (20점) :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li> <li>- 56세~64세 (10점) :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li> </ul>
'13-'1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단계 구분</li> <li>- 18세~30세 (30점) :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li> <li>- 31세~43세 (20점)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li> <li>- 44세~55세 (10점)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li> <li>- 56세 이상 (5점) :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li> </ul>
'19-'2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단계 구분, 일부 구간 조정</li> <li>- 18세~35세 (10점) :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li> <li>- 36세~49세 (8점)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li> <li>- 50세~55세 (6점)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li> <li>- 56세 이상 (4점) :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2〉 영역별 변화 2 : 건강 상태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02-'0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단계 구분</li> <li>- 양호 (30점)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li> <li>- 보통 이하 (15점) : 경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함</li> </ul>
'06-'0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단계 구분</li> <li>- 양호 (25점)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li> </ul>
'09-'1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15점) : 경질환이 있지만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음</li> <li>- 보통 이하 (5점) : 5-6급 장애가 있거나 비등락장애인에 해당될 경우</li> </ul>
'13-'1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단계 구분 유지, 건강 상태 항목 배점 변화에 따라 양호(20점), 보통(10점), 보통이하(5점)로 각 단계별 배점 조정</li> </ul>
'19-'2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단계 구분 유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고려하도록 세부 기준 변화</li> <li>- 양호 (20점)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li> <li>- 보통 (10점) :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li> <li>- 보통 이하 (5점) : 5-6급 장애인, 비등락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 등</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3〉 영역별 변화 3 : 직업 이력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0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li> <li>- 상 (30점) : 최근 3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자 (공공근로·취로사업 제외),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li> <li>※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 (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li> <li>- 중 (15점) : 최근 4~5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 (공공근로·취로사업 제외)</li> <li>- 하 (0점)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ul>
'03-'0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학력에 대한 세부 기준 추가</li> <li>- 대학 (2년제) 졸업 이상 학력자에게 상(30점) 부여하도록 기준 추가</li> <li>- 중·고졸 졸업 이상 학력자에게 중(15점) 부여하도록 기준 추가</li> <li>※ 단, 직업 이력과 학력이 다른 점수대에 속할 경우 직업 이력 우선 반영</li> </ul>
'06-'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배점 조정</li> <li>- 상(25점), 중(15점), 하(5점) 부여</li> <li>- 세부기준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적용</li> </ul>
'11-'1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직업 이력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 경험에 대한 세부 기준 추가</li> <li>-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에게 상 (25점) 부여하도록 기준 추가</li> <li>-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 자활근로 상위 자활 사업에 2년 이상 참여자에게 중(15점) 부여하도록 기준 추가</li> </ul>
'13-'1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배점 조정 및 세부 기준 변화</li> <li>- 상 (20점) : 최근 3년내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li> <li>- 중 (10점) : 최근 4~5년내 1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취로사업 제외),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에 2년 이상 참여자, 중·고졸 이상 학력자</li> <li>- 하 (5점) : 최근 3년 이내 공공근로(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등 포함) 참여자,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li> </ul>
'19-'2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학력 삭제 및 세부 기준 변화</li> <li>- 상 (20점)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최근 1년 이내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li> <li>※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li> <li>- 중 (10점) : 최근 4~5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취로사업 제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문해력 중(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li> <li>- 하 (5점) : 기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문해력 하(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4〉 영역별 변화 4 : 재량 점수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06-'12	20	• 개인의 직업 이력, 근로욕구, 드러나지 않은 장애여부,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점내에서 부여
'13-'18	10	•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등의 이유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내에서 부여
'19-'23	10	• 항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우울증·감정조절장애·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내에서 부여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5〉 영역별 변화 5 : 구직 욕구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13-'1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li> <li>- 상 (10점)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li> <li>※ (예시) :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li> <li>- 중 (7점) :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li> <li>- 하 (5점)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li> </ul>
'19-'2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배점 조정 및 세부 기준의 일부 변경</li> <li>- 상에 20점, 중에 10점, 하에 5점 부과</li> <li>- 중 :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 (세부 기준 변경)</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6〉 영역별 변화 6 : 가구 여건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13-'1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li> <li>- 상 (10점)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li> <li>- 중 (7점)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미만으로 가구 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li> <li>- 하 (5점)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li> </ul>
'19-'2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구분, 배점 조정 및 취업장애요인 구체화</li> <li>- 상 (20점)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li> <li>- 중 (10점)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미만으로 가구 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li> <li>- 하 (5점)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li> <li>※ 취업장애요인 : 가구원의 질병·부상, 양육·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표 II-7〉 영역별 변화 7 : 가점 사항

(단위 : 년, %)

연도	비중	세부 기준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내 직업 경험 (유=10점, 무=0점), 3년내 고용프로그램 참여 여부 (유=10점, 무=0점)를 고려함.</li> <li>• 단, 재량 점수와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가능함</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 2) 사업 배치 기준의 변화

### (1) 시기별 사업 배치 기준의 변화

#### ① 2002년-2005년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 배치는 하나의 절단 값을 사용하여 평가대상을 취업 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03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취업 대상자는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한 자, 직업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 비취업 대상자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 자활공동체 참여, 공공 근로기회제공 등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03, p.41).

먼저, 2002년에는 근로능력 점수(현 자활역량점수)가 50점을 절단 값으로 하여 50점 이상일 경우 취업 대상자로 간주, 고용노동부 산하 자활프로그램에 배치하였다. 반면 50점 미만을 받은 평가대상자들은 비취업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프로그램에 배치하였다. 2003년에는 사업 배치 기준의 점수가 7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70점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자활프로그램에, 70점 미만일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근로능력 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했다. 즉, 근로능력 점수가 50점 이상인 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경우 취업대상자로 배치할 수 있었고, 반대로 근로능력 점수가 70점 이상이지만 가구여건 상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2006년-2011년

2006년부터 2011년에는 근로능력 점수를 네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였다. 근로능력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에, 41점 이상 69점 이하는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41점 이상 50점 이하는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고 관내 사업으로 진행되는 근로유지형 사업에, 51점 이상 69점 이하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40점 이하는 근로역량 미약자로 보고, 지역 봉사 배치하였다. 한편, 정신건강이 좋지 않거나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혹은 상습적으로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 ③ 2012년

2012년에는 취업적성평가 (현 자활역량평가)의 점수 구간을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70점 이상을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집중 취업지원 대상자'로 명명하였다. 50점 이상 69점 이하는 '근로 역량 강화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활 근로(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0점은 '근로의욕증진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활 근로 중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유지형 일자리에 배치하였다.

### ④ 2013년-2018년

2013년에도 점수 구간을 세 단계로 분류하였으나, 기준점에 변화가 있었다. 70점 이상은 예년과 동일하게 집중 취업지원 대상자로 보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자활사업에 배치하였다. 한편, 45점 이상 69점 이하는 근로 역량 강화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활 근로 중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과 희망리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단, 희망리본사업은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되었다. 4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근로의욕증진 대상자로 명명하고 보건복지부의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⑤ 2019년-2023년

2019년에는 세 단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중 취업지원 대상자와 근로 역량 강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시기별 사업 배치 기준은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 배치 방식(조건부와 방식)이 점수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일방향적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최상

미(2018)는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 배치 및 운영 방식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 일자리를 ‘수동적 일자리’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단 배치 과정에서 참여자의 욕구와 선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8〉 연도별 사업 배치 기준의 변화

(단위 : 년)

연도	세부 기준
'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개의 구간으로 분류 : 2002년에는 50점을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05년에는 7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취업 대상자로, 이하일 경우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li> <li>- 취업 대상자 : 고용노동부 산하 자활프로그램에 배치 ('02 : 50점 이상, '03 : 70점 이상)</li> <li>- 비취업 대상자 :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프로그램에 배치</li> </ul>
'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구간으로 나누어 배치</li> <li>- 70점 이상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배치</li> <li>- 51점 이상 69점 이하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li> <li>- 41점 이상 50점 이하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 (근로유지형)</li> <li>- 40점 이하 : 근로능력 미약자로 분류, 지역 봉사 배치</li> <li>※ 점수와 무관하게 알콜의존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배치</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구간으로 나누어 배치</li> <li>- 70점 이상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배치)</li> <li>- 50점 이상 69점 이하 : 근로역량강화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 근로 참여;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li> <li>- 50점 미만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 근로 참여; 근로유지형)</li> </ul>
'1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구간 유지, 기준 점수 조정</li> <li>- 70점 이상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배치)</li> <li>- 45점 이상 69점 이하 : 근로역량강화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 근로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 또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희망리본' 참여 )</li> <li>- 45점 미만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 근로 참여; 근로유지형)</li> <li>※ 희망리본사업은 '1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li> </ul>
'1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구간 유지, 기준 점수 조정</li> <li>- 80점 이상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배치)</li> <li>- 45점 이상 80점 미만 : 근로역량강화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 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li> <li>- 45점 미만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 근로 참여; 근로유지형)</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02-2023c).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 2. 자활역량평가표 현황

### 1) 현행 자활역량평가표와 평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제4항 및 제 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2조에 의거하여,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는 대상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 II-9>의 자활역량평가표를 참조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 점수로 구성된 자활역량평가표를 바탕으로 시·군·구는 개인의 업무 역량과 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자활근로와 취·창업, 자산 형성 등 유관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을 진행한다. 이후, 자활고용지원팀 담당자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로 보고, 이를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하여 고용센터에 의뢰하여야 한다. 반면 자활역량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집중취업지원 비대상자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에 배치된다. 구체적으로는 45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로 분류되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자활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되어야 한다. 45점 미만은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로 분류되어 노동강도가 낮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자활담당 공무원은 초기상담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시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기타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자활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중 장애인 또는 출소자의 경우,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 과정에서 욕구조사 등을 거쳐 타 기관의 기관 서비스가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의뢰할 수 있다.

〈표 II-9〉 2023년도 자활역량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연령 (10)	18~35세	10	- 18~35세(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49세	8	- 36~49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0~55세	6	- 50~55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56세 이상	4	- 56세 이상(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건강 상태 (20)	양호	20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
	보통	10	-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보통 이하	5	- 경증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 등
직업 이력 (20)	상	20	- 최근 3년 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중	10	- 최근 4~5년 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취로사업 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문해력 중(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하	5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문해력 하(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구직 욕구 (20)	상	20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	10	-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
	하	5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가구 여건 (20)	상	20	- 취업장애요인이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 -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자 ※ (취업장애요인) 가구원의 질병·부상, 양육·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
	중	10	- 취업장애요인이 1가지 이상으로 가구 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 1일 8시간 이하 근로가 가능한 자
	하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재량 점수	10	10	- 항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우울증·감정조절장애·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 내에서 부여

자료 :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 자활사업 안내.

## 2)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역량평가표 점수 추이 및 분포

### (1) 연도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비중 추이 (2019년도-2022년도)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이용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역량평가 점수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살펴보았다. 자활사업 안내 매뉴얼상 80점 이상은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고용센터로 의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도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로 분류되는 45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은 76~79% 정도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5점 미만인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2019년에는 20.51%로 높았으나, 2020년은 16.47%, 2021년 14.89%, 2022년 16.05%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0〉 연도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비중 추이(2019년도-2022년도)

(단위: 명, %)

구분	45점 미만	45-59점	60-79점	80점 이상	계
2019년	8,259	17,401	13,317	1,300	40,277
	(20.51)	(43.20)	(33.06)	(3.23)	(100)
2020년	7,676	17,770	18,787	2,383	46,616
	(16.47)	(38.12)	(40.30)	(5.11)	(100)
2021년	7,699	19,237	21,940	2,827	51,703
	(14.89)	(37.21)	(42.43)	(5.47)	(100)
2022년	8,213	18,145	21,361	3,463	51,182
	(16.05)	(35.45)	(41.74)	(6.77)	(100)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2)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2022년도)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II-11〉에 따르면, 45점 미만은 남성이 55.18%, 여성이 44.82%, 45점 이상 60점 미만은 남성이 54.11%, 여성이 45.89%,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남성이 50.59%, 여성이 49.41%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80점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이 46.87%, 여성이 53.13%로 여성의 비중이 더 높다.

〈표 II-11〉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1)

(단위 : 명, %)

구분		45점 미만	45-59점	60-79점	80점 이상	계
성별	남성	4,532 (55.18)	9,818 (54.11)	10,807 (50.59)	1,623 (46.87)	26,780 (52.32)
	여성	3,681 (44.82)	8,327 (45.89)	10,554 (49.41)	1,840 (53.13)	24,402 (47.68)
연령	35세 이하	818 (9.96)	1,203 (6.63)	3,167 (14.83)	946 (27.32)	6,134 (11.98)
	36-49세	1,642 (19.99)	3,803 (20.96)	5,249 (24.57)	950 (27.43)	11,644 (22.75)
	50-55세	1,577 (19.20)	3,646 (20.09)	4,537 (21.24)	637 (18.39)	10,397 (20.31)
	56-64세	3,622 (44.10)	8,026 (44.23)	7,149 (33.47)	823 (23.77)	19,620 (38.33)
	65세 이상	554 (6.75)	1,467 (8.08)	1,259 (5.89)	107 (3.09)	3,387 (6.62)
학력	무학	306 (4.06)	788 (4.62)	598 (3.00)	56 (1.76)	1,748 (3.66)
	초졸	1,067 (14.16)	2,477 (14.53)	2,227 (11.18)	185 (5.80)	5,956 (12.49)
	중졸	1,468 (19.48)	3,397 (19.93)	3,566 (17.90)	379 (11.88)	8,810 (18.47)
	고졸	3,667 (48.65)	8,156 (47.85)	10,390 (52.14)	1,861 (58.36)	24,074 (50.47)
	대졸 이상	1,029 (13.65)	2,228 (13.07)	3,146 (15.79)	708 (22.20)	7,111 (14.91)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연령에 따른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45점 미만은 35세 이하가 9.96%, 36세 이상 49세 이하가 19.99%, 50세 이상 55세 이하가 19.20%, 56세 이상 64세 이하가 44.10%, 65세 이상이 6.75%를 차지하였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은 35세 이하가 6.63%, 36세 이상 49세 이하가 20.96%, 50세 이상 55세 이하가 20.09%, 56세 이상 64세 이하가 44.23%, 65세 이상이 8.08%를 차지하였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35세 이하가 14.83%, 36세 이상 49세 이하가 24.57%, 50세 이

상 55세 이하는 21.24%, 56세 이상 64세 이하는 33.47%, 65세 이상이 5.89%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의 경우에는 35세 이하가 27.32%, 36세 이상 49세 이하가 27.43%, 50세 이상 55세 이하가 18.39%, 56세 이상 64세 이하가 23.77%, 65세 이상이 3.09%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5점 미만은 무학이 4.06%, 초졸이 14.16%, 중졸이 19.48%, 고졸이 48.65%, 대졸 이상이 13.65%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은 무학이 4.62%, 초졸은 14.53%, 중졸이 19.93%, 고졸이 47.85%, 대졸 이상이 13.07%로 나타났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무학이 3.00%, 초졸이 11.18%, 중졸이 17.90%, 고졸이 52.14%, 대졸 이상이 15.79%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은 무학이 1.76%, 초졸이 5.80%, 중졸이 11.88%, 고졸이 58.36%, 대졸 이상이 22.20%로 나타났다.

〈표 II-12〉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2)

(단위 : 명, %)

구분		45점 미만	45-59점	60-79점	80점 이상	계
질병 여부	없음	3,982 (53.41)	8,937 (52.88)	12,085 (61.24)	2,120 (66.86)	27,124 (57.39)
	있음	3,473 (46.59)	7,963 (47.12)	7,649 (38.76)	1,051 (33.14)	20,136 (42.61)
정신건강 질환 여부	없음	6,992 (93.79)	15,806 (93.53)	18,707 (94.80)	2,996 (94.48)	44,501 (94.16)
	있음	463 (6.21)	1,094 (6.47)	1,027 (5.20)	175 (5.52)	2,759 (5.84)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질병 여부, 정신 건강 질환 여부에 따른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는 〈표 II-12〉과 같다. 먼저 45점 미만의 경우, 질병이 없는 경우가 53.41%, 질병이 있는 경우가 46.59%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의 경우, 질병이 없는 경우가 52.88%, 질병이 있는 경우가 47.12%로 나타났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질병이 없는 경우가 61.24%, 질병이 있는 경우가 38.76%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은 질병이 없는 경우가 66.86%, 질병이 있는 경우가 33.1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활역량평가 상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질병이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 건강 질환을 살펴보면,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질환 보유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5점 미만의 경우 정신건강 질환이 없는 경우가 93.79%, 정신건강 질환이 없는 경우가 6.21%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의 경우 정신건강 질환이 없는 경우가 93.53%,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경우가 6.47%로 나타났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는 정신건강 질환이 없는 경우가 94.80%,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경우가 5.2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0점 이상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94.48%, 앓고 있는 사람이 5.52%로 나타났다.

〈표 II-13〉 참여자 특성별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 (3)

(단위 : 명, %)

구분		45점 미만	45-59점	60-79점	80점 이상	계
참여시점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2,132 (25.96)	4,858 (26.77)	5,642 (26.41)	708 (20.44)	13,340 (26.06)
	조건부수급자	4,471 (54.44)	8,797 (48.48)	10,559 (49.43)	2,272 (65.61)	26,099 (50.99)
	시설수급자	25 (0.3)	52 (0.29)	80 (0.37)	10 (0.29)	167 (0.33)
	자활특례	763 (9.29)	2,289 (12.62)	2,051 (9.6)	181 (5.23)	5,284 (10.32)
	차상위	822 (10.01)	2,148 (11.84)	3,028 (14.18)	292 (8.43)	6,290 (12.29)
	비수급자	0 (0.00)	1 (0.01)	1 (0.00)	0 (0.00)	2 (0.00)
자활사업 참여기간	6개월 미만	2,634 (32.07)	4,574 (25.21)	4,867 (22.78)	1,093 (31.56)	13,168 (25.73)
	6개월 - 1년 미만	555 (6.76)	1,174 (6.47)	1,576 (7.38)	347 (10.02)	3,652 (7.14)
	1년 - 3년 미만	2,683 (32.67)	5,661 (31.2)	7,366 (34.48)	1,262 (36.44)	16,972 (33.16)
	3년 - 5년 미만	1,480 (18.02)	4,319 (23.8)	4,801 (22.48)	448 (12.94)	11,048 (21.59)
	5년 이상	861 (10.48)	2,417 (13.32)	2,751 (12.88)	313 (9.04)	6,342 (12.39)
자활참여 결정	미참여	181 (2.52)	501 (3.05)	328 (1.71)	84 (2.80)	1,094 (2.39)
	재참여	1,329 (18.51)	3,717 (22.66)	4,521 (23.62)	689 (22.94)	10,256 (22.43)
	신규참여	5,648 (78.66)	12,143 (74.04)	14,252 (74.45)	2,227 (74.16)	34,270 (74.94)
	사회서비스 연계/의뢰	22 (0.31)	40 (0.24)	42 (0.22)	3 (0.10)	107 (0.23)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참여시점 수급 유형과 자활 사업 참여기간, 자활참여자 결정에 따른 자활역량평가 점수 분포는 <표 II-13>과 같다. 먼저 참여시점 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45점 미만의 경우 일반 수급자가 25.96%, 조건부 수급자가 54.44%, 시설 수급자가 0.3%, 자활 특례자가 9.29%, 차상위자가 10.01%, 비수급자가 0.00%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은 일반 수급자가 26.77%, 조건부 수급자가 48.48%, 시설 수급자가 0.29%, 자활 특례자가 12.62%, 차상위자가 11.84%, 비수급자가 0.01%로 나타났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일반 수급자가 26.41%, 조건부 수급자가 49.43%, 시설 수급자가 0.37%, 자활 특례자가 9.6%, 차상위자가 14.18%, 비수급자가 0.00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의 경우, 일반 수급자가 20.44%, 조건부 수급자가 65.61%, 시설 수급자가 0.29%, 자활 특례자가 5.23%, 차상위자가 8.43%, 비수급자가 0.00%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45점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 참여자가 32.07%,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자가 6.76%,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가 32.67%, 3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자가 18.02%, 5년 이상 참여자가 10.48%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은 6개월 미만 참여자가 25.21%,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자가 6.47%,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가 31.2%, 3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자가 23.8%, 5년 이상 참여자가 13.32%로 나타났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참여자가 22.78%,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자가 7.38%,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가 34.48%, 3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자가 22.48%, 5년 이상 참여자가 12.88%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의 경우 6개월 미만 참여자가 31.56%,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여자가 10.02%, 1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자가 36.44%, 3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자가 12.94%, 5년 이상 참여자가 9.04%로 나타났다.

자활참여자 결정을 살펴보면, 45점 미만 자활대상자 중 자활사업 미참여는 2.52%, 재참여자는 18.51%, 신규 참여자는 78.66%, 사회서비스 연계 및 의뢰자는 0.31%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 자활대상자 중 자활사업 미참여는 3.05%, 재참여자는 22.66%, 신규 참여자는 74.04%, 사회서비스 연계 및 의뢰자는 0.24%로 나타났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자활사업 미참여자가 1.71%, 재참여자가 23.62%, 신규 참여자가 74.45%, 사회서비스 연계 및 의뢰가 0.22%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은 자활사업 미참여자가 2.80%, 재참여자가 22.94%, 신규 참여자가 74.16%, 사회서비스 연계 및 의뢰자가 0.10%로 나타났다.

## 2) 자활역량평가 미스매칭 현황

### (1) 항목별 점수입력 오류 (2022년도)

자활역량평가표를 살펴보면, 재량 점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은 최하 점수와 최고 점수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각 항목별 줄 수 있는 점수도 5점, 10점, 20점과 같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별 입력된 오류를 살펴보면 <표 II-14>와 같다. 0점으로 기입한 경우를 점수 미기입으로 분류하였고, 정해진 배점을 벗어난 점수를 오입력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연령 항목은 점수 미기입이 0.05%, 오입력이 0.01%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의 경우에는 점수 미기입이 8.64%, 오입력이 0.00%로 나타났으며, 직업 이력은 점수 미기입 11.33%, 오입력 0.00%로 점수 미기입율이 가장 높았다. 구직 욕구 항목은 점수 미기입이 8.64%, 오입력이 0.01%로 나타났으며 가구 여건은 9.17%, 오입력이 0.00%로 나타났다.

<표 II-14> 항목별 점수입력

(단위 : %)

	점수 미기입	오입력	정상입력
연령	0.05	0.01	99.94
건강 상태	8.64	0.00	91.36
직업 이력	11.33	0.00	88.67
구직 욕구	8.64	0.01	91.35
가구 여건	9.17	0.00	90.82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다음으로 자활담당공무원은 재량으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 내외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자활역량평가 점수별 재량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15>와 같다. 먼저 45점 미만은 0점이 75.31%, 1점이 2.81%, 2점이 2.64%, 3점이 3.28%, 4점이 3.08%, 5점이 8.74%, 6점이 1.29%, 7점이 0.93%, 8점이 0.60%, 9점이 0.13%, 10점이 1.19%로 나타났다. 45점 이상 60점 미만은 0점이 22.42%, 1점이 1.32%, 2점이 3.55%, 3점이 4.24%, 4점이 4.57%, 5점이 21.59%, 6점이 8.29%, 7점이 9.66%, 8점이 7.26%, 9점이 2.73%, 10점이 14.37%이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0점이 21.23%, 1점이 0.74%, 2점이 2.25%, 3점이 2.50%, 4점이 4.11%, 5점이 18.9%, 6점이 8.24%, 7점이 9.58%, 8

점이 8.36%, 9점이 3.38%, 10점이 20.72%이다. 80점 이상을 살펴보면 0점이 10.71%, 1점이 0.32%, 2점이 4.50%, 3점이 2.14%, 4점이 4.62%, 5점이 13.83%, 6점이 6.73%, 7점이 11.03%, 8점이 6.70%, 9점이 1.93%, 10점이 37.4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재량 점수 10점을 받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많아지고, 점수가 낮을수록 재량 점수 0점을 받은 참여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II-15〉 자활역량평가 점수별 재량 점수 분포

(단위 : 명, %)

	45점 미만	45-59점	60-79점	80점 이상	계
0점	6,185 (75.31)	4,069 (22.42)	4,535 (21.23)	371 (10.71)	15,160 (29.62)
1점	231 (2.81)	239 (1.32)	159 (0.74)	11 (0.32)	640 (1.25)
2점	217 (2.64)	644 (3.55)	480 (2.25)	156 (4.50)	1,497 (2.92)
3점	269 (3.28)	770 (4.24)	533 (2.50)	74 (2.14)	1,646 (3.22)
4점	253 (3.08)	830 (4.57)	878 (4.11)	160 (4.62)	2,121 (4.14)
5점	718 (8.74)	3,917 (21.59)	4,038 (18.9)	479 (13.83)	9,152 (17.88)
6점	106 (1.29)	1,504 (8.29)	1,760 (8.24)	233 (6.73)	3,603 (7.04)
7점	76 (0.93)	1,752 (9.66)	2,046 (9.58)	382 (11.03)	4,256 (8.32)
8점	49 (0.60)	1,317 (7.26)	1,785 (8.36)	232 (6.70)	3,383 (6.61)
9점	11 (0.13)	496 (2.73)	722 (3.38)	67 (1.93)	1,296 (2.53)
10점	98 (1.19)	2,607 (14.37)	4,425 (20.72)	1,298 (37.48)	8,428 (16.47)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2) 평가항목과 실제 참여자 역량 비교 : 연령,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군·구 자활담당 공무원은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활역량평가표를 작성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활고용지원팀 담당자는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참여를 의뢰한다. 의뢰 후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진행하며, 자립역량진단표를 작성한다. 이 자립역량진단표에는 자활역량평가표에서 살펴보는 항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유사 항목을 기준으로 시·군·구 자활담당 공무원의 평가와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담당자의 평가를 비교하면 자활역량평가와 실제 참여자 역량의 미스매칭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표 II-16>과 같다.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인 35세 이하의 자활역량평가에서 10점을 받아야 하나, 10점을 받지 못한 비율은 0.14%이다. 또한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36세 이상 49세 이하의 자활역량평가에서 8점을 받아야 하나, 8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2.04%이다. 또한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50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활역량평가에서 6점을 받아야 하지만, 6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4.6%였다. 다음으로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56세 이상은 자활역량평가에서 4점을 받아야 하지만, 4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8.77%로 나타났다.

<표 II-16> 연령점수 미스매칭

(단위 : 명, %)

연령	자활역량평가상의 연령점수						
	0	4	6	8	10	오기입*	계
35세 이하	5 (0.01)	5 (0.01)	12 (0.02)	52 (0.10)	6,059 (11.84)	2 (0.00)	6,135 (11.99)
36-49세	1 (0.00)	28 (0.05)	204 (0.40)	10,596 (20.70)	810 (1.58)	5 (0.01)	11,644 (22.75)
50-55세	5 (0.01)	44 (0.09)	8,043 (15.71)	2,126 (4.15)	179 (0.35)	0 (0.00)	10,397 (20.31)
56세 이상	11 (0.02)	15,132 (29.56)	3,848 (7.52)	378 (0.74)	250 (0.49)	1 (0.00)	19,620 (38.33)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자활역량평가표 상의 배점을 넘어선 점수(e.g. 20점, 30점)와 점수 분류에 맞지 않는 점수(e.g. 5점)가 포함됨.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과 건강점수를 살펴보면 <표 II-17>과 같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자활역량평가에서 20점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19.51%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보통인 사람은 자활역량평가에서 10점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10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21.79%이다. 건강이 허약한 사람은 자활역량평가에서 5점을 받아야 하지만, 5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14.71%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스매칭률을 전체로 보면 56.01%로 나타났다.

<표 II-17> 신체적 건강 - 건강점수

(단위: 명, %)

신체적 건강 상태	자활역량평가상의 건강점수				
	0	5	10	20	계
양호	1,190 (2.52)	763 (1.62)	7,259 (15.37)	5,132 (10.86)	14,344 (30.36)
보통	2,194 (4.64)	2,021 (4.28)	14,667 (31.05)	6,082 (12.87)	24,964 (52.84)
허약	706 (1.49)	984 (2.08)	5,050 (10.69)	1,194 (2.53)	7,934 (16.79)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과 건강점수를 살펴보면 <표 II-18>과 같다. 심리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자활역량평가에서 20점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33.58%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 상태가 보통인 사람은 자활역량평가에서 10점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10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18.12%이다. 심리적 건강이 허약한 사람은 자활역량평가에서 5점을 받아야 하지만, 5점 미만 혹은 초과를 받은 경우가 전체에서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스매칭률을 전체로 보면 58.90%로 나타났다.

〈표 II-18〉 정신적 건강 - 건강점수

(단위: 명, %)

심리적 건강 상태	자활역량평가상의 건강점수				
	0	5	10	20	계
양호	1,939 (4.11)	1,417 (3.00)	12,496 (26.47)	6,694 (14.18)	22,546 (47.76)
보통	1,764 (3.74)	1,809 (3.83)	12,164 (25.77)	4,980 (10.55)	20,717 (43.89)
허약	380 (0.81)	542 (1.15)	2,290 (4.85)	728 (1.54)	3,940 (8.35)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3)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단 배치 현황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단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9〉와 같다. 지침에 따르면, 45점 미만인 경우, 근로유지형 사업단에 배치되어 노동강도가 낮은 자활근로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45점 미만 자활역량평가 점수를 가진 참여자 중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사업단에 배치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4,919명으로 게이트웨이를 제외한 참여자 중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유지형 사업단에 배치된 참여자 중 자활역량점수가 45점 이상이 되는 참여자가 253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2.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가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된 참여자들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운영하는 근로유지형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자활역량점수의 미스매칭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19〉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단 배치 현황

(단위 : 명, %)

구분	45점 미만	45-59점	60-79점	80점 이상	계	
참여시점 수급유형	시장진입형 (청년자립도전단 포함)	1,582 (19.26)	3,461 (19.07)	4,757 (22.27)	774 (22.35)	10,574 (20.66)
	사회서비스형	3,241 (39.46)	8,076 (44.51)	9,400 (44.01)	1,141 (32.95)	21,858 (42.71)
	근로유지형	149 (1.81)	155 (0.85)	86 (0.4)	12 (0.35)	402 (0.79)
	인턴 및 도우미형	96 (1.17)	254 (1.4)	447 (2.09)	88 (2.54)	885 (1.73)
	시간제 자활근로	211 (2.57)	522 (2.88)	570 (2.67)	95 (2.74)	1,398 (2.73)
	게이트웨이	2,927 (35.64)	5,673 (31.26)	6,097 (28.54)	1,351 (39.01)	16,048 (31.35)
	기타*	7 (0.09)	4 (0.02)	4 (0.02)	2 (0.06)	17 (0.03)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기타에는 파일럿 사업단, 예비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외 위탁사업 포함됨.





# 국내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

1. 국내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2. 국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3. 소결



# III

## 국내외 자활역량평가 << 유사지표 동향 분석

### 1. 국내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본 절에서는 자활역량평가와 유사한 다섯 가지 국내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자활역량평가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유사지표로는 국민연금의 근로능력 평가표 중 활동능력평가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 근로역량평가표,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표,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자 선발 기준표,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고려하였으며, 개별적인 평가표의 평가 항목들과 배점 기준을 분석한 후 표를 통해 이를 직접 비교하였다(표: 부록1 참조).

#### 1)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 (1) 개요

##### ① 목적

보건복지부(2023a, p.2)의 「2023 근로능력 판정사업안내」에 따르면 근로능력 판정제도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데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그리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② 평가 대상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의 평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23a).

## ③ 절차

근로능력 평가는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총 일곱 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먼저,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 대상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이는 시·군·구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된다. 공단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근로능력 평가는 크게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구분된다. 의학적 평가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사본 등 사전에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공단은 필요할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활동 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가 1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을 토대로 공단 직원이 면접 평가, 관찰평가 및 상황 평가를 통해 총점 75점 내외로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근로능력 평가 결과는 공단에서 시·군·구를 거쳐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 평가의 여러 단계 중 자활역량평가와 내용적 유사성을 보이는 활동 능력 평가의 평가 항목과 세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유사 지표들의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 ① 신체능력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능력 평가에서 신체능력은 간이 평가 항목<sup>1)</sup>으로, 운동기능 다섯 가지와 만성적 증상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운동기능이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보건복지부, 2023a), 팔 뻗기, 쪼그려 앉기, 평지이동, 층간이동, 물건 들고 옮기기가 이에 포함된다. 팔 뻗기 기능은 “상지 부위

1) 활동능력 간이평가 항목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능력 없음’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일 경우 또는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일 경우에 그러하다 (보건복지부, 2023a : 106).

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인 어깨, 팔꿈치, 손목’의 기능과 관절, 그리고 손가락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채점한다. 쪼그려 앉기란 “하지 부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인 고관절, 무릎, 발목의 기능과 근력”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이다. 평지 이동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오래 외출이 가능한지”, 층간이동을 평가할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있어 전반적인 어려움 정도”를 본다. 물건 들고 옮기기는 “자신의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각 항목은 1점-4점으로 채점되며, 이를 합산하여 신체적 활동 점수를 계산한다.

만성적 증상이란 판정을 신청한 질환 외에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를 일컫는다. 두 가지 항목 (입·통원 및 약 복용)에 대해 각각 1점-5점으로 채점한 후 합산하여 만성적 증상 점수를 도출한다.

## ② 인지능력

인지능력의 하위 범주로는 자립성과 사회성이 있는데, 자립성이란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회성이란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건복지부, 2023a). 자립성은 건강관리와 자기관리 항목으로 측정하며,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최소 1점 최대 5점의 점수를 부과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자립성 점수를 산출한다. 사회성은 의사소통, 감정 조절, 대처능력, 그리고 공간지각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부과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사회성 점수를 산출한다.

## ③ 음주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최소 1점에서 3점으로 측정한다.

## ④ 영향 요인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능력 평가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영향 요인으로 간주한다. 자격증, 근로 경험, 구직동기, 연령, 그리고 학습 능력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유관 자격증 보유 유무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점의 점수를 받는다. 근로 경험은 취업 이력을 통해 근로활동 가능 여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경험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즉, 의지력을 통해 구직동기를 평가

하고 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1점 이상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습 능력 역시 취업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점 이상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2023a)의 근로 능력판정 안내 지침에 따르면 활동 능력 평가는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방법은 공단이 정한다고 명시할 뿐 자세한 평가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리하면 국민연금공단 내 활동 능력 평가는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의 항목 점수를 더해 총점 75점으로 채점한다.

〈표 III-1〉 근로능력평가 내 활동 능력 평가 항목

(단위 : 점)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점수 구성
신체 능력	1. 운동기능 (간이 평가항목)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①	팔뻐기	1-4
			②	쫓그려 앉기	1-4
			③	평지 이동	1-4
			④	층간 이동	1-4
			⑤	물건 들고 옮기기	1-4
	2. 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⑥	입·통원	1-5
⑦			약복용	1-5	
인지 능력	3. 자립성 (간이 평가항목)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할 수 있는 능력	⑧	건강관리	1-5
			⑨	자기관리	1-5
	4. 사회성 (간이 평가항목)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⑩	의사소통	1-5
			⑪	감정조절	1-5
			⑫	대처능력	1-5
⑬	공간지각력	1-5			
음주	5. 알코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⑭	음주문제	1-3
영향 요인	6.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⑮	자격증 보유	1-2
	7.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⑯	근로 경험	1-2
	8.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⑰	의지력	0-2
	9.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⑱	연령	1-3
	10.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⑲	학습능력	1-3

자료 : 보건복지부 (2023a). 2023 근로능력 판정사업안내. pp.68-70.

## 2)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근로역량평가표

### (1) 개요

#### ① 목적

국민취업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8). 이때 근로역량평가표는 국민취업제도의 수급자들이 취업활동계획<sup>2)</sup>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참고자료이다.

#### ② 평가 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수급자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 참여자와 II유형 참여자로 나누고 있으며<sup>3)</sup>,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생계지원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유형의 참여자 모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역량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근로역량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네 가지 점수 구간을 설정하여 점수별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간의 경계에 인접한 점수를 받았을 때는 상담사가 재량적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다.

#### ③ 절차

수급 자격이 신청자에게 결정·통보되면, 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급자들은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취업역량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에 참여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의 제12조는 취업활동계획에 대해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격자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비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지원 내용 탭(<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C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 (2)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 ① 구직 의지

구직 의지는 크게 ‘구직목표 수립’, ‘일자리 수용태도’, ‘구직 행동’의 세 하위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첫째, 구직목표 수립은 “취·창업을 하고 싶은 직업이나 기업을 정했다”를 포함한 다섯 가지 문항<sup>4)</sup>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목표 수립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일자리 수용태도는 네 가지 문항<sup>5)</sup>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자리에 대해 수용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구직 행동과 관련해서는 여섯 가지 문항<sup>6)</sup>이 존재한다. 응답자들은 이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였으며, 예를 선택한 경우 5점을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1점을 부과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구직행동 점수를 도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행동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각 평가지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5점, 20점, 30점이다. 구직 의지는 이 점수를 합한 뒤 여기에 사전에 부여된 가중치 25/75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환산한다. 즉, 원점수 75점을 받았다면 구직의지에 대한 최종 점수는 25점이 되는 것이다.

### ② 구직장애요인

구직장애요인의 세부 평가지표에는 ‘가족부양’, ‘경제적 취약성’, ‘근로가능시간’, ‘지리적 위치’가 있다.

- 
- 4) “취·창업을 하고 싶은 직업이나 기업을 정했다”; “취·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회(일자리 등)가 생기면 바로 취·창업할 생각이다”;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취·창업을 목표로,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적극 사용할 것이다”
  - 5) “실제 임금이나 소득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기업의 규모나 안정성이 적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상담사가 추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 등도 고려할 수 있다”
  - 6) “최근 6개월 내, 취업정보(취업공고)를 찾아본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 본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내, 내 주변에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내, 취업지원기관을 방문해본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내 기업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내 면접을 받아본 적이 있다”

경제적 취약성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다음의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산출한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역채점)”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것을 의한다.

근로가능시간은 “개인 사정상, 8시간 전일제가 아닌 특정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와 “개인 사정상, 주 5일 근무가 어렵다”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1=매우 그렇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이때 두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가깝게 응답할수록 점수가 낮게 부여되어 근로가능시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위치 역시 구직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두 문항 즉, “개인 사정상, 출퇴근 왕복 2시간 이내의 직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자가용 대중교통 등)”에 대한 응답(1=매우 그렇다 ~ 5=전혀 그렇지 않다\*)을 합산하여 도출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리적 위치가 좋아 구직 장애 요인이 적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구직장애요인 영역의 배점은 45점이며, 사전에 설정된 가중치인 15/45를 곱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 즉, 구직장애요인의 최대 점수는 15점인 것이다.

### ③ 건강 상태

국민취업제도에서의 건강은 ‘종합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그리고 ‘신체적 건강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합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은 “현재 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종합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 상태는 다음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어렵다”와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신체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은 “오랜시간 자리에 앉아 있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을 것을 나타낸다. 가중치 15/20 적용 후 건강점수의 최대 점수는 15점이다.

#### ④ 구직역량

국민취업제도에서의 구직 역량이란 구직과 관련된 ‘배경 요인’, ‘직업 능력’, ‘취업 이력’을 종합한 것이다.

배경 요인으로는 참여자의 연령(2점-5점)과 최종학력(2점-5점)을 필수 지표로 한다. 또한 ‘대학전공과 희망 취업 분야의 연관성(3점-5점)’, ‘고교유형(3점-5점)’, ‘대한민국 거주 기간(3점-5점)’, ‘한국어능력 수준(2점-5점)’, ‘해당없음(3점)’의 다섯 가지 지표 중 참여자에게 적합한 한 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점수를 부과한다. 여기에 연령에는 3/5, 최종학력에는 2/5, 그리고 선택 지표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세 항목의 점수 합이 10점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15/10을 곱하여 배경 요인은 전체 항목 중 1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직업 능력에서도 필수 지표와 선택 지표가 있다. 필수지표로는 ‘자격증 보유 개수’, ‘국가기술 자격 보유 개수’, ‘IT 활용 능력’이 있다. 자격증은 최근 2년 동안 취득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3개 이상일 경우 5점, 1-2개일 경우 4점, 없을 경우 3점으로 계산한다. ‘국가기술자격 보유 개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IT 활용 능력과 관련해서는 “PC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를 경우” 3점, “주로 인터넷활용, 동영상(유튜브 등) 시청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점,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자격증 보유 점수에는 1/5을,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점수에는 2/5를, IT 활용 능력 점수에는 2/5를 곱하여 활용한다. 한편, 선택 지표에는 ‘직업훈련 참여 횟수’,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그리고 ‘어학 점수 또는 어학 연수 경험 유무’가 있는데 3개 지표 중 참여자에게 적합한 1개의 지표를 선택하여 최소 3점, 최대 5점을 부과한다 (가중치 1). 최종적으로 필수 지표와 선택 지표의 점수를 합한 후 가중치 20/10을 곱해 직업 능력을 2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취업 이력으로는 미취업 기간(최소 2점-최대 5점)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최소 3점-최대 5점)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미취(창)업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중치는 1이기에 취업이력의 원점수가 곧 취업이력의 최종 진단점수이다. 여기에 다시 가중치 10/10을 곱하므로, 취업이력은 최종 점수에서 1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표 Ⅲ-2〉 구직역량 평가 설문지

(단위 : 점, %)

영역 및 평가 지표	문항	평가기준					비 중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 구 직 의 지	구직 목표 수립	1. 취·창업하고 싶은 직업이나 기업을 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5
		2. 취·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회(일자리 등)가 생기면 바로 취·창업을 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창업을 목표로,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 수용 태도	1. 실제 임금이나 소득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규모나 안정성이 작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상담사가 추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상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 등도 고려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및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아니오	네					
I. 구 직 의 지	구직 행동	1. 최근 6개월 내, 취업정보(취업공고)를 찾아본 적이 있다.	①	⑤				
		2.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다.	①	⑤				
		3. 최근 6개월 내, 주변에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⑤				
		4. 최근 6개월 내,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⑤				
		5. 최근 6개월 내 기업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온라인 채용 행사 포함)	①	⑤				
		6. 최근 6개월 내, 면접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⑤				

영역 및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비 중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II. 구 직 장 애 요 인	가족 부양	1. 일상생활을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미취학 자녀, 고령의 부모님, 병간호 필요 가족 등)	⑤	④	③	②	①	15
		2. 1과 관련,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님, 정부 혹은 지자체)	⑤	④	③	②	①	
	경제적 취약성	1.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근로 가능 시간	1. 개인 사정상, 8시간 전일제가 아닌 특정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개인 사정상, 주 5일 근무가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지리적 위치	1. 개인 사정상, 출퇴근 왕복 2시간 이내의 직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 수단이 마땅 치 않다 (자가용, 대중교통 등).	⑤	④	③	②	①	
	III. 건 강 상 태	종합적 건강 상태	1. 현재 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정신적 건강 상태		<표 III-1>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2.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신체적 건강 상태	<표 III-2> 오랜시간 자리에 앉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IV. 구직 역량 (45%) : 배경요인 (15%), 직업능력 (20%), 취업력 (10%)  
아래 <표 III-3> 참조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22) 국민취업제도 구직역량 평가 설문지 및 배점표 재구성.

※ 비중이란 영역별 진단점수에서 가중치를 적용한 후 최종 점수(100점 만점)에서 해당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가중치 적용 방식은 본문의 설명 참조.

〈표 Ⅲ-3〉 구직역량 평가 배점표

(단위 : 점, %)

영역 및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배점	비중
필수지표	연령	20-34세	5점	15
		35-49세	4점	
		50-64세	3점	
		65-69세	2점	
		15-19세	2점	
	학력수준 (최종학력)	4년제 대졸 이상	5점	
		전문대졸	4점	
		고졸	3점	
		중졸 이하	2점	
	선택 지표	아래 5개 지표 중 참여자에게 적합한 1개 지표 선택		
1. 배경요인  선택한 지표 체크 후 해당 지표만 배점	<input type="checkbox"/>	대학전공과 희망 취업 분야의 연관성	연관성 높음	5점
			어느 정도 관계 있음	4점
			연관성이 낮거나 희망 취업 분야 미정	3점
	<input type="checkbox"/>	고교유형	마이스터고 졸업	5점
			특성화고 졸업	4점
			일반고 졸업	3점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거주 기간	7년 이상	5점
			4-6년	4점
			3년 미만	3점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능력 수준	직장생활 관련 전문용어 이해	5점
			일상적인 대화가 원활	4점
			서툴지만 일상 대화 가능	3점
			기본적인 일상 대화가 어려움	2점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점

영역 및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배점	비중
2. 직업능력	필수지표	자격증 보유 개수	3개 이상	5점	20
			1-2개	4점	
			없음 (0개)	3점	
		국가기술 자격 보유 개수	3회 이상	5점	
			1-2개	4점	
			없음 (0회)	3점	
		IT 활용 능력	오피스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5점	
			주로 인터넷 활용, 동영상(유튜브 등) 시청 목적으로 사용한다	4점	
			PC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3점	
	선택 지표	아래 3개 지표 중 참여자에게 적합한 1개 지표 선택			
	선택한 지표 체크 후 해당 지표만 배점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참여 횟수	3개 이상	5점
				1-2개	4점
				없음 (0개)	3점
		<input type="checkbox"/>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3회 이상	5점
0.5회 이상 3회 미만				4점	
없음 (0회)				3점	
<input type="checkbox"/>		어학 점수 또는 어학 연수 경험 유무	있음	5점	
			없음	3점	
3. 취업이력		필수 지표	미취업 (창업) 기간	3개월 미만	5점
	3-6개월 미만			4점	
	6 -12개월			3점	
	12개월 이상			2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5점	
			6개월-1년 미만	4점	
			없음	3점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22). 국민취업제도 구직역량 평가 설문지 및 배점표 재구성.

### 3) 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표

#### (1) 개요

##### ① 목적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인테이크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표이다 (보건복지부, 2023d).

##### ② 평가 대상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참여자와 재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면접을 진행하며, 근로 의지와 동기, 역량 등 자활가능성에 관련된 기초 정보와 개인력을 탐색한다.

##### ③ 절차

각 지자체의 사례관리팀에서 의뢰를 요청하면,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초기 면접, 욕구 사정 등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에는 각 과정에서 사례관리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2)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 ① 개인적 상황

자립역량 진단표의 개인적 상황 영역에 포함된 평가 항목은 연령, 근로 의지, 학력, 근로 능력, 질병 정도 (정서심리), 경력단절 기간, 자격증 보유 정도이다. 먼저 연령은 10점 만점으로 채점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 34세 이하에게는 10점, 35세 이상 44세 이하에는 8점, 45세 이상 55세 미만에는 6점, 56세 이상에는 2점을 부여한다. 근로 의지 역시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상, 중, 하의 세 단계 구분 후 순서대로 10점, 5점, 0점을 부여한다. 학력은 네 단계로 구분하며 5점 만점이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수준을 제4직능 수준이라고 칭하고 5점을 부여한다. 고등 및 기술교육 수준을 제3직능 수준이라고 하며 4점을 부여한다. 중등

교육 수준까지 받았을 경우 제2직능 수준이라고 부르고 3점을, 초등교육까지만 이수했을 경우 제1직능 수준으로 2점을 부여한다. 근로능력은 세 단계로 구분하고 5점 만점이다. 8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고 비장애일 경우 5점을, 4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면 3점을, 4시간 미만 근로가 가능하면 0점을 부과한다.

질병 정도 항목에서는 질병이 없는 자에 10점, 단기 치료(3월 이내)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자에 8점, 장기치료(6월 이내)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자에 6점, 만성질환(6월 이상)이 있는 자에 0점을 부과한다. 이는 정서 심리와 관련된 건강 상태를 포함하는 항목이다. 경력단절 기간도 개인적 상황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10점, 2-3년일 경우 8점, 4-5년일 경우 6점, 6년 이상일 경우 4점을 부과하며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개인적 상황 요인의 마지막 항목은 자격증 보유로, 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5점, 1개 이상 4점,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는 경우 3점,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정리하면,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 진단표에서 개인적 상황 요인은 5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 ② 환경적 상황

환경적 상황 요인에는 공적부조(현금 급여), 가족 사항, 신용 정도 항목이 포함된다. 최대수령액 대비 공적부조 비율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대수령액의 0~43%를 받는 경우 10점, 44~50%를 받는 경우 8점, 51~70%를 받는 경우 6점, 그리고 71% 이상을 받으면 4점을 부과한다. 가족사항은 가족과 관련된 취업 장애요인을 묻는 항목이다. 장애요소가 없을 경우 10점 만점, 서비스 연계시 즉시 해소될 수 있는 경우 8점을 받는다. 부분 돌봄대상 1명 이상인 경우 6점, 부분 돌봄대상 2명 이상인 경우 4점, 그리고 직접 돌봄대상이 1명 이상인 경우 0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용 정도는 세 단계로 분류하는데, 신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5점,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이 필요할 경우 3점, 파산이 필요할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③ 담당자 의견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 진단표에는 담당자의 의견이 20점 이내로 반영된다. 담당자는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서식 태도와 취업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총 20점 만점으로 각 항목을 2점 단위로 채점한다(0점/2점/4점/6점/8점/10점).

④ 슈퍼바이저 평가 점수

평가 대상자들은 개인적 상황 최대 55점, 환경적 상황 최대 25점, 담당자 의견 최대 20점을 합해 최대 100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여기에 슈퍼바이저는 5점 이내에서 점수를 가감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80점에서 100점 이상은 단기 성과대상(A그룹), 60점에서 79점은 중기 성과대상(B그룹), 마지막으로 0점에서 59점은 장기 성과대상(C그룹)으로 구분한다.

〈표 Ⅲ-4〉 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 진단표

(단위 : 점)

영역	내용	평가기준	배점기준	평가	비고
개인적 상황 (55)	연령 (10)	34세 이하	10		
		35세 - 44세	8		
		45세 - 55세	6		
		56세 이상	2		
	근로의지 (10)	상	10		
		중	5		
		하	0		
	학력 (5)	제4직능 수준 (~대학, 대학원교육 수준)	5		
		제3직능 수준 (~고등, 기술교육 수준)	4		
		제2직능 수준 (~중등교육 수준)	3		
		제1직능 수준 (~초등교육 수준)	2		
	근로능력 (5)	8시간이상 근로가능 및 비장애	5		
		4시간 이상 근로가능	3		
		4시간 미만 근로가능	0		
	질병정도 (정서심리) (10)	질병 없음	10		
		단기치료(3월 이내)가 필요한 질병	8		
		장기치료(6월 이내)가 필요한 질병	6		
		만성질환(6월 이상)	0		
	경력단절 기간 (10)	1년 이하	10		
		2년 - 3년	8		
4년 - 5년		6			
6년 이상		4			
경력 없음		0			
자격증 보유 (5)	2개 이상	5			
	1개 이상	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없음	0			

영역	내용	평가기준	배점기준	평가	비고
환경적 상황 (25)	공적부조 (현금급여) (10)	최대수령액의 0 - 43%	10		
		최대수령액의 44 - 50%	8		
		최대수령액의 51 - 70%	6		
		최대수령액의 71% 이상	4		
	가족사항 (10)	장애요소 없음	10		
		서비스 연계시 즉시 해소	8		
		부분 돌봄대상 1명 이상	6		
		부분 돌봄대상 2명 이상	4		
		직접 돌봄대상 1명 이상	0		
	신용정도 (5)	관련 없음	5		
		개인 희생 및 신용회복 필요	3		
		파산 필요	0		
	담당자 의견 (20)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서식 태도 (0/2/4/6/8/10)			
취업 가능성 (0/2/4/6/8/10)					
합 계					
슈퍼바이저 평가점수 (-5점 ~ + 5점)					
진단·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 : 단기 성과대상 (80점 - 100점)</li> <li>• B그룹 : 중기 성과대상 (60점 - 79점)</li> <li>• C그룹 : 장기 성과대상 (0점 - 59점)</li> </ul>			(       ) 점	

자료 : 보건복지부 (2023e).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2023년 개정판. pp.120-121.

#### 4) 기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 (1)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① 목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 유

형에 따라 상이한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sup>7)</sup> 사업의 선발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② 평가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자를 평가한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시장 사업단의 참여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다.

## ③ 절차

지원자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서 지원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발기준을 활용하여 수요처에 적합한 자를 선발한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데, 1순위는 활동 역량, 2순위는 필요도, 3순위는 사무역량·인성역량·대인관계역량, 4순위는 유관 자격증, 마지막 순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이다.

## (2)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1 : 사회서비스형

### ① 활동 역량

활동 역량은 필수 지표로 총 4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활동 역량은 의사소통역량과 신체활동 능력으로 나뉜다. 먼저, 의사소통역량은 면접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사전달 능력과 경청 능력에 대해 각각 상·중·하의 세 단계 구분을 통해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의사전달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조리있게 표현했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경청능력은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2023b). 상은 10점, 중은 5점, 하는 0점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신체활동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보행능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연속,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뼉쳐 닿기를 본다. 세 가지 모두 충족했을 경우 20점, 두 가지 충족 시 10점, 한 가지 충족 시 0점을 부여한다.

7) 보건복지부(2023b)의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위 사업들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및 일부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 ② 필요도

필요도는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는 요소로, 공적수급여부와 세대구성을 고려하여 2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공적수급 여부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배점 체계가 상이한데,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차상위계층 자격 유무에 따라 10점(유) 또는 0점(무)을 받게 된다. 한편, 만 65세 이상일 경우 소득인정액 0원인 경우 10점을, 소득인정액 0원 초과인 경우 5점을, 기초연금 미수급자인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세대구성에 관한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와 동거할 경우 10점, 노인독신가구에 해당할 경우 8점, 노인부부가구일 경우 5점,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와 동거할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 ③ 선택 지표 : 사무역량, 인성역량, 대인관계 역량 (택 2)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에는 선택 지표가 존재하는데, 사무역량, 인성역량, 대인관계 역량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각 역량은 2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사무역량에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정보검색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능력 모두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10점, 5점, 0점을 부과한다. 이때, 컴퓨터 활용능력은 전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에 해당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간단한 질문 또는 컴퓨터 실습을 통해 확인한다. 정보검색 능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면접을 통해 판단한다.

인성역량에서는 적극성과 친절도를 평가한다. 적극성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상 5점, 하 0점)와 목표의식 또는 지원동기의 명확성(상 5점, 하 0점)을 포괄한다. 친절도는 면접태도를 통해 평가하며 상 10점, 중 5점, 하 0점을 부여한다.

대인관계 역량은 역량중심행동면접 질문을 통해 측정하며, 협조적 관계와 갈등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협조적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는 “아무도 떠맡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경험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가 있다. 갈등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싸움(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자신보다 위치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가 있다. 면접관은 협조적 관계 및 갈등해결 능력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을 상·중·하로 각각 평가하며, 상은 10점, 중은 5점, 하는 0점을 받게 된다.

④ 가점1 : 유관자격증 가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점 10점을 받게 된다. 유관자격증의 경우, 관련분야 국가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의 이수(수료)증은 유관자격증으로 인정 가능한데,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⑤ 가점2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

4차 또는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5점의 가점을, 3차 접종 완료한 경우 3점을, 1차, 2차 접종 완료 및 미접종자는 0점의 가점을 받는다. 예방접종 유무는 예방접종증명(종이서류, COOV 앱)을 활용하여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일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한다.

〈표 Ⅲ-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단위 : 점)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평가방식	
가 (필수)	활동역량 (40)	의사소통역량	의사전달능력(상)	10	(면접)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조리있게 표현했는가
			의사전달능력(중)	5	
			의사전달능력(하)	0	
		신체활동 능력	경청능력(상)	10	(면접)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가
			경청능력(중)	5	
			경청능력(하)	0	
신체활동 능력	① 보행능력 ②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연속 ③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뼉쳐 달기	3가지 총족	20	보행능력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2가지 총족	10		
		1가지 총족	0		
나 (필수)	필요도 (20)	공적수급 여부 (만60세-64세)	차상위계층 자격 有	10	참여신청서 응답
			차상위계층 자격 無	0	
		공적수급 여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0원	1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5	
			기초연금 미수급	0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평가방식
나 (필수)	필요도 (20점)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 無 동거	10	
			노인독신가구	8	
			노인부부가구	5	
			경제적 능력 有 동거	0	
다 (선택/ 택2)	사무역량 (20점)	컴퓨터 활용능력	활용능력 (상)	10	전산관련 자격증, 관련 질문 또는 실습
			활용능력 (중)	5	
			활용능력 (하)	0	
		정보검색 능력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상)	10	면접을 통해 판단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중)	5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하)	0	
	인성역량 (20점)	적극성	사업이해도 (상)	5	면접을 통해 판단
			사업이해도 (하)	0	
			목표의식/지원동기 명확	5	
			목표의식/지원동기 불명확	0	
		친절	면접태도 (상)	10	
			면접태도 (하)	0	
대인관계 역량 (20점)	협조적 관계	협조적 관계 (상)	10	역량중심행동면접 질문, 면접관 판단으로 배점	
		협조적 관계 (중)	5		
		협조적 관계 (하)	0		
	갈등해결 능력	갈등해결 능력 (상)	10		
		갈등해결 능력 (중)	5		
		갈등해결 능력 (하)	0		
라 (가점)	유관자격증 가점 (10점)	자격증 유	10	자격증, 수료증 제출	
		자격증 무	0		
마 (가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 (5점)	4차 또는 2가 백신 접종 완료	5	예방접종증명서 활용	
		3차 접종 완료	3		
		1차, 2차 접종 완료 및 미접종	0		

합계 : 100 (가점 포함 115점 만점)

자료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p.186-191 재구성

### (3)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2 : 시장 사업단

#### ① 경력

관련분야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련분야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10점을, 교육 이수자에 5점을, 위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 0점을 부과한다. 관련분야 경력은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지급하는데,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25점, 5년 이상 20점, 3년 이상 15점,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 5점을 부여한다.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은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23b).

#### ② 세대구성

주민등록의 등본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10점, 독거노인가구인 경우 8점, 노인부부가구(2인)에 해당될 경우 5점,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할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선발기준표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도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참여신청자가 노부모(직계존속)와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손자녀(직계비속)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그리고 참여자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③ 공적 지원 수급 여부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형사업단 선발기준 역시 공적 지원 수급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만65세 이상일 경우 소득인정액 0원인 경우 20점을, 소득인정액 0원 초과인 경우 10점을, 기초연금 미수급자인 경우 0점을 부과하며, 만 60세 부터 64세까지는 차상위계층 자격 유무에 따라 20점(유) 또는 0점(무)을 받게 된다.

#### ④ 활동역량

활동역량은 참여 적극성, 수행능력, 신체활동능력으로 구분된다. 참여 적극성의 경우 지원자의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을 고려하여 10점 이내의 점수를 부과할 수 있다. 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력 등을 고려하여 15점 이내의 점수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능력은 10점 이내로 채점한다. 이 때, 수행능력과 신체활동 능력의 점수가 0점일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가점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는 가점 사항이다. 4차 또는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5점의 가점을, 3차 접종 완료한 경우 3점을, 1차, 2차 접종 완료 및 미접종자는 0점의 가점을 받는다.

〈표 III-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시장형사업단 선발기준표

(단위 : 점)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비고
가	경력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교육 이수자	5	
			해당 없음	0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5				
나	세대구성 (주민등록 등본 기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10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 세대를 같이 하는 노부모, 18세 미만 손자녀,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다	공적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라	활동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0	수행능력과 신체활동능력의 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수행 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력 등)		15	
		신체활동능력		10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가점)	4차 또는 2가 백신 접종 완료		5	
		3차 접종 완료		3	
		1차, 2차 접종 완료 및 미접종		0	

자료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215.

## (5) 개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① 목적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2023d).

### ② 평가 대상

해당 사업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기준표를 활용하여 지원자들 중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참여형, 복지형-일자리 특수 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절차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지자체 소식지 등에 모집공고를 실시 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공고문에는 선발 예정 직무명을 기재하여 참여자가 희망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게 한다.

선발 시에는 참여 신청자의 제출 서류를 점검한 후, 사업수행기관 측에서 2인 이상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이때, 선발기준표의 고득점자 순서대로 참여자를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1순위,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순위, 여성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우선선발 기준이 존재하며 우선선발 기준에 대한 배점(50%)은 변경 불가하나 그 외의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에는 여러 유형 중 일반형 일자리 사업의 평가 항목과 선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6)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 일반형 일자리

### ① 우선 선발 기준

우선 선발 기준에는 사업참여 경력, 장애 정도, 소득수준, 여성가장 여부가 있고, 우선 선발 기준은 전체 배점의 50%를 차지한다. 먼저, 사업참여 경력의 경우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에게 30점, 최근 3년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에게 25점, 최근 3년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에게 20점, 최근 3년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에게 15점을 부여한다. 즉, 최근 참여경력이 없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0점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5점을 부여받게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5점, 차상위 계층일 경우 2점,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들과 달리 여성 가장 여부를 선발 기준으로 고려한다. 여성 가장인 경우 5점, 그 외의 경우 2점을 받게 된다,

### ②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을 통해 참여 의지, 자기관리 정도, 자기소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지시에 대한 이해력, 지시 수행 능력, 대인서비스 적합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세부 항목은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성격에 따라 문항을 취사 선택 혹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수와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 ③ 가점 사항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대상자, 장애인 일자리 우수 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점 대상이 된다.

〈표 Ⅲ-7〉 장애인 일자리 -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단위 : 점, %)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비고	
우선 선발 기준	사업참여 경력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1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5	5%
		차상위 계층	2	
		해당사항 없음	0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5	5%
그 외		2		
기본 직무 및 사 회 활 동 능 력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1-5	50%	
	배점 비율을 고려하여 문항 수 및 배점 조절 가능	1-5		
		1-5		
		1-5		
		1-5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 수행을 통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li> <li>• 자기관리 정도 (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li> <li>• 자기소개 (인적사항 등)</li> <li>•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li> <li>• 적극적인 태도</li> <li>• 책임감</li> <li>•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li> <li>• 지시에 대한 이해력</li> <li>• 지시에 따른 수행능력</li> <li>•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li> <li>• 문서복사 가능 정도</li> <li>• 문서 전달 가능 정도</li> <li>•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정도</li> </ul>
가 점 사 항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시범사업 대상자 (10점)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또는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5점) :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수여자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 (5점)			
	자격증 소지여부 : 2개 이상소지 (10점), 1가지 소지 (5점),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해야 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195.

## 2. 국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동향 분석

본 절에서는 자활역량평가와 유사한 해외의 지표들을 통해 국내 자활역량평가지표 적용 및 개선에 있어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미국가, 즉,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영미국가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근로와 자활을 촉진하는 대표적 국가로 알려져 있다(Peck, 2001).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영미국가에서는 현재 국내 시·군·구에서 활용하는 자활역량평가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국내 유사지표들과도 상당히 호환되는 내용의 지표들을 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활역량지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살폈다. 특히 근로능력이 담보되어 있으면서 근로 능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자(근로역량강화 대상자)와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상자(근로의욕증진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각 국가가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의 맥락은 다르다. 이해를 돕고자 먼저 지표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과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에 세부지표들과 그 특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전개했다.

### 1) 미국

#### (1)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활용 배경

미국은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이 이뤄지는 국가이다. TANF는 자녀가 있는 빈곤한 가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최종적으로는 빈곤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TANF 규정(2008)에 따르면, TANF 수급자는 자녀 연령 및 배우자 유무, 기타 신체적·환경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55시간까지 근로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가구의 전반적 경제상황 및 양육환경, 수급자 개인·가구의 자활역량 및 고용장벽(employment barrier)을 파악하고자 수급 초기에 전체적으로 가구 전반 상황을 스크리닝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TANF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각 주 정부로 재원을 공급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 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TANF 제도 및 자활사업 운영방식은 철저히 주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에서 TANF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자활역량을 평가

하는 방식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 정부는 크게는 두 가지의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는 사정도구나 각종 검사 등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자활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 다른 방식은 일선 워커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거나 관찰하여 비공식적으로 자활역량을 사정하는 방식이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이 방식에 따라 주 정부 내 관할부처직원, 민간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초기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정도구나 간이검사를 통해 자활역량을 측정하는 일부 주의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국내 자활역량지표에 함의를 얻을 수 있는 지표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이외 고용연계사업 등에서 새롭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사지표도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였다. 미국에서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스크리닝 항목들은 TANF 수급자, 즉 자녀가 있는 빈곤가구(한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하기에 자녀 양육·보육·교육과 관련한 문항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의 기초수급보장제도의 맥락과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보육·교육과 관련 문항 대신 개개인의 고용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더 방점을 두고 지표들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 (2)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소개

### ① 유형1 : 단일한 자활역량지표를 사정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유형1은 주 자체 내에서 단일한 초기사정을 위해 단일한 초기사정 툴을 활용해 자활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있는 사정도구 중 하나는 자활매트릭스(self-sufficiency matrix)다. 빈곤층, 취약계층, 수급자 등 복지수혜자의 자활시 주요하게 점검되어야 하는 항목과 수준(점수)을 매트릭스 형태로 기재하여 체크하는 지표다. 본 지표가 자활영역에서 활용되게 된 계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TANF가 포괄보조금 방식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GPRA)에 의해 포괄보조금이 진행되는 사업은 반드시 성과지향관리 및 책무체계(Results Oriented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 ROMA)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배경 아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가 자활매트릭스이다(Anderson, 2015).

자활매트릭스는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Diana Pearce 박사 연구팀이 워싱턴주 내에서 빈곤층의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활표준기준(Self-Sufficiency Standard)의 주요 항목들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고안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Fassaert et al., 2014). 크게는 소득, 주거, 보육, 식량, 이동수단, 보육, 기타필수품 지출 항목을 통해 경제적 자활수준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Pearce et al., 2011), 이 항목들을 변형한 자활매트릭스가 현장에서 활용되어왔다. 현재 아리조나, 인디아, 캘리포니아, 켄터키 등 상당수의 주 및 카운티에서 자활매트릭스를 활용하고 있다.

자활매트릭스는 본래 초기사정이 아닌 성과평가를 위해 고안된 지표로, 국내 지역 자활센터에서 쓰는 자립역량진단표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다. 이에 자활매트릭스는 사전-사후평가도구와 같이 진입 초기에 자활참여자의 자활능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항목으로 자활참여자의 상황과 변화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기에 소득, 고용, 주거, 식량, 보육, 자녀교육, 성인평생교육, 법적문제, 건강보험, 생활기술, 정신건강, 약물남용/음주, 가족관계, 이동수단, 지역사회개입, 안전, 양육기술, 신용문제 등과 같은 자활참여자 생활 전반을 체크하게끔 되어있으며, 각 항목 수준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자활매트릭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II-8>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국내 지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항목은 고용, 소득, 성인교육, 생활기술, 가족/사회적 관계, 이동수단, 지역사회참여도, 정신건강, 음주/약물남용문제, 건강문제와 타 문제들 간의 중첩으로 인해 고용장애(장벽)이 발생한 수준 항목이다. 특히 자활매트릭스에서는 학력문제를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학력이 갖춰졌을 때 일괄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교육수준을 체크한다. 또한, 학력뿐만 아니라 일할 때 취업 시 실질적으로 장벽이 되는 문해력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학습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자활참여자의 신체·정신건강문제가 다른 문제와 결합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위기상황인지, 아니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따로 살펴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른 여러 문제와 건강 문제가 중첩되었을 때, 자활참여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직접적인 고용능력 이외에도, 고용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상생활기술, 가족/사회적관계, 커뮤니티참여도와 같은 내용 또한 중요한 능력 및 자원으로 판단하여 자활역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자활매트릭스 내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Ⅲ-8〉 아리조나 주 자활매트릭스 예시

영역	1점	2점	3점	4점	5점
고용	무직	임시직/시간제/계절직, 급여불충분/기타 혜택없음	전일제, 급여불충분, 기타 혜택 거의(전혀)없음	전일제, 적정급여 및 복리후생 있음	정규직유지, 적정소득 및 복리후생 있음
소득	소득없음	소득 부적정수준, 즉흥적/부적정한 지출	급여/지원금을 통해 기본필요 충족, 적정지출 가능	급여/지원금 없이 기본필요 충족, 부채관리 가능	소득충분, 소득 여유있어 저축 가능
성인교육	문해력 및 학력문제로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 있음	검정고시학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록 (취업의 지장 줄 정도로 영어 구사가 어려운 건 아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소지	취업 위한 문해력 높이기 위해 관련 추가교육 이수완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완료	문해력 이슈 없음
생활기술	위생관리, 식사, 일상활동과 같은 기본 욕구 충족 불가능	위생, 식사, 일상활동 중 몇 가지는 도움 없이 충족	위생, 식사, 일상활동 대부분 도움 없이 충족	기본적 일상생활 필요 충족 가능	자신의 일상생활 가능, 가족/기타 관계에 대한 일상지원까지 가능
가족/사회적 관계	지원가능한 가족 및 친구 부족 또는 자녀/배우자/부모 학대 및 방임	가족/친구와는 지지적 관계이나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기 어려움, 가족 및 주변관계 관계 소홀, 또는 잠재적 학대 및 방임가능성 엿보임	가족 및 친구가 일부 지원 부정적 면을 인식하거나, 이러한 어려움을 바꾸기 위해 소통하고 지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	강력한 친구 및 가족의 지원, 가족구성원의 상호노력이행	건강하고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 있음, 가정 안정적이며 의사소통 지속적으로 열려있음
이동수단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 불가(자동차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	교통수단 이용은 가능하나 원하는 때 자유롭게 활용 어려움, 또는 교통수단은 있으나 면허가 없음	교통수단 이용하고 관찮지만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불편. 운전자 면허 있고, 최소한의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음	출퇴근을 위해 교통편 이용 가능	교통편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수준 적절하며, 보험도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음

영역	1점	2점	3점	4점	5점
커뮤니티참여	지역사회 내 위기/재난 상황으로 (생존모드) 해당 없음	사회적으로 고립상태 또는 사회적 기술 부족 또는 사회참여 동기 부족	참여동기는 있으나 방법, 지식 부족	커뮤니티 활동 일부 참여하나 교통 또는 육아문제 같은 장애요인 있음	커뮤니티 적극적으로 참여
정신건강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정신과적/심리적 증상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 타해/자해위험, 자살위험 있는 경우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어 만성적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 자타해 위험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미한 증상 있을 수 있는 정도, 정신건강문제로 인해 중간수준의 일상적 어려움 있는 경우	일상 스트레스로 인해 예상되는 경미한 증상 (약간의 기능장애 동반할 수 있음)	증상이 거의 없음. 일상활동에 대한 기능도 우수. 일상에서 우려되는 문제없음.
음주/약물남용	심각한 음주/약물남용 문제로 재활시설생활 또는 입원 필요	다음의 음주/약물 의존증상에 충족되는 경우 음주/약물에 대한 집착성향, 금단현상, 끊기 회피, 일상생활 어려움	최근 6개월 이내 음주/약물과 관련되어서 직업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문제 있음	(직업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와 관련되어) 최근 6개월 이내 심각한 음주/약물남용의 문제나 증거가 없음	최근 6개월 이내 음주/약물 사용 없는 경우
타문제-신체/정신건강문제 연관도 (고용장애)	위급 주거, 고용,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해 현 증상이 심각하게 영향을 주며 위중하거나 만성적인 상황	취약 주거, 고용,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해 가끔, 간헐적으로 급성/만성 증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안전 주거, 고용,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해 거의 급성/만성 증상치료 이루어진 상황	역량강화(과정중) - 약물관리 치료 등을 통해 임상적 증상 조절하여 현재는 무증상인 상태	잘 관리됨 - 확인되는 장애 없음
기타	위험	취약	안전	역량강화(과정중)	역량강화(완료)

\* 자녀교육/양육, 주거/안전, 의료보험 항목 제외

자료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rizona's Self-Sufficiency Matrix,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1562/self-sufficiency-matrix-using-hmis-to-benchmark-progress-sample/>)

주 정부가 주 사정에 맞게 간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지표를 개발한 사례도 있다. 오레건 주 가족복지부(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ren : ODHS)에서는 주 법령(OAR 461-135-0485)에 근거해 TANF 수급자에게 고용가능성을 사정하는 간이도구(Employability Screening Tool)를 개발하여 일선 워커들이 활용하게끔 하고 있다(〈표 III-9〉 참고). 이 사정도구는 수급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가 기입식 지표로, 워커는 이후 면담을 통해 지표내용에 대한 추가상담을 통해 근로가능자, 유사근로가능자, 근로불능자를 선별한다.

〈표 III-9〉 오레건 주 고용능력척도 예시

항목	내용							
고용	최근에 일한 경력 있는지? (예 응답시) 일한기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지금 구직 중인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학년 이하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input type="checkbox"/> 컬리지	<input type="checkbox"/> 준학사 (AA/AS)	<input type="checkbox"/> 학사 (BA/BS)
	의무교육 이후 고등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중복선택)	<input type="checkbox"/> 커뮤니티칼리지	<input type="checkbox"/> 잡콕스(Job Corps)	<input type="checkbox"/> 군대	<input type="checkbox"/> 4년제 대학			
건강	<input type="checkbox"/> 직업학교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현재 고등교육 또는 직업훈련 받고 있는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현재 의료적 문제가 있는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현재 의료진 및 전문가 진료를 받고 있는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하는 활동에 (건강) 문제 있는지? (중복선택)	<input type="checkbox"/> 지시 따르기	<input type="checkbox"/> 주의력	<input type="checkbox"/> 집중력	<input type="checkbox"/> 일어나기			
	<input type="checkbox"/> 앉기	<input type="checkbox"/> 서있기	<input type="checkbox"/> 걷기	<input type="checkbox"/> 굽히기				
	<input type="checkbox"/> 숨쉬기	<input type="checkbox"/> 잡자기	<input type="checkbox"/> 먹기	<input type="checkbox"/> 보기				
	<input type="checkbox"/> 듣기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술(알코올)	<input type="checkbox"/> 약물 의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런 문제들이 일할 때도 지속될 것 같은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가구구성원 중 의료적 문제 있는 사람 있는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강점 (중복선택)	<input type="checkbox"/> 근로한 이력	<input type="checkbox"/> 근로 시 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교통수단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무교육 이수				
	<input type="checkbox"/> 좋은 직장인임	<input type="checkbox"/> 집에서 인터넷 가능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교 재학 중	<input type="checkbox"/> 과거 직장/공동체 등에서 좋은 평판 받음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본인/가족 안전 지킬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여러) 문제들을 극복한 경험 있음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이력					
해결이 필요한 문제 (중복선택)	<input type="checkbox"/> 범죄 기록	<input type="checkbox"/> 근로경험 부족	<input type="checkbox"/> 학대/폭력 상황	<input type="checkbox"/> 불안정 거주지				
	<input type="checkbox"/> 약물, 알콜 의존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가구구성원으로 인한 불안정	<input type="checkbox"/> 교통문제					
	<input type="checkbox"/> 읽기문제	<input type="checkbox"/> 쓰기문제	<input type="checkbox"/> 수리능력 부족	<input type="checkbox"/> 언어문제 (이주인 등)				
	<input type="checkbox"/> 법적 문제 (이혼소송, 자녀 양육권 문제, 채권추심 등)							

\* 가정환경지표 제외

자료 :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ren (2022), Employability Screening Tool, 비공개 내부자료

이 지표의 주된 특징은 간단하게 건강 문제와 고용 이력 상태를 확인한다는 점, 본인이 근로를 이행할 때 해결이 필요한 문제나 본인이 근로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스스로 점검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자활매트릭스와는 차이가 있다.

워싱턴 주의 자체 자활프로그램인 Workfirst Program 참여자들에게 2021년까지 활용해왔었던 자립경로발전도구(Pathway Development Tool : PDT)<sup>8)</sup>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워싱턴 주의 PDT도 참여자가 자기기입식으로 문항을 체크하는 스크리닝 도구다. 강점기반(strength-based), 가족중심(family-driven) 접근에 따라 강점과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근로능력을 사정한다는 점에서는 오레건 주의 지표와 일부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수급자의 상황과 문제해결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타 지표에 비해 정성적 문항을 활용하고,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워커와 자활참여자 간의 심층인터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표는 자활역량만을 측정하는 도구라기보다는, 국내 자립역량평가나 자활매트릭스와 같이 향후 자활역량의 변화나 성과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이에 지표 내용도 자활참여자의 전반적 삶의 욕구와 자활에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해당 지표를 통해 근로가능자 및 불능자를 선별하는 것을 넘어 개별화된 계획과 개입을 수행하고자 지표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ESA, 2021).

자립경로발전도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 III-10>에 기술하였다. 특히 다른 지표들과는 다르게 예 또는 아니오 질문이 없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여러개 체크하고, 추가로 본인의 욕구나 상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일선 워커는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뒤, 개별화된 목표설정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지표는 SWOT(강점, 약점, 기회, 취약점) 분석에 기반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례관리자가 문제를 사정함과 동시에 자립목표를 즉각적으로 설정하기에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급여대상자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성찰해보게 하는 문항(1번 문항)을 삽입함으로써, 본인의 주관적 상태와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강점까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자활참여자의 실제 근로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7번 문항으로 실제로 본인에게 능숙한 기술을 강점관점에 초점을 두고 표시하게끔 되어있다. 정보기술 및 컴퓨터, 수작업, 숫자/데이터 작업과 같이 기술적 측면의 강점뿐만 아니라, 팀의 일부로 일하기, 창조성 발휘하기, 사람들 도와주기,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 및 계획능력과 같이 개인의 역량과 조직적응능력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8) 2021년도부터 11월부터 해당 도구의 활용이 잠정 중단되어 이후 사정 도구가 무엇인지는 파악이 어렵다.

〈표 Ⅲ-10〉 워싱턴주 자립경로발전도구 예시

문항 (해당 항목 모두 선택)	
<b>1. 귀하께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주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 <input type="checkbox"/> 좌절한 상태다 <input type="checkbox"/>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도감을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주눅들어 멍한 상태다 <input type="checkbox"/> 흥분된 상태다	<input type="checkbox"/> 무력하거나 두려운 느낌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고마움을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감히있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b>2 주 정부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일 때 귀하께서 성공적이라 느껴질까요?</b>	
<input type="checkbox"/> 내 가족을 위해 걸맞은 직업을 찾았다 <input type="checkbox"/> 관심분야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고졸학력인증서 및 고등학교 학위를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내 가족에게 긍정적 역할 모델이 되어주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input type="checkbox"/>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구했다 <input type="checkbox"/> 나 자신,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input type="checkbox"/> 나와 지역공동체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b>3. 귀하께서는 어떤 개인적 목표를 염두해 두고 계십니까요?</b>	
<input type="checkbox"/>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 <input type="checkbox"/>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 <input type="checkbox"/> 관심있는 공부를 좀 더 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안정적이고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더 나은 생활	<input type="checkbox"/> (타인에게) 되돌려주고 기여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직무 경험을 쌓는 것 <input type="checkbox"/> 좋은 부모가 되는 것 <input type="checkbox"/>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input type="checkbox"/> 독립과 자유를 확보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기타 :
<b>4. 목표를 방해하는 문제는 뭔가요?</b>	
<input type="checkbox"/> 구하고 싶은 직장과 관련된 경력 없음 <input type="checkbox"/> 법적 또는 신원 조회 문제 <input type="checkbox"/> 미취업 상태 또는 취업기술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치 못함 <input type="checkbox"/> 일하거나 학교를 가야하는 데 보육시설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인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교통수단 없음 <input type="checkbox"/> 안정적 주거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녀 양육문제 (안전, 부채, 금전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자녀의 학교문제 <input type="checkbox"/> 너무 많은 (복지)기관과 얽혀있는 것 <input type="checkbox"/>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
<b>5.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b>	
<input type="checkbox"/> 수당 지원 <input type="checkbox"/> 교통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및 자원연계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 관련 자원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수당 옵션 (자활연계, 자녀양육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 기회 상담 <input type="checkbox"/> 육아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항 (해당 항목 모두 선택)	
6. 개인 및 역량강화, 가족강화를 위해 관심갖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input type="checkbox"/> 가족과 시간보내기 <input type="checkbox"/> 건강 돌보기 <input type="checkbox"/> 운동 <input type="checkbox"/> 취미생활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학교 기타 공동체와 연결	<input type="checkbox"/>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축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친구, 가족 간 친목도모 <input type="checkbox"/> 학습, 읽기, 기술향상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교에서 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7. 귀하께서 즐기기도 하면서 능숙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input type="checkbox"/>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정보기술,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숫자, 데이터 작업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type="checkbox"/> 조직계획	<input type="checkbox"/> 창조성 발휘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수작업 <input type="checkbox"/> 사람들 돕기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8. 귀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가장 집중하고 싶은 2가지 체크)	
<input type="checkbox"/> 무료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배움 <input type="checkbox"/> 안전한 보육환경 <input type="checkbox"/> 유급·무급 직업 경험 <input type="checkbox"/> 도움 될만한 자원 탐색 <input type="checkbox"/> 공중보건 자원연계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인 지원 이어가기, 목표설정 <input type="checkbox"/> 육아지원 및 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및 장애인복지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 자원 연계 <input type="checkbox"/> 교육기회 상담 <input type="checkbox"/> 자녀의 학교·보육시설 내에서의 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연계되어 있는 타 기관과의 협력활동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수당 지원 방안 확인 <input type="checkbox"/> 법적 문제 지원 <input type="checkbox"/> 자녀양육옵션 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전관리

\* 일부 참고 불필요한 문항 (기타 추가의견 등) 제외

자료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2021), Personal Pathway,  
<https://www.dshs.wa.gov/sites/default/files/forms/pdf/11-154.pdf>

## ② 유형2 : 고용장벽과 관련해 별도의 지표 및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

한편 유형2는 별도의 통합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개별 스크리닝 및 유료척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자활참여자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다.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지에서 이런 유형이 관찰되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의 자활프로그램인 CalWork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초기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State of California, 2019). 기본적으로는 일선 워커와의 1:1 면담에 근간해 가족상황, 고용이력, 직업기술, 교육/학습장애,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흥미분야, 적성, 인지능력, 일에 대한 태도와 동기,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패턴, 재정적

자원 및 욕구, 필요 서비스와 욕구, 과거고용정보, 자원유형화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파악한다. 하지만 면담 이후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필히 학습능력을 스크리닝 도구(Learning Need Screening : LNS)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학습장애가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경미하게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근로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대상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활용하는 LNS는 워싱턴, 플로리다, 일리노이 주 등지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기본영역 A~D까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문해력, 산술계산과 같은 업무에 필요한 기초적 학습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점수는 Section A~D까지 항목을 가중치 합산을 적용하여 총점 산출한다. <표 Ⅲ-11>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표 Ⅲ-11> 학습욕구사정도구 예시(캘리포니아 주)

영역	문항	예	아니오
학습장애 (영역별 합산방식에 따름)			
Section A (예 응답×1점)	1.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습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가족구성원 중 학습문제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나열된 수를 다루고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거리를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문제지 내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ection B (예 응답×2점)	6. 사칙연산이 혼합된 수를 계산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초등학교 재학 당시 학습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ection C (예 응답×3점)	8. 알고 있던 간단한 단어도 생각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일정한 문서 양식을 채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어떤 숫자가 기억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ection D (예 응답×4점)	11. 아주 간단한 수도 머릿속에서 암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필기, 메모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학교 다닐 때 특수반 생활을 했거나 추가로 (학습과 관련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추가문항 (Section A 합산방식 준용, 12점 이상 시 추가사정 진행)			
특수학급교육 및 학습장애진단 여부, 학습에 지장있는 시력, 청력, 말하기 문제, 의료 및 신체문제(9종) 영역 추가 질문. 예 응답시 1점 산정			

자료 :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2023.07.01. 검색) Directions for County Worker : Learning Need Screening, <https://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WTW18.pdf>

캘리포니아주는 기본문항인 Section A~D영역 문항 이외에도, 추가문항을 자체 삽입함으로써 경증의 욕구와 중증장애를 가려내어 단계별로 학습욕구 및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특수교육이력, 시력, 청력, 스피치, 의료와 관련한 추가문항을 삽입해 중증도를 평가하며, 추가문항 내에서 12점 이상으로 집계되면 학습장애 판정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학습능력 이외에도 신체, 심리, 정서, 인지능력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자 질병과 관련한 주치의소견서를 포함하여, 웨슬러지능검사, Beck의 우울척도, 다면적 인성검사(MMPI), 고용장벽테스트(Employment-Barrier Test), 고용희망척도(Employment Hope Scale) 등과 같은 전문가가 진단하는 유료·비공개검사를 추가 의뢰·활용하기도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이와 비슷하게, 네바다주 역시 전체적으로 일선 워커가 면담을 통해 자활역량을 파악한다. 일선 워커는 면담을 수행하면서 필요할 시 구직준비사정(고용장벽 및 고용능력 측정), 심리사회사정척도, 수리-언어능력검사, 알콜중독스크리닝, 직업재활사정 도구 등의 여러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tate of Nevada, 2020). 이 중 음주·약물남용문제와 같은 경우는 Ewing(1984)가 개발한 CAGE라는 간이도구를 활용하는데, 이 간이도구 역시 타 주들에서 널리 활용하는 간이도구 중 하나다. CAGE는 음주·약물과 관련한 4가지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지표다. 단주·단약 필요성(cutting down), 음주·약물관리에 권유에 대한 불쾌감 표시(annoyance by criticism), 음주·약물문제로 인한 죄책감(guilty feeling), 기분환기·정서안정(eye-opener)를 위해 음주·약물을 이용하는지를 매우 간단하게 물어본다. 이 중, 2문항 이상이면 음주·약물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자활 대상자들에게도 음주이슈는 근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김용석 외, 2015; 이은희, 2021), 자활참여자에게 음주문제에 대한 문항을 간략하게나마 점검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표 Ⅲ-12〉 음주/약물남용문제 스크리닝 간이도구(CAGE)

문항	예	아니오
1. 약물복용(또는 음주)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주변인들이 약물복용(또는 음주)을 비판하는 문제로 인해 짜증났던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약물복용(또는 음주)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기분이 나빴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정을 찾기 위해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약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아침에 눈뜨자 마자 숙취해소를 위해 또는 안정을 찾기 위해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자료 : Ewing, J. A. (1984). "Detecting Alcoholism : The CAGE Questionnaire". JAMA. 252 (14) : 1905-1907.  
 자료 : Johns Hopkins Medicine. CAGE Substance Abuse Screening Tool. (2023. 07.01 자료인출)  
[https://www.hopkinsmedicine.org/johns\\_hopkins\\_healthcare/downloads/all\\_plans/CAGE%20Substance%20Screening%20Tool.pdf](https://www.hopkinsmedicine.org/johns_hopkins_healthcare/downloads/all_plans/CAGE%20Substance%20Screening%20Tool.pdf)

### ③ 타 사업 관련 유사지표

그 밖에도 자활사업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고용지원을 위한 기본능력을 간단하게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자활역량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한다. 특히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이상아 외, 2021), 청년들의 고용역량 및 기초능력을 간단하게나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일리노이 주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특히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 본 역량평가 스크리닝 도구(Basic Skill Screening Tool)를 활용한다(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2021). 문항은 간단하지만, 학력, 문서작성능력, 산술연산, 컴퓨터능력, (영어) 문해력을 전반적으로 사정하여, 기본적인 능력수준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문서기록 능력이나 사칙연산, 컴퓨터업무 같은 내용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질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문항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II I-13〉 참고).

〈표 III-13〉 일리노이 주 청년/성인 고용지원 역량평가 스크리닝 도구 예시

문항	예	아니오
1. 고등학교 학위, GED자격, HSED자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누군가의 조력 또는 도움 없이 지시받은 내용을 보고서/표로 기록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기본적인 의료양식 및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계산기 사용 없이 3자리 이상 숫자의 사칙연산 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컴퓨터로 기본적인 업무 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영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영어구사능력을 토대로 일을 구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료 :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2021). Basic Skill Screening Tool.

<https://www.illinoisworknet.com/WIOA/Resources/Documents/WIOA%20Policy%205.9%20Basic%20Skills%20Deficiency%20Assessment%20Requirements.pdf>

## 2) 호주<sup>9)</sup>

### (1)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활용 배경

호주는 공공부조, 실업부조, 기타 사회수당과 연계된 급여신청자 및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활 및 근로역량을 측정한다. 호주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Service Australia)의 산하기관인 복지급여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센터링크(Centerlink)에 소속되어 있는 일선 워커가 일괄적으로 급여대상자의 근로능력을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근로의무대상자 및 구직희망자로 평가된 이들은 교육기술고용부 산하 고용서비스제공기관인 워크포스오스트레일리아(Workforce Australia)<sup>10)</sup>라는 기관으로 자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먼저 센터링크는 근로가능자와 근로불능자를 구분하기 위한 구직능력을 사정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때 센터링크가 급여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자가기입식 질문지인 근로능력지표(Work Capacity : WC)를 작성이다. WC의 내용 검토 후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적 사정을 수행하거나, 의료적 문제는 아니지만, 가정

9) 호주가 2020-2022년에 걸쳐 코로나에 대응하고 디지털 정부에 걸맞는 서비스부서 개편 및 시스템 개선을 시도했기에, 국가 발간 자료보다는 신규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절은 각 담당부서의 공식 홈페이지인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www.servicesaustralia.gov.au](http://www.servicesaustralia.gov.au)), 워크포스오스트레일리아([www.workforceaustralia.gov.au](http://www.workforceaustralia.gov.au))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집필하였다.

10) 과거 Job Services Australia(2009-2015), Jobactive (2015-2022)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Workforce Australia로 명칭과 기능이 개편되었다. 한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관이다.

폭력, 학대, 출소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어 비의료적 사정이 필요한 경우는 의학·비의학적 심층사정을 진행하는 고용서비스사정평가(Employment Services Assessment : ESA<sub>t</sub>)<sup>11)</sup>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급여신청자는 WC 내용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ESA<sub>t</sub>를 진행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이후에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평가 후 ① 즉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 ② 구직관련 도움이 필요한 자 ③ 건강 및 기타 중요문제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자로 대상이 구분된다.

한편 센터링크를 통해 구직 및 근로의무가 부여된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포스오스트레일리아(Workforce Australia) 일선 워커가 실시하는 구직자 분류 도구(Job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 JSCI)를 통해 전반적인 구직 및 고용상태를 판단한다. 구직과정 및 고용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은 다시 센터링크의 ESA<sub>t</sub>를 재의뢰할 수도 있으며, ESA<sub>t</sub>를 수행하기 전 미리 JSCI 결과자료를 ESA<sub>t</sub> 평가 전문가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이유는 최근 변화된 호주 행정체계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서비스의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2022년 호주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이용절차를 상당부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WC와 JSCI 진행방식도 달라져서 대면진단에서 온라인으로 자가진단한 뒤 디지털 방식의 면담으로 전환<sup>12)</sup>되었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3). 급여신청자 및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WC 및 JSCI 문항을 입력하면, 일정 기간 내에 자활 및 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되고 온라인 툴을 활용해 비대면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세부 사정 및 목표수립 과정을 진행한다. 각 평가방식들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매뉴얼 형태로 고지되고 있고, 워커들은 이를 통해 변화사항 및 세부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

## (2)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소개

### ① 근로능력지표(Work Capacity)

WC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표와 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지표다. 근로능력평가표와 마찬가지로 WC 역시 수행하는 취지 자체가 장애연금 및 기

11) 평가의 세부항목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2) 참고로 온라인을 통해 JSCI를 시행하는 방식을 구직자스냅샷(Jobseeker Snapshot)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세부 문항과 내용은 JSCI 문항 그대로를 간단하게 변형한 것이기에 큰 차이가 없다(Australian Government, 2023).

타 공공부조를 신청하기 위해 기재하는 내용이자 ESAt의 전 단계로 수행하는 지표이기에, 대체로 질병, 상해,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로능력평가표에서 나타나는 입퇴원 여부 및 치료현황, 일상능력, 구직동기, 신체능력 등에 대한 내용은 본 지표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 다만 근로능력평가표와는 달리 새롭게 관찰되는 항목은 일상에서의 인지능력과 일터(작업장)에서의 인지·활동능력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는 점이다. 특히, 한 가지 이상의 과업 수행하기, 작업지속능력, 업무완수능력 등의 내용과 같이 일터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역시 근로능력평가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이 드러나는 내용은, 실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로 및 직업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묻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는 스스로 근로동기와 근로가능여부를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었다.

〈표 Ⅲ-14〉 호주의 근로능력지표 예시

문항 및 응답내용					
<b>[장애, 질병, 상해 관련]</b>					
1. 장애, 질병, 상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내용 기입 (주관식 기재)					
2. 언제 해당 장애, 질병, 상해가 발생했는지?		년도	월		
3. 해당 장애, 질병, 상해를 위한 치료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치료있음 응답시 세부내용 기재)					
4. 장애,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방문 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있음 응답시 마지막 진료일자, 병원명, 입원기관, 등록경위, 최근 5년간 방문횟수 기재)					
5. 향후 수술 예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정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정 없음		
(있음 응답시 수술유형, 예상일자, 병원, 수술사유 기재)					
해당 장애, 질병, 상해로 인해 어려웠던 빈도	해당없음	가끔	자주	항상	
6. 일상	운동능력 : 앉기, 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각각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이용능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건다루기 : 집기, 다루기, 들어올리기, 운반 (각각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구·기기조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해, 소통능력 :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각각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지 : 기억, 주의집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인과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업무이행능력 : 일침석·약속지키기, 지시이해·이행, 업무관리 (각각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돌봄 : 자기돌봄, 타인돌봄 (각각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 수면, 숨쉬기 (각각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일터	타인과의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행동 유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관련 스트레스/압박 다루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과업 배우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업무방법 기억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시 이해하고 따르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중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정된 휴식시간 없이 작업지속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가지 이상 과업 수행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항 및 응답내용				
개인적 관리사항/욕구에 대해 요구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리적으로 업무 완수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인과의 소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어문제 통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11. 장애, 질병, 상해와 관련된 개입 전문가, 상담가, 기타인력, 추가정보에 대한 문항

**[개인 근로능력 - 표시 없는 경우 전부 주관식 기재]**

- 12. 학력, 교육이력 (최종교육년수, 학교/교육마친 해, 최종학년, 최종학력 기재)
- 13. 자격, 기술, 경력 기재 (자격증, 봉사활동, 고등교육 내용 상세 기재)
- 14. 일해본 경험?  예  아니요  
(예 응답시 최근 일한 년도, 월 기재)
- 15. 최근 직업 2개 상세 기재 (직업유형, 주당 근로일수, 전일제·시간제·임시직 여부, 회사명, 전화번호, 관둔 이유 기재)
- 16. (장애,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근로환경, 근로시간, 의무대체와 같은 조건조정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상세기재)
- 17. 상해(재해) 이후 고용지원 참여여부  예  아니요  
\* 고용지원 : 직업재활, 기술습득, 일경험, 직업훈련, 직업재활, 구직지원, 고용유지, 재취업(원직장복귀 포함 등)지원 등 해당 되는 내용 전부 기재 (프로그램 제공업자, 참여프로그램, 참여기간 기재)
- 18. 향후 직업재활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요 응답 시 사유기재)  예  아니요
- 19. 풀타임/파트타임 근로 또는 교육이 언제 가능한지?  
 지금  6개월 이내  6~12개월 이내  12~24개월 이내  24개월 이상  근로불능
- 20. 이 설문지 기재 시 누군가 도움을 줬는지?  예  아니요

\* 기본인적사항, 개인정보동의, 서명내용 제외

자료 : Centerlink(2022), Work Capacity — Customer Information.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aus142-2109en-v2.pdf>

**② 구직자분류도구(Job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JSCI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가 활용하는 취업역량표에 가까운 지표라 할 수 있다. JSCI도 취업역량표와 유사하게 고용장애요인, 고용역량 및 의지와 같은 구직관련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직에 결정적 어려움을 주는 학력, 폭력·학대, 출소, 이주민, 언어능력과 같은 고용장벽과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질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활대상자보다는 실 구직자들의 기준에 보다 초점을 맞췄기에 고용이력이나 교육·자격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묻는다거나, 배운 기술을 활용해볼 수 있는 직장에서 근로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실제로 구직·근로활동이 가능하고 또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요인들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로활동에 크게 장애요인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부 기입하게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이외도 여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근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몇몇 항목을 토대로 실질적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Service Australia의 ESAt 검사를 재의뢰할 수 있는 점도 여타 평가도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표 Ⅲ-15〉 호주의 구직자분류도구 예시

항목	문항
고용경험	1. 최근 2년간 주로 활동했던 이력 (해당하는 칸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유급노동(풀타임/파트타임, 해외파견, 계절제 근로, 현재 재직 중 전부 포함) <input type="checkbox"/> 수감/보호관찰 중 노동 <input type="checkbox"/> 무급노동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실업 (구직활동 포함)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 <input type="checkbox"/> 파트타임학생 <input type="checkbox"/> 풀타임학생 <input type="checkbox"/> 돌봄 <input type="checkbox"/> 양육 <input type="checkbox"/>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음 2. 최근 일했던 곳에서 주당 몇 시간 근무했는지? <input type="checkbox"/> 주 30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8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8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비정기, 계절제 (프리랜서, 일당직 등으로 근로시간 체크 어려울 시 여기 체크) 3. 지난 2년간 유급노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지 (해외파견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 자격	4.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2/13학년,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11학년,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10학년,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는 마쳤으나 10학년 이하,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학력 또는 미만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교/학급,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무학 5. 다른 (추가) 자격을 이수한 것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취득자격 전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박사학위,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석사학위,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학사학위,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직업교육(석사),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직업교육(학사),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준학사, 이에 상응하는 자격 <input type="checkbox"/> 특정 분야 기술자(기사, 산업기사 등)자격 <input type="checkbox"/> 일반 직업교육 및 훈련증명서 II <input type="checkbox"/> 일반 직업교육 및 훈련증명서 III or IV

항목	문항
	<p><input type="checkbox"/> 직업교육 및 훈련증명서 I, 산업특수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지역 또는 사설기관에서의 직업교육과정 이수</p> <p>7. 관련 자격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8. 아직도 이 자격을 활용하고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9.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해당하는 란 전부 체크)  <input type="checkbox"/> 장애, 건강 관련한 문제  <input type="checkbox"/>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해당 자격이 일시정지, 중단되었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자격취득일자가 오래되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p> <p>(추가질문) 배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지?</p>
언어	(10~15번)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관련 내용
근로역량	<p>21.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및 건강문제가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대답하고 싶지 않다</p> <p>22.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  <input type="checkbox"/> 30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15~29시간 (해당 문항 응답시 JCA(의료자료기반 근로능력사정) 진행)  <input type="checkbox"/> 15시간 미만 (해당 문항 응답시 JCA(의료자료기반 근로능력사정) 진행)</p> <p>23. 근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및 건강문제가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대답하고 싶지 않다</p> <p>24. 건강 컨디션 때문에 업무 수행 시 추가지원 필요한 상황인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p> <p>25. 건강 컨디션이 일하는데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input type="checkbox"/> 3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p> <p>26.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 10개 내외로 기술 (주관식)</p>
이동수단	<p>36. 출퇴근 시 어떤 운송수단 이용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자전거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 택시 <input type="checkbox"/> 자차 <input type="checkbox"/> 타 전동 이동수단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적 이동수단 (친구 또는 친척 명의 차) <input type="checkbox"/> 이동수단 없음 (걷기 제외)</p>
개인상황	<p>46. 유년기(10대 때) 부모님 또는 보호자 중 한명이 정기적으로 유급일자리를 갖고 계셨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ex) 시설아동) <input type="checkbox"/> 대답하고 싶지 않다</p> <p>48. 해당하는 문제 요인 전부 표기  <input type="checkbox"/> 분노조절장애, 폭력성, 공격성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돌봄책임 <input type="checkbox"/> 가족(상실)애도, 트라우마 <input type="checkbox"/> 노숙위험 <input type="checkbox"/> 수면문제, 불면증  <input type="checkbox"/> 수리력 문제 <input type="checkbox"/> 치과이슈 <input type="checkbox"/> 관계단절 <input type="checkbox"/> 약물 치료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게임 중독 <input type="checkbox"/> 심각한 스트레스 <input type="checkbox"/> 자존감, 동기부여, 프레젠테이션 문제</p> <p>49. 리스트에는 없으나 다른 문제 요인이 있다면 기재 (주관식)</p>

\* 주거, 출소관련사항, 언어문제, 원주민/이주민 이슈 항목 역시 호주의 국가특성이 반영된 내용이라 문항, 키워드만 기재하고 세부내용 기재하지 않음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23). Job Seeker Snapshot.

### 3) 영국

#### (1)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활용 배경

영국은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에 근거해 2013년 공공부조, 세제지원, 각종수당과 같은 사회급여가 유니버설크레딧(Universal Credit)으로 통합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에 급여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근로역량평가를 시행하게끔 되어있다. 근로역량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산하기관인 보건평가심사서비스원(Health Assessment Advisory Service)이 수행한다. 근로역량평가를 수행하는 대상은 보건평가심사서비스원의 심사관이다. 심사관은 의료, 보건, 심리 등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식은 잉글랜드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같은 지역은 제외다. 근로역량평가를 통해서는 ① 근로를 할 수 없는 대상자, ②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제한적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sup>13)</sup>, ③ 근로가 가능한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근로가능한 대상자는 지역 고용센터인 Jobcentre Plus에 의뢰되어 근로연계활동이 이어진다.

상술한 근로역량평가 일원화 경향은 물론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의 급여통합이라는 영향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근로복지정책 내용의 일부를 호주 정책에서 차용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Wright et al., 2011). 즉, 지역 내 단일 주체에 의해 일괄적으로 근로역량을 판단하고자 하는 방식 자체는 호주의 평가시스템과 상당한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2017년,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 : WP)에서 워크헬스프로그램(Work and Health Programme : WHP)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근로대상에 대한 기준이 다소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 급여대상자에게 장애·질병·상해가 있어도 그 수준이 경미하다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를 이어가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이다(EU & SQW, 2019). 이러한 맥락 하에 영국의 근로역량평가에서는 개개인의 신체·정신건강 상태에 주목해 근로능력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정한다는 점이 호주사례와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개별화된 상황이나 특성을 판단하고 근로 및 자립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호주나 미국과는 결이 다소 다른 것이다. 이후 급여수급자의 자립 및 근로역량을 실질적으로

13) 장애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ESA) 대상자를 의미함

파악할 방법은 사실상 근로역량평가를 토대로 한 지역 민간 서비스 공급자(provider) 내 워커의 재량과 능력에 달렸다.

## (2)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소개 : 근로역량조사 (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

영국의 근로역량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근로역량평가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뤄진 조사다. 상술하였듯, 의료·보건·심리 등과 같은 전문가가 심사관으로 배치되어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진행방식은 급여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조사지를 전부 기입하고, 기관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결과지를 보내면 4주 내에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다.

각 세부영역은 응답자의 답변과 응답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의사소견서, 각종 검사지 등)를 종합고려하여 점수를 매기며, 반드시 응답의 수준이 점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각 세부영역의 점수는 심사관의 판단에 기준해 매겨지게 된다. 특히 Part1(신체건강), Part2(정신·인지·지적능력) 문항은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대상자(장애연금대상자)를 심층 분류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며, 이에 따른 점수체계는 장애연금판정 기준에 준해서 점수가 매겨지게 된다.

신체건강문제는 우리나라의 근로역량평가와 유사하게 운동능력, 질병,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한다. 문항이 자가기입식이기 때문에, 급여신청자가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시를 들어 질문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손 조작 항목은 단순히 손 조작이 가능한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닌, 동전집기, 펜 쓰기와 같이 일상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다. Part2의 항목 역시 일반적인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증상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지·지적 능력에 보다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불안에 대해 질문할 때도 단순히 심리적 불안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을 겪는지를 묻는 형태다. 또한, 인지·지적능력에 있어 스스로 업무능력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표 Ⅲ-16〉 영국의 근로역량조사 예시

항목	세부영역(점수)	문항
part1 : 신체건강 문제	보행, 이동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멈추지 않고 보행할 수 있는 수준 (50m, 100m, 200m 이상, 그때그때 다름)</li> </ul>
	앉기, 서기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군가 도움 없이 옆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li>• 누군가 도움 없이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간 (30분, 30분-15시간, 1시간 이상, 그때그때 다름)</li> </ul>
	뺨기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트나 재킷 입을 상태에서 상단주머니에 물건 넣을 수 있을 만큼 팔 뺨어 올릴 수 있는지?</li> <li>•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집기, 옮기기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체 및 양팔 이용해 액체 담긴 500ml 상자 들어 옮길 수 있는지?</li> <li>• 상체 및 양팔 이용해 액체 담긴 1리터 상자 들어 옮길 수 있는지?</li> <li>• 비어있는 하드보드 박스와 같이 가볍지만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손조작 (0, 9, 15)	<p>아래와 같은 손조작 가능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키패드 같은 버튼 누르기</li> <li>• 책 페이지 넘기기</li> <li>• 1파운드 동전 집기</li> <li>• 펜, 연필 사용하기</li> <li>• 키보드, 마우스 사용하기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의사소통능력 (0,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기, 쓰기/타이핑하기)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간단한 메시지로 금방 소통할 수 있는지?</li> <li>• (듣기, 읽기) 다른 이에 도움 없이 듣거나 입으로 읽으면서 타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li> <li>• 점자출력물이나 크게 프린트된 출력물을 읽음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 가능한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시력 (0,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서 안전하게 길 건너갈 수 있는지?</li> <li>• 한번도 가본적 없는 장소를 누구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배변문제 (0,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광, 배변문제 또는 배뇨장치조절이 어려워 옷을 세탁하거나 갈아입은 적이 있는지? (아니오, 예 [매주, 매월, 매월 이상, 정말 급했던 경우만])</li> </ul>
	현기증, 어지럼증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어날 때 얼마나 자주 블랙아웃되거나 정신이 흐려지거나 어지럼증이 있는지? (매일, 매주, 매월, 매월 이상 간격)</li> </ul>

항목	세부영역(점수)	문항
part2 : 정신건강, 인지, 지적능력과 관련된 문제	과업수행을 위한 학습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람설정 같은 행동과 같이 매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배운 적 있는지?</li> <li>식기세척기와 사용법 같은 것처럼 좀 더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능한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위험, 사고 인지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지낼 사람이 필요한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업무시작, 마무리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일 주어진 과업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절대 못함, 가끔 해냄, 그때 그때 다름)</li> </ul>
	변화대처능력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상했던 일상의 작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li> <li>예상 못했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외출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을 떠나 아는 장소로 외출할 수 있는지?</li> <li>집을 떠나 모르는 장소로 외출할 수 있는지? (예-가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함,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사회적상황 대처능력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li> <li>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적절한 행동 (0, 6,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람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하는가? (매일, 자주, 때때로, 그때그때 다르다)</li> </ul>
part3 : 음식섭취 문제	음식섭취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지?</li> <li>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 씹거나 삼킬 수 있는지? (예, 아니요, 그때그때 다르다)</li> </ul>

\* 주치의, 수술담당의 연락처, 관련된 전문가, 암치료내역, 장애, 질병, 건강문제 전반 사정, 치료이력과 같은 의학적 내용 제외, 이 중 Part1, Part2 문항은 장애연금판정을 위한 근로제한능력(imited Capability for Work) 파악하는 요인으로, 각 증상 수준의 편차에 따라 항목당 0-15점 사이로 배점되어 증상의 중증, 경증을 판단하게 됨

자료 : DWP(2020). Universal Credit : 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609/uc50-interactiv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609/uc50-interactive.pdf)

〈표 Ⅲ-17〉 3개국 지표 주요 특징 및 비교표

구분	미국 (자활사업기반)	호주 (자활+근로연계복지기반)	영국 (근로연계복지기반)
지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부조 특히, TANF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및 고용장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 정부 일선직원 및 사례관리담당기관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부조를 위한 급여지급 및 근로불능/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구직자가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근로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로 나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의 단일화된 사회부조제도인 Universal Credit의 자격기준 확인 및 근로연계서비스를 위한 근로가능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종합평가</li> </ul>
지표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주 자활역량평가 및 자립역량진단표와 유사</li> <li>자활역량진단시 별도의 진단표가 아닌, 대상자에 걸맞는 다양한 유료검사나 간이검사를 병행</li> <li>특히 대상자가 겪고 있는 문제(음주/약물, 학습장애, 가정폭력/아동학대, 반사회적 문제 등)을 측정하기 위해 기본 초기사정 이외 추가 척도를 유연하게 활용. 최소 5~6개 정도의 별도 간이검사나 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장벽 척도를 활용</li> <li>일부 주는 척도 없이 오로지 일선워커 및 담당사례관리자의 인터뷰 사정에 의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ork Capacity/ESAt) 근로역량평가와 유사</li> <li>(JSS/JSCI) 취업역량평가표와 유사</li> <li>평가 주체가 이원화, 전국적으로 동일한 평가가 이뤄짐.</li> <li>Centerlink의 work capacity는 크게 3유형 구분 → ESAt는 장애 및 질병, 기타 고용장벽 문제 등에 따라 주 7시간 미만 근로가능자, 8-14시간 근로가능자, 15-22시간 근로가능자, 23-29시간 근로가능자, 30시간 이상 근로가능자를 세부 구분.</li> <li>Work Capacity에 기재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검사결과 및 서류를 제출받는 것과 동시에 인터뷰를 병행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는 근로역량평가와 유사</li> <li>평가 주체 일원화, 잉글랜드 전역에서 단일한 평가기준으로 심사 진행.</li> </ul>
평가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주별로 평가 흐름 상이하며, 평가수준 및 편차도 큼.</li> <li>포괄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성과평가로 인해 대체적으로는 자활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경향 높음</li> <li>초기사정은 대체로 주 내 일선관료 및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nterlink 평가)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근로불능-가능여부를 판단, 자기기입문항 (Work Capacity)과 전문가가 시행하는 평가 (ESAt)를 병행하여 종합적 평가 실시</li> <li>(Workforce Australia 평가) 근로의무자 및 구직희망자의 구직-근로능력 전반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연금부 산하 심사전문기관인 Health Assessment Advisory Service에서 단일평가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를 진행. 점수차에 따라 근로능력자, 장애·질병·재해 등으로 인한 제한적 근로능력자, 근로무능력자를 선별</li> </ul>

구분	미국 (자활사업기반)	호주 (자활+근로연계복지기반)		영국 (근로연계복지기반)
	관리자가 진행하고 대체로 가족환경, 고용이력, 교육/훈련여부, 문제상황, 건강(신체/정신)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사정 • 이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의 세부 검사를 통해 상태를 추가로 진단	Centerlink (Service Australia)  Work Capacity ↓ ESAt	Workforce Australia  JSCI(JSS)	
평가시행자/평가방법/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별로 평가방식 다름</li> <li>• 각 주정부 복지사무소 워커 또는 사례관리 담당기관의 사례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 대면 면담으로 진행</li> <li>• 초기사정을 위한 인터뷰가 진행될 시 1시간 내외로 진행</li> <li>• 간이검사 진행 시에는 시간 짧게 소요</li> <li>• 공식적 검사(고용장벽검사, MMPI, 지능검사 등)를 시행하거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1시간 이상 소요</li> </ul>	Centerlink (Service Australia)  (Work Capacity) 자기기입식/10-15분 소요분량  (ESAt) 사회서비스 부 담당 지역사회서비스 사정 담당 매니저 (의료진 및 보건전문가) 비대면(대면) 인터뷰	Workforce Australia  (JSCI, JSS) 자기기입식/온라인으로 10분 정도 소요  이후 일선 담당자 비대면(대면) 통해 세부내용 추가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lth Assessment Advisory Service (노동연금부 산하 심사기관)에서 수행</li> <li>• 자기기입식/보호자·지인·관련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작성 후 우편송부·인터넷으로 심사기관에 제출 → HAAS 심사관(의료 및 보건 관련 종사자)가 제출된 평가서 및 각종 의료보고서 등 서류중심으로 심사 (심사기간 4주 소요)</li> </ul>
지표문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1. 단일한 초기사정 툴 사용하는 유형</li> <li>✓ 자활매트릭스(자립역량평가 유사) : 주거, 고용, 소득, 음식, 보육, 교육, 성인교육, 의료보험, 생활기술, 가족/사회적 관계, 이동수단, 지역사회개입수준, 양육기술, 법적문제, 정신건강, 약물남용, (주거)안정성, 장애, 기타 위험 등을 각</li> </ul>	Work Capacity (총 23문항) 장애·상해·질병의 내역, 발생시점, 치료여부, 병원방문이력, 수술예정여부, 장애·상해·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준(행동, 인지, 일상수행능력 등/빈도측정), 업무능력에 있어 장애·상해·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수준 (의사소통, 스트레스관리,		장애·상해·질병의 내역, 발생시점, 치료여부, 병원방문이력, 수술예정여부  Part1 : 신체건강문제 보행/이동, 앉기/서기, 뺨기, 집기/물기, 손조작, 의사소통능력, 시력, 배변문제, 현기증/어지럼증

구분	미국 (자활사업기반)	호주 (자활+근로연계복지기반)	영국 (근로연계복지기반)
	<p>1-5점 척도의 수준으로 구성하여 자활성과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주 초기사정(자활역량평가 유사) : 가족사항, 고용이력, 교육/훈련, 재무이해력, 가정폭력, 약물남용, 정신건강, 의료/신체건강, 주거, 교통편, 법적문제, 기타 개입기관</li> <li>✓ 오래건주 초기사정(자활역량평가 유사) : 고용이력, 안전 및 가족안정성, 건강, 강점, 해결 필요한 문제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2. 다양한 척도 활용하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장벽척도</li> <li>✓ 중독척도 : CAGE, SASSI</li> <li>✓ 학습장애 스크리닝 척도 : LNS</li> <li>✓ 가정폭력 스크리닝 문항</li> <li>✓ 사회적 욕구 사정</li> <li>✓ 반사회적 성향 검사</li> <li>✓ 기타</li> </ul> </li> </ul>	<p>과업수행능력 중심/빈도측정), 장애·상해·질병 관련 의료진 및 전문가 인적사항, 장애·상해·질병관련 추가 정보, 학력 및 교육이력, 자격·기술·경력, 최근근로이력(직업유형, 주당근무시간, 근로유형, 퇴사이유 등), 장애·상해·질병으로 인한 근무조건조정 필요여부, 장애·상해·질병 관련 직업재활 및 원직장복귀/재취업 지원이력, 향후 직업재활참여의사, 풀타임/파트타임 근로 및 교육 가능여부, 해당 양식 작성에 도움 받은 이력, 개인정보보호확인, 서명</p> <p>JSS/JSCI (총 51문항)            업무경력 및 교육/자격, 인터넷 기술(인터넷 사용 가능여부,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 가능여부, 인터넷 사용빈도, 인터넷을 통한 청구금액 처리여부, 이메일능력), 장애 및 의료적 문제(Work Capacity 내용으로 같음 가능), 개인배경(출신지, 이민/원주민 이슈, 언어문제, 난민여부, 영어가능여부), 개인상황(이동수단, 범죄경력, 생활상황(주거안정성), 구직활동가능여부(자녀돌봄관련), 기타 개인적 요인), 기타요인(연령/성별, 거주지, 프로그램참여이력)</p>	<p>Part2 : 정신건강, 인지, 지적능력문제            과업수행을 위한 학습, 위험 및 사고 인지, 업무 시작 및 마무리 가능여부, 변화대처능력, 외출가능여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적절한 행동능력</p> <p>Part3 : 음식섭취문제            *Part1/2의 경증, 중증 구분을 중심으로 총 3~4단계의 점수구간이 있으며(각 , 점수의 범위를 상중하(각 영역당 최소 0점, 최대 15점으로 배점)로 구분하여 근로무능력, 제한근로, 근로가능을 판별</p>

### 3. 소결 : 국내·외 자활역량평가 유사지표 검토를 통한 함의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자활역량지표와 유사한 지표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자활역량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지표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역량평가표, 고용노동부의 취업역량평가표,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역량표를 비교하였고, 국외지표는 미국, 호주, 영국의 각종 지표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국내·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얻은 내용을 간략하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국내와 해외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크게 학력, 신체·정신 건강 상태, 직업 이력·구직역량·취업가능성, 구직 욕구·의욕, 취업장애요인(가구 여건 포함)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국내·외 유사지표들에서는 근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인지적 측면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다만, 국내 유사지표들에서 심리·인지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었던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척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심리·인지적 내용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자와 자활참여자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면서 심리·인지적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사례에서는 교육이나 학력과 같은 사안보다는 실제 자활참여자가 근로를 이행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역량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특히, 산술 능력이나 쓰기, 암기능력과 같은 인지·학습능력부터, 컴퓨터 능력과 같은 업무기술, 대인관계를 맺을 때 심리적 어려움, 변화나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능력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인지·행동 영역도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찰되었다. 국내에서도 IT 기술과 같은 항목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해외사례에서는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기 돌봄역량, 생활기술과 같은 일상영역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근로역량을 유추할 수 있는 문항도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역량 및 일상역량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자활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국내·외 사례에서는 실제로 자활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시간의 여건이나 취업에 방해가 되는 고용장벽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자활참여자의 구직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자활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는 고용장벽요인과 동시에 자활에 강점이 될 수 있는 환경들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자활참여자의 현실적 조건들을 보면서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각도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특히 해외사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는 매년 주 정부가 업데이트하는 매뉴얼에 맞춰서 평가대상자의 자기기입식 자료를 바탕으로 워커의 대면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자활역량평가가 전화로 이뤄진다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물론 호주의 경우 코로나 이후 상당 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시스템을 통해 대면 인터뷰에 준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역량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활역량을 다각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표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표를 바탕으로 워커의 전문성과 대민업무적 역량 하에 실질적 자활역량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방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일 수 있음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연령 기준을 어느 적용하지만, 해외에서는 연령 기준이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에서는 단순 기본정보를 획득하는 용도로만 활용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령의 점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IV

## 자활역량평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FGI 결과

---

1. 조사개요
2.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3. 각 평가 항목별 문제점
4. 소결



# IV

## 자활역량평가 담당 공무원 및 <<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FGI 결과

###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고,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 지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활역량평가 담당 시·군·구 공무원,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고용노동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자활역량평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FGI 조사개요는 <표 IV-1>과 같다. FGI는 반구조화 설문지를 바탕으로 책임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의 진행 하에 이루어졌다. FGI 참여자의 경우에는 4개 그룹 총 13명으로,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종사자 1그룹, 시·군·구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2그룹, 고용복지센터 종사자 1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 인터뷰를 병행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FGI를 통해 자활역량평가표 항목의 적절성, 자활역량평가 초기 상담 프로세스, 자활역량평가 측정 후 배치된 참여자의 초기 상담 프로세스, 자활역량평가 측정 프로세스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V-1〉 FGI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방법	반구조화 설문지를 바탕으로 책임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의 진행을 통한 FGI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그룹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그룹 :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종사자</li> <li>- 2그룹 : 시·군·구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1</li> <li>- 3그룹 : 시·군·구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2</li> <li>- 4그룹 : 고용복지센터 종사자</li> </ul> </li> </ul>
조사기간 및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7월 17일, 7월 18일, 7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그룹 : 2023. 07. 17. 14 : 00~16 : 00, 대면, 비대면(ZOOM) 병행</li> <li>- 2그룹 : 2023. 07. 18. 10 : 00~12 : 00, 비대면(ZOOM)으로 진행</li> <li>- 3그룹 : 2023. 07. 18. 14 : 00~16 : 00, 비대면(ZOOM)으로 진행</li> <li>- 4그룹 : 2023. 07. 24. 14 : 00~16 : 00, 대면으로 진행</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역량평가표 항목 적절성</li> <li>• 자활역량평가 초기 상담 프로세스</li> <li>• 자활역량평가 측정 후 배치된 참여자의 초기 상담 프로세스</li> <li>• 자활역량평가 측정 프로세스의 개선방향</li> </ul>

시·군·구에 따라 자활 사업 현황과 특성이 다르기에, FGI 참여자는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FGI 그룹별 참여자의 특성은 〈표 IV-2〉와 같다.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관련 직무 경력이 5년 이상이었으며, 시·군·구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참여자 G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력이 2년 미만이었다. 고용복지센터 종사자의 경력은 2년 미만이다.

〈표 IV-2〉 FGI 그룹별 참여자 특성

구분	지역	소속	경력	성별	참여자 구분
1그룹	서울	지역자활센터	8년 6개월	여성	A
	서울	지역자활센터	6년 9개월	여성	B
	경기	지역자활센터	10년 10개월	여성	C
	전라도	지역자활센터	5년 2개월	남성	D
2그룹	인천	시·군·구청	9개월	여성	E
	부산	시·군·구청	1년 6개월	여성	F
	광주	시·군·구청	10년	여성	G
3그룹	서울	시·군·구청	1년 0개월	남성	H
	경상도	시·군·구청	1년 6개월	남성	I
	경상도	시·군·구청	10개월	여성	J
	경기도	시·군·구청	5개월	여성	K
4그룹	비수도권*	고용복지센터	1년 6개월	여성	L
	비수도권*	고용복지센터	1년 0개월	남성	M

\* 고용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도에 설치된 센터가 한정적이기에, 센터가 특정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비수도권으로 기재하였음.

FGI를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인터뷰 참여와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표 IV-3〉과 같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녹취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익명 처리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V-3〉 FGI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질문 대상
개별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역량평가 측정을 위한 초기 상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상담과정, 시간, 장소 등)</li> <li>• 초기 상담이 어려울 시, 고용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기타지원기관 등과의 자활사례회의를 통해 자활역량평가 진행 경험 여부</li> <li>•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정도</li> <li>•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평가 방식이나 평가 내용의 구성</li> <li>• 자활역량평가와 자립역량진단의 통합에 대한 의견</li> <li>• 자활역량평가 측정 프로세스에서의 개선점</li> </ul>	시·군·구 자활 사업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역량평가 측정 후 배치된 참여자에 대한 초기 상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상담과정, 시간, 장소 등)</li> <li>• 초기 상담이 어려울 시, 고용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기타지원기관 등과의 자활사례회의를 통해 자활역량평가 진행 경험 여부</li> <li>•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정도</li> <li>•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평가 방식이나 평가 내용의 구성</li> <li>• 자활역량평가와 자립역량진단의 통합에 대한 의견</li> <li>• 자활역량평가 측정 프로세스에서의 개선점</li> </ul>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센터 담당자
자활역량평가표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의 자활사업 대상자의 근로능력 파악에 대한 적절성</li> <li>• 평가항목(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의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 의지와 근로 여건 파악에 대한 적절성</li> <li>• 평가항목(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의 자활사업 의뢰자의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설정에 대한 적절성</li> <li>• 평가항목(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의 자활사업 의뢰자의 자립지원계획 파악에 대한 적절성</li> <li>• 자활역량평가 추가/강화되거나 삭제/축소되어야 할 항목 (연령, 인지능력, 정신건강능력, 취업 이력/경력, 학력, 신체능력 등)</li> </ul>	공통

## 2.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 1)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수급자는 생계급여 조건부과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조건부 수급자는 시·군·구로 넘어가 근로역량과 자활욕구 등에 대한 자활역량평가를 받고, 평가 점수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의뢰가 된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의뢰되는 수급자들의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 역량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자활역량평가가 20~30분 내외의 짧은 전화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점수를 보지만 그것과 현장에서의 그분의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맞지 않아요.” (참여자 A)

“사실 저도 이거(자활역량평가)를 유심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점수대로의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90점이라고 해서 만나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40점 정도의 점수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90점을 받은 이유는 그냥 그저 젊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C)

“(점수와 현장에서의 근로 능력의)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자들이 이 자활역량 평가표를 가지고 이분이 국취로 모셔야 될 분인지 자활로 모셔야 할 분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좀 깊이가 어느 정도 이 분을 알고 이걸 책정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화상으로, 잘 알지도 못해 기분이 어느 상태인지 전화상으로 조금 듣고 판단해서 하는 점수.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그거 했을 때 한 5-6회기 때 선생님도 만나 뵙고 작성을 하거든요. …(중략)… 좀 더 많이 선생님 정보나, 많이 여쭙보고 하는 거라서. 분명히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 B)

“(그러면은 직업 이력 같은 것들을 통화로 하다 보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의 에티튜드라든지 통화에서의 말 더듬. 이런 것들을 빼고는 사실상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완전 어렵죠. 이게 진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솔직히 말은 다들 통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울릴 때 되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저랑 통화할 때는 되게 서글서글 되게 좋으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활센터에 가서 다른 참여자분들이랑 어울리면 싸우고. 이제 팀장님들한테 대들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좀 많아요. 특히 이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한테는 안 보이던 모습이 참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보이는 거죠 (참여자 J)

“(전화 통화는 하실 거잖아요. 의뢰자랑.) 그렇죠. 그렇죠. (한 몇 분? 한 3분 3분 내외) 아니요, 그것보다는 길게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 간극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진단서 근로 평가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번이라도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이제 좀 이제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한번 사업단 진입을 해보실지. 아니면 이제 개인 구직을 하실지.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어쨌든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진짜 빨리 이해해 주시고 하면은 5분도 가능한 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20분 30분 또 가요. (거의 제도 설명하고 끝나는 거네요?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어디 아프신 게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고 어디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행복e음에 입력된 그냥 처음에 의뢰 신청서를 보시고. 연령이나 이런 건 판단 되니까 판단하시고 그냥 자활 사업에 참여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고 직업 이력이나, 일 단 구직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넣으셔서 그냥 보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참여자 H)

자활역량평가에 대한 매뉴얼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자활역량평가표를 작성하는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순환근무로 인해 담당자

변경이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매뉴얼과 교육의 부재는 평가도구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떨어뜨린다. 평가도구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나 경력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활역량평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점수에 따라 수급자를 의뢰하기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를 임의로 매겨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자활역량평가표상의 점수와 수급자의 실제 역량과의 괴리를 유발한다.

“저도 이 자립 역량 평가표로 일단은 처음에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할 때 참고를 하긴 하지만 점수가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한 분야에서 이게 이제 점수가 하를 받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이제 이 점수가 역량 평가표로 인한 점수는 아니고. 저는 참고만 하고 현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임의대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면 국채로 의뢰를 하고 미만이면 자활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요거는 참고는 하고. 다른 점수 매길 때 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는 참고만 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참여자 I)

“역량 평가표는 지역사회센터 의뢰할 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건강 상태랑 이제 구직 욕구 정도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점수를 넣어요. 그런데 어차피 일정 점수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분이 이제 70점이든, 60점이든 딱 그 점수든 일단 의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전산상 이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또 에너지를 쓰기에는 감당이 안 돼요.” (참여자 H)

“제가 전임자랑 전전임자가 6개월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인수인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수인계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역량 평가표가 처음 3개월은 그냥 막 부딪히기 바빠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의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80점이 넘어야 된다. 이런 그 걸 보고 뭘지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요지는 이게 몰라도 일단 돌아는 갔어요. ((웃음, 놀라며)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행복e음 어떻게 내셨어요?) 행복e음에는 오류가 뜨면은 점수를 더 올려요. 왜 안 되지? 그냥 점수를 더 올리고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지역사회센터 의뢰 할 때는 솔직히 거의 막히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거 의뢰할 때만.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분들이 엄청 많지는 또 않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알게 된 이상 또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지역 사회 센터 의뢰를 할 때는 거의 이걸 안 봐요. 그냥 웬만하면은 이제 이 구간 안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근로유지형의 복지 도우미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이분은 여기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분들은 점수를 맞춰 넣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매겨보면은 또 그 점수 안에 들어가요. 이제 상담해보면 알잖아요. 복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생의 이제 여성분이시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있으시고 이려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고 이제 말투가 이제 부드럽다. 이러면 이제 딱 복지 도우미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참여자 H)

“왜냐하면 저희 팀에 경력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입사한 지 2년 차부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차인데 이렇게 많은 경력 차이로 그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객관해서 판단해낼

것이냐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세요 이렇게 상담해' 선배한테 '어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선배한테 의지해서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매뉴얼이 있다면, 여기서 이 점수가 나오면 이 사람은 정말 의지가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만 있다면 그게 더 구체화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F)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조건부 수급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 근로역량이 미약한 경우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역량평가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구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실제로 사업단에 배치되어 탈빈곤과 탈수급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자활 사업의 본래의 목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이제 연금공단에서 판단해서 넘기잖아요.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 능력 판단을 받을 필요 없는 이제 원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오시는 분들 이제 젊은데 조건부 수급자죠. 근데 아프다고 주장하면 근로능력 판단을 하죠. 양쪽에서 다 넘어오는데 문제는 근로 능력은 있다고 했으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는 있는데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시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던(경험 중에) 일을 못 시키는데 병원을 안 다니면 진단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진단 안 나온 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진료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시다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일반 진단서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합시다라는 글자가 있는 진단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또 병원을 안 다녀요. 그러면 진단이 없으니까. 없는데 이분들은 구청에서도 배치할 수가 없고. 센터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웨이를 보내서 두 달이라도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분들이 살아가는 게 저희 공무원 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은 둘째 문제고. 이분들이 몇 개월이라도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태를 당장 해결해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용을 보내거나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보내면 그분들은 당연히 배치 안 되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기회를 못 줘요 6개월 정도.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진단을 다시 받아오기는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도 못 받는 진단을 몇 개월 지났다가 받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근로능력 평가가 나오도록 병원을 다니셔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계속 부담을 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은 배치 자체가 원래부터 좀 하기 힘든 팀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조건부 수급자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문제고 수급팀도 마찬가지예요.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가 판단을 안 될 것 같지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고민이 이런 분들은 일을 시킬 수는 없으나 조건이 넘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라에서 지원을 받거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팀의 목적이죠. 일을 시키고 빈곤을 탈출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못 갑니다. 사실 이 사람들 당장 내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비를 이렇게 안 하면 생계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제발 참여해라'고 독려하는 입장이죠. 대부분의 상담들이." (참여자 E)

또한 원칙적으로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근로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 배치에 있어서 정책 대상자의 욕구가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자활 사업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점수가 낮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정책적 욕구에 맞추어 자활역량평가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다.

“역량평가표로 고용센터를 가냐, 자활센터를 가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웃음) 거기는 대상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국취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적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걸 좀 하고 싶으니까 나는 교육 받아야 된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 욕구를 강하게 보이시면 그런 것 같고요. 점수가 높더라도 나는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고. 또 국취 갔다가 끝나면 갈 데 없는 분들은 또 다시 오시니까.” (참여자 A)

## 2) 평가 결과의 활용도(자활사업 배치 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고용센터 종사자는 자활역량평가라는 양적 평가가 근로능력, 자활의지, 근로여건과 같은 개개인의 질적인 내용과 비례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자활역량평가 프로세스에 따른 참여자 배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활역량평가 이후 게이트웨이 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많은 수급자들은 다시 시·군·구로 돌아오며 상담과 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소진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자활역량평가를 기반으로 수급자들을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려고 해도, 예산적인 한계로 실제 배치가 어려운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저희는 거의 반반 배치를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배치와 센터가 배치와 양쪽이 다 많죠. 거기서 게이트웨이 교육이 거의 한 150명. 한 달 뒤면 게이트웨이에서 또 쓸 만한 분들 이렇게 쓸 만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일자리에 배치될 만한 가능한 분들 인력으로 이렇게 또 성장해서 나오는 분이 거의 극소수거든요. 5% 이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다시 또 구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상담을 해서 또 다른 데 더 나은 곳이 있나...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략)… 상담하고 돌아와서 다시 상담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팀 자체가 소진되고 있죠. …(중략)… (한 몇 분이나 다시 돌아오세요? 재상담하세요?) 저희 지금 거의 한 다시 상담하는 거 하고 조건 부과 중지되고 이제 생계비 안 가고 하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한 50 프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가 319명이지 보낸 거는 그거보다 더 많거든요. 1500명 중에 우리가 200명을 수용했는데. 실제로 상담하기에는 500명 이상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 실제

로 센터도 배치된 인원이 319명이지 여기 게이트웨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게이트에 150명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150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거의 3개월 4개월 사이에 다시 상담하고 중지하고 하는 것들이 한 반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E)

“저희는 이제 보통 상담을 월 한 많으면 100명 정도 해요. 자활상담. 많으면 100명 하고 적으면 한 8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또 한 분 더 계세요. 저랑 기간제 선생님이랑 둘이 이렇게 하시고. 제가 조금 어쨌든 반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배치까지는 한 4~50명. 자활센터 배치까지는 반으로 줄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제시 진단서 내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취업 준비 아니면 조건 제시, 조건 부과 아니면 90만 원 이상 소득 활동. 이런 걸로 아니면 다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반 밖에 배치가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가더라도 실제 배치까지는 또 사업단 배치까지는 반으로 또 줄어요. 저랑은 이제 상담을 잘했는데 그래도 자활센터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가서는 또 똑같아요. 또 진단서 내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 하겠다고 영수증 도서금 영수증 이런 거 내고. 취업 준비하시겠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말 안 하겠다고 자활 거부 확인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자기 그냥 일반 취업하겠다고 91만 원 소득 신고하시거나. 다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 자활 근무 배치까지는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아예 그냥 연락 두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연락 두절해서 조건불이행자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유지형이나 워낙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유지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배치는 못하고. 이제 자활센터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일부 일반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의뢰해 드리고 있어요. …(중략)… 저희는 이제 다시 재상담은 거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조건불이행은 아예 빠지거나 본인이 진단서를 내거나. 센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전화로 하긴 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센터에서도 연락 두절됐던 분들이 저희랑 또 연락을 잘 받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재상담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다시 조건부 수급자 조건불이행 해제하려고 진단서 내시거나, 자활신청서 내고 싶어서 다시 내시면은 조건불이행됐다가 자활신청서 다시 내시면 그때 다시 자활 상담해서 다시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어쨌든 그냥 배치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배치가 반밖에 안 되고” (참여자 F)

더불어, 시·군·구에서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센터로 수급자를 의뢰할 때, 자활역량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수만 넘어가기에 의뢰자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업단 배치, 자립지원계획 등에 자활역량평가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저희가 의뢰 받을 때 점수화돼서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걸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중략)… 점수가 거의 똑같아요. …(중략)… 이게 상중하 체계로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면 다 그냥 중으로 해서. 지금 의뢰된 사람들은 점수가 연령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략)… 점수를 딱 보고 ‘이분 그런 능력이 있겠다, 이분 없겠다’ 이거를 좀 알기가 조금 힘들고. …(중략)… 상중하로 딱 세 개로만 나눠지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전혀 가능할 수가 없고.” (참여자 A)

그런데 점수는 이제 자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서 점수 책정돼서 그냥 시스템에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 점수는 ‘그 점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 점수가 크게 맞다 그렇게는 또 생

각은 안 해요. 그냥 좀 젊으면 점수가 높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근로 방해 요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게이트웨이 과정 중에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사정할 때 그때 근로 방해 요인들을 다 파악이 되고 하니까. (참여자 D)

저희도 이제 의뢰돼서 오셨을 때 의뢰되셨고 배정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한 번 보는 거지. 그게 저희한테 중요한 아주 작은 영향도 안 미쳐요. 저는 이제 저희가 더 만나 뵙고, 더 깊이 있게 만나볼 거고. 저희가 또 뒤에 보면 이것도 저희가 사용할 거고. 이게 더 오히려. (뒤에 자립역량 진단표?) 네. 이걸 훨씬 더 많이. 이거밖에 안 쓰니까. 그쵸. 그건(자립역량평가) 남이 해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점수대를 보면 저희도 판명이 되잖아요. 이 분은 정말 많이 힘드시네 40점대, 이분은 조금 의지도 있으시고 조금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시고 의욕도 있으시고 70 몇 점.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솔직히 (점수) 내려온 걸 그렇게 참고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점수대가 어차피 거의 대부분 높은 80점 위에 분들이 국취 가실 거고. 간혹 거기에서 80점 이상 되시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활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뿐이고. 그리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깔고. 저희가 만나서 뵙고 직접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단표를 작성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자활역량표) 정말 아주 미약한 참고용일 뿐이에요. (참여자 C)

### 3) 개선점

현행 프로세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활역량평가표와 자립역량진단표의 통합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 자활역량평가표와 자립역량진단표의 통합을 통해 시·군·구와 사업 실시기관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평가도구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일부 인정은 하고 있지만, 통합된 평가도구를 통해 참여자의 사업단 유형까지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시·군·구 공무원의 목표와 사업 실시기관의 목표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자활역량평가와 자립역량진단표가) 좀 비슷하거나 같으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주 임님이 여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갖고 이렇게 만약에 그냥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와 차이가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양쪽으로 먼저 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참여자 B)

“하나의 척도로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면... 좀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저는 이제 센터에서 사람을 받아서 이제 배치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제가 누군가를 어디에서 의뢰가 와서 그쪽에서 척도를 가지고 평가해서 넘어왔다 해도. 저는 제 나름대로 척도로 다시 한 번 사람을 볼 것 같은. 왜냐하면 배치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아픈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내가 중장비에 대한 자격을 따서 정말 몇 년 안에 나는 성공을 해보고 싶은지, 그다음에 센터에 하는 카페 같은 경험을 해서 진짜 일반 시장의 카페에 나가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는 상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센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배치해야 되는 입장이라.

척도를 하나 가지고 배치한다면 아마 그 조건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죠. 그분들하고 저희가 보는 입장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센터에다가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활 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잘 사례를 관리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잘 사례관리를 하라는 뜻인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실적을 이렇게 받아보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넘겨드린 게이트웨이 명단 전체가 마치 사례 관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사례관리는 그중에 정말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자활로 이끌어가는 조금. 그게 사례관리의 목적인데 사례관리 건수나 저희가 넘긴 건수나 서비스 연계 정도 가지고 사례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센터가 아직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게 너무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는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센터에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없어서 있지만 사례관리가 정말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참여자 E)

### 3. 각 평가 항목별 문제점

#### 1) 연령

일선 현장에서는 연령에 따라 취업 가능성, 적합 일자리에 대한 경향성은 일부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참가자들이 다수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 참여자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참여 지속 여부는 연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 욕구, 자활(참여)의지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한다. 나이가 많지만 '나는 너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기에, 연령이 근로역량에 있어서 주요한 지표는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도우미 선생님 중에서도 연령대가 이제 60년대 생부터 해가지고 또 분포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근로유지형이 무조건 또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략)*... 근데 경향성은 보이더라고요.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대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참여를 하셨을 때 잘하시는 편인 것 같다." (참여자 G)

"청년층이 사실 좀 취업이 그래도 되는 편이니깐요. 중장년층에 비해서 청년들이 자립도 좀 그래도 많이 확률적으로 높긴 합니다. 수급기간이 또 오래되고 진짜 나이가 한 50-60대 중장년 이상일수록 그리고 완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본인도 의지가 많이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지가 않고요." (참여자 L)

"55세 이상이면 취업이 약화된 연령인데, 저희는 대부분이 56세 이상이어서. 그러면 재량으로 이렇게 56세지만 이 옆에다가 플러스 재량 점수를 주는 형태로 *(중략)* 연령이나 오히려 이렇게 재량 그러니까 56세가 넘기는 하지만 '나 너무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여자 C)

“저희 지역에 55세에서 60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50세에서 55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방향 목표를 저희 이제 복지국에서 자활로 넘어오는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지시, 이런 게 내려와서. 제가 연령을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청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중략) 아예 유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에 대한 사실 이 평가표에 대한 회의는 좀 있죠. 사실 이거 가지고 고용센터 이제 고용 쪽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연령이 중요한데 저희는 사실 고려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60세에서 65세 사이를 점수를 하나 더 넣든지, 그래서 대부분 피크가 55세에서 60세인데 지금 이 분류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참여자 E)

“연령에 따라 이 사람이 일을 계속할지 말지 그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계속하는 건데. 요즘 애들이랑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젊다고 점수를 많이 주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 J)

## 2) 건강 상태

자활사업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신체능력 및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신체 건강의 경우,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들은 장애인 일자리로 많이 빠지고 있기에 비교적 스크리닝이 잘 되지만 정신건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스크리닝의 미흡함이 많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진단은 주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있으며, 정신건강으로 인한 스크리닝 문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유발한다. 정신건강에 따른 적절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로 넘어갔다가, 초기 상담 이후 정신질환으로 다시 시·군·구로 돌아와 조건부 유예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고 없고는 사실 자활에서는 일자리에서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자활 일자리에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신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게 더 많이 차지를 하는데…(중략)…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친구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제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증상들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분명히 의심은 되는데 본인은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건강하다고 얘기하시죠.” (참여자 A)

“저도 이제 건강 상태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진단서를 내거나 근로능력 평가를 받으실 정도 분들이면. 이미 진단서를 냈고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때더라도 이제 정신 건강 능력이 여기 건강 상태 항목에서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점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정신 건강 어쨌든 그것도 이제 건강 측면이니까.” (참여자 G)

“자활 역량 평가 보면은 보면은 지금 제가 추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정신건강. 이제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한게 자활에 의뢰돼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정신 건강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역량 평가표에 보면 재량 점수로써는 돼 있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인데. 그게 점수가 재량 점수

로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거를 약간 이제 좀 세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재량 점수가 아닌 그걸 따로 추가해서 하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참여자 I)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랑 신체질환자랑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저희는 우울증 아니면 조현병 이런 분들, 아니면. 근데 또 정신질환자는 특징이 진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안 하고 치료 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략)… 사실 이제 알콜릭이나 술 몇 번 드시는지 이런 거는 실제로 자활 의뢰할 때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까 그거는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참여자 F)

“한 분은 제 참여자인데 한데 오셨을 때는 너무나 얘기도 잘 듣고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총동이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본인 몸에다가 이렇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셔가지고. 자살 기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기 A지역쪽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됐었고 저도 몰랐었고. 근데 이 분이 이제 그전에 그런 문제 행동이 더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연락이 왜 안 되는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 행동이 좀 보인다거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 보인다거나 저희는 이제 일단 왔을 때 이 사람하고 눈 맞추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할 때 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눈을 회피하고 아래만 쳐다본다거나 시선이 불안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이 어눌하거나 이런 부분들.” (참여자 M)

“신체보다는 저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신체가 보통은 장애인 일자리로 많이 빠지세요. 그런 조금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이 의뢰가 들어오면은 되게 난감한 거죠. 자랑 전화 상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내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H)

“저희 주무관님은 그런 거 적어달라고 하세요. 정신과 의심되는 정신과 질병, 위탁 결과 통보서에 정신과 질병 의심, 알코올 중독. 그러면 지침이 변경돼서 이렇게 주임님의 그걸로 유예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다시 자활에 안 오고 유예를 한번 해줘 볼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그런 소통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 3) 직업 이력

일선 현장의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조건부 수급자 중 직업 이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없어, 해당 항목이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직업 이력이 있더라도 대부분 일용 근로를 한 경우가 많아, 단순히 직업 이력 여부보다는 구체적인 직업 이력을 제시하는 것이 현장에 도움이 됨을 이야기한다. 또한 직업 이력의 불확실성 문제도 있다.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 이력을 통해, 실제 이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자활역량평가표상의 직업 이력과 실제 직업 이력과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취약성이 제기된다.

“이거를 좀 근로를 단순 6개월 전.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좀 나오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C)

“(이게 직업 이력이나 그런 경력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크게 변별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다 나오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또 저희 지역 특성상 이제 한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없어요. 수급자분들은. 이제 전화해서 ‘선생님 요즘 혹시 다른 일 하신 적이 있거나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을 일을 살짝 도와주고 돈 받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제가 이 구직 욕구에 대해서 아니 직업 이력에 대해서 이거를 보통 다 일용 근로로 하루 갔다 하고 이렇게 사시는데. …(중략)… 그래서 솔직히 이 직업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여자 J)

“직업 이력은 좀 난해하기는 해요. 이거를 잘 이게 저희가 최근 3년 내 6월 이상 이런 기준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1년 동안 6개월 일하셨는데 이제 실직을 하셨고 이제 조건부 수급자가 되셨어요. 이제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되게 일용 근로였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업 이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딱딱 20점, 10점, 5점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항목은 조금 한 번 좀 재고를...” (참여자 G)

“여기 보면 직업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직업 이력이 실질적으로 실제 이분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고용보험 이력을 보고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장이 얼마나 일했는지를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 공무원 분들은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에서 이 점수들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저는 또 이거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보통 본인의 주장을 그냥 100% 신뢰하고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없는 걸로. 나는 그냥 좀 일반 사업장에서 일 많이 했데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나는 수급자분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이력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 타이어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내가 1년 6개월을 이뤘다, 2년을 이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고 두리뭉실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믿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참여자 L)

또한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직업 이력 항목에서는 문해력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활역량평가가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문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문해력의 부족이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아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전화 상담을 통한 자활역량평가에서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전화 상담으로 사실 문해력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도 기본 면접비를 드리고 선생님한테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 글을 읽는 게 어렵냐? 혹시 쓰는 게 어려우시냐?’라고 여쭙보는 거고 그게 또 단순히 문해력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은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리신 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읽고 쓰는 걸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전화상으로 단순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자 C)

“문해력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근로유지형도 사실은 ‘회의실 청소하지 말아주세요’하는데 회의실이라는 글자를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중략) 실제로 문해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전화로만 상담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갔더니 진짜 안 됐다는 분이 한 두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자주 만나서 상담할 경우는 그런 문제는 발견이 되지만 전화로는 사실은 의지력이 너무 강하게 말했을 때는 저희가 그 속에 숨어버리죠. 문해력이.”(참여자 E)

#### 4) 구직 욕구

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계획의 유무를 살펴보는 구직 욕구 항목에 대해 일선 현장 종사자들은 해당 항목의 변별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조건부 수급자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구직 욕구를 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계획의 유무로 보기보다는 자활 의지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역량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은 점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자활 의지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장단점 파악, 계획 수립 여부 등과 같이 개인별 자립경로(IPA) 수립 시 사용되는 질문들을 이용한다면,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해와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구직 욕구 같은 부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수급자 중에 진짜 거의 드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하시는 분들이 80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취업 의사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국민취업제도 하면서 취업 관련 교육이나 아니면 내 일 배움 카드로 자격증 병행하면서 약간 그렇게 국민취업제도 해서 취업 준비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이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참여자 F)

“구직 욕구가 이제 여기에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동안 이 분이 만약에 어려워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자활 의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활 의지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걸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구직 욕구 없으면 그분은 점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 의지를 하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취업 의지는 있어 근데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계획이 없어도 의지를 볼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잘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면 또 그분한테 기회가. 자활의지나 구직의욕을 이제 이분이 앞으로 그동안 했던 거로 해가지고 자활 의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참여자 I)

“(구직 욕구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항목을 추가?) IAP 수립할 때 거기에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본인의 장단점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미래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데서 진짜 완전히 뜬구

를 잡는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이제 당장은 뭘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뭘 해나가야겠다라는 게 좀 서 있는 분들이든지. 이런 게 좀 IAP를 통해서 조금 많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 5) 가구 여건

현행 자활역량평가에서는 가구 여건을 취업장애요인 유무와 전일제 근로 가능 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활역량평가의 결과 점수만 사업 실시기관에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에서 사업 참여 의뢰자의 실제 취업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자활역량평가와 자립역량 진단표와의 연동이 되지 않아 중복 측정되는 비효율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구 여건은... …(중략)…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굳이 가구 여건이나 이런 거 보고 자활 의지와 근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나라는게(저의 생각이에요).” (참여자 B)

“자활이라는 이런 특수한 이런 환경에서는 젊고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가 단순히 그것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점수는 이제 자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서 점수 책정돼서 그냥 시스템에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 점수는 ‘그 점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 점수가 크게 맞다 그렇게는 또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좀 젊으면 점수가 높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근로 방해 요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게이트웨이 과정 중에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사정할 때 그때 근로 방해 요인들을 다 파악이 되고 하니까. …(중략)… 자활 역량 평가표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는 이게(애로사항들을 파악) 좀 좀 어렵죠 이게 좀 뭐랄까. 크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야되나.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참여자 D)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여건과 가족 돌봄, 거리와 같은 출퇴근 용이성, 전과 여부 등을 통해 취업 방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 실시기관에서 범죄 전과를 공통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편의점, 카드 배송,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단 배치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시·군·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업 실시기관에서 파악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러한 내용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부모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어쨌든 중요... 왜냐하면 이제 한부모는 8시간 자활 근로를 되게 힘들어하시가지고. 자기 아이 양육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거 병행해서 8시간 근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그러면 그런 데 말기라는 거나 이런 식이여가지고. 왜냐하면 시간제가 자활에 있긴 한데 워낙 한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리가 지금 딱 차 있어서 배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시간제 자리 생길 때까지 게이트웨이를 대기만 하실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가구 여건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참여자 F)

“가구 여건 중에 취업 방해 요인 말씀하시는 거죠? 거리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여기까지 못 와요. 심지어 저희가 자활 사업 지금 읍에 딱 다 몰려 있거든요. 다른 면에 한 군데 모든 게 다 읍에 몰려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진짜 차가 없으면 잘 못 다녀요. 진짜 큰 거는 버스가 되게 자주 있다고 해도.” (참여자 J)

“제가 꼭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전과가 있으시냐, 노숙하신 경험이 있으시냐 이 두 가지를 꼭 물어 보거든요. 그런데 범죄 상태는 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쭙봐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장, 편의점, 카드,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봄도 그렇고. 집수리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들어가면 다 걸리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안 하시면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e알리미 서비스를 들어가서 하나씩 다 눌러보는 거고. 그래서 진짜 찾은 분들이 있어요.” (참여자 C)

## 6) 재량 점수

현행 자활역량평가에서 재량 점수는 평가 담당자가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 내에서 부여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재량 점수의 활용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른 일부는 자활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자의 이력만큼이나 자활 의지와 태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이를 반영하는 항목으로써 재량 점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범죄 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와 같이 심오한 내용보다는 평가 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것과 같이 항목의 재구성이 필요함이 제기된다.

“재량 점수 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량 점수가 거의 8에서 10점은 다 붙어서 오거든요. 재량 점수 아니면 70점인데 재량 점수 줘서 80점으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참여자 M)

“재량 점수를 진짜 점수 맞추려고 쓸 때가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재량 점수 평가 항목은 좀 심오하잖아요. 내용이 조금. *(평가 항목은 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사실 이 평가항목 내용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점수를 그냥 직관적으로 주시는 거죠?)* 네네” (참여자 F)

“저는 재량 점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표든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략)… 이 사람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해도 재량 가지고 그 의지를 느꼈던 거를 넣어줄 수 있다는 자리가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중략)… 실질적으로 이력, 경력, 의지, 계획, 이런 것들이 표로 다 표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복e음의 상담 이력을 꼭 봤을 때 아무리 의지가 높고 계획이 있고 이력이 있대도 안되겠어라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저희가 재량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상담을 했더니 그 의지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E)

“이렇게 그냥 재량 점수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재량 점수를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령이 될 수도 있고 병이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참여자 C)

“재량 점수보다는 거기 다 특이사항을 쓰는 식의 용어가 있으면(좋을 것 같아)” (참여자 A)

#### 4. 소결

본 장에서는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고, 현장적합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활역량평가 담당 시·군·구 공무원,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고용노동센터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자활역량평가 프로세스 및 초기 상담 프로세스와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FGI의 내용은 크게 기관별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과 자활역량평가표 항목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자활역량평가는 짧은 시간의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매뉴얼과 교육이 부족하다. 또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일부 공무원은 자활역량평가의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점수를 조정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활역량평가의 결과와 실제 수급자의 역량 간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 지침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조건이 부과되어 시·군·구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자활역량평가 결과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되었다. 먼저, 자활역량평가의 결과가 수급자 개인의 질적인 내용과 비례하지 않아, 현행 자활역량평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참여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적음을 지적되었다. 또한 자활역량평가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자활센터와 고용센터로 전달이 되지 않아, 수급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한계

들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활용하는 자활역량평가표와 자립역량진단표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현장 종사자들은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통합된 평가도구로 사업단 유형(e.g.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까지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시·군·구 공무원과 사업 실시기관의 목표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자활역량평가표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행 자활역량평가표의 항목에 따라,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 점수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연령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라 취업 가능성과 적합 일자리에 대한 경향성을 일부 보일 수 있으나, 연령이 근로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50대 이상 참여자가 많으며, 연령보다는 구직 욕구와 자활의지가 자활 사업 참여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강 상태의 경우, 자활 사업에서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 신체 건강의 경우에는 비교적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 건강 측면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로 우울증과 알콜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 문제가 자활 사업 참여자에서 발견이 된다. 세 번째로 직업 이력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직업 이력이 없기에, 직업 이력 항목이 자활역량평가에서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직업 이력 항목에서 보고 있는 문해력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자활역량평가에서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네 번째로, 구직 욕구 항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조건부 수급자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기에 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의 계획의 유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계획 유무에 더해 자활 의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자활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섯 번째로, 현행 자활역량평가의 가구 여건 항목만으로는 사업 실시기관에서 수급자의 취업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구 여건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구체적인 방해요인으로는 근로시간 여건, 가족돌봄, 거리와 같은 출퇴근 용이성, 그리고 전과 여부 등이 꼽힌다. 마지막으로 재량 점수와 관련하여, 일부 현장에서는 재량 점수가 실제 평가 지표에 따른 객관적인 점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 점수의 활용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나, 다른 일부는 자활역량표에서 평가되지 않는 자활 의지나 태도와 같은 일부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항목으로서 재량 점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위해 특이사항 기재와 같이 항목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었음을 FGI를 통해 알 수 있었다. FGI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FGI 내용 요약

구분	답변 내용
<p>개별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부분의 자활역량평가는 짧은 유선 상담으로 이루어짐.</li> <li>• 자활역량평가 관련 매뉴얼과 교육 부족</li> <li>• 배치를 위한 평가자의 점수 부여·조정 등 주관적 개입 가능성 높음</li> <li>•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특성 파악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배치에 사용 빈도 적음</li> <li>• 주체 간 자활역량평가의 세부 내용 공유되지 않아서 활용 어려움</li> </ul>
<p>자활역량평가표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 취업 가능성과 적합 일자리에 대한 경향성을 일부 보일 순 있지만, 근로 역량 판단을 위한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사료됨.</li> <li>• 건강 상태 : 신체건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나, 정신 건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li> <li>• 직업 이력 : 자활 참여자의 대부분 직업 이력이 없기에 변별력 없음. 현장의 여건 상 현실적으로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li> <li>• 구직 욕구 : 구직 활동의 계획 유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변별력 없음. 취업 의사, 구직 활동 계획 유무에 더해 자활 의지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 있음.</li> <li>• 가구 여건 : 평가 항목 구체화 필요. 근로 시간 여건, 가족 돌봄, 출퇴근 용이성, 전과 여부 등의 방해요인이 있음.</li> <li>• 재량 점수 : 재량 점수 활용도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의견과 자활역량표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 모두 존재함.</li> <li>• 기타 : 특이사항 기재 등 항목 추가 필요함.</li> </ul>



#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

1.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2. 정책제언



# V

##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 개선안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 1.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근로능력평가는 실질적인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활역량평가표는 초기상담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자활역량 등을 판단하기에 여러 한계점을 가진다. 앞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의 자활역량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둘째, 현행 자활역량평가표 측정방식과 체계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들의 욕구와 역량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지표로서, 자활역량진단표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자활역량평가표에 기초역량, 건강영역, 직무능력, 직업 이력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면밀한 역량을 파악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세분화하였다. 다음으로 자활역량과 의지를 포착하기 위해 구직 및 근로의지, 직무능력의 지표들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대상자들의 자활역량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할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활역량평가 측정방식과 체계가 가지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세부 영역의 세부 기준을 단순화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상담 과정에서 자활담당공무원이 전문성 보다는 질문 형식으로 측정할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표 세부영역이 지역자활센터 혹은 고용센터로 전달되었을 때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은 대상자의 자활능력을 확인하고, 사업 배치 후 적합적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초역량, 건강, 직무능력, 구직 및 근로의지, 근로여건, 지자체 종합의견으로 구성하였다.

〈표 V-1〉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영역(배점)	하위영역		세부항목 (배점)		
	내용	배점			
기초역량 (15)	연령	5	연령 (5)		
	학력	5	학력 (5)		
	자격증	5	운전면허자격증 (1)	민간자격증 (2)	국가자격증 (2)
건강 (20)	신체적 근로능력	10	신체활동 (5)	질병 및 질환 (5)	
	정신적 근로능력	10	정신건강 (5)	음주 및 약물 중독 (5)	
직무능력 (33)	문제해결능력	6	업무이해능력 (3)	문제처리능력 (3)	
	의사소통 및 관계능력	9	대인관계능력 (3)	감정조절능력 (3)	의사소통능력 (3)
	업무태도	6	성실성 (3)	업무책임성 (3)	
	업무수행능력	12	문해력 (3)	수리능력 (3)	컴퓨터활용능력 (3)
구직 및 근로의지(20)	직업 이력	10	일반 노동시장 및 공공일자리 근로이력 (5)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 (5)	
	근로의지	10	구직경험 (5)	자활계획 (5)	
근로여건(12)	근로가능시간	6	근로가능시간 (6)		
	근로방해요인	6	근로방해요인 (6)		
총 계		100			

### 1) 기초역량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초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에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지표인 연령, 학력, 자격증을 세밀하게 추가하였다. 자활정보시스템 DATA 분석 및 FGI 도출 결과, 연령, 학력, 자격증이 실질적인 자활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이에 기존의 연령항목 점수를 10점에서 5점으로 감소시키고, 연령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로써 학력(5점)과 자격증(5점)을 추가하였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V-2〉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기초역량영역

영역	영역 구성	항목(안)			
기초 역량 (15)	연령 (5)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39세 이하 (청년)	
		중	3	40세 - 55세 (중장년)	
		하	1	56세 이상 (고령)	
	학력 (5)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4년제 대졸 이상	
		중상	4	전문대졸	
		중	3	고졸	
	자격증 (5)	운전 면허	등급	점수	세부 기준
			1	있음	
				↳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종보통 <input type="checkbox"/> 1종보통 <input type="checkbox"/> 1종대형 <input type="checkbox"/> 1종특수	
		0	없음		
민간 자격증		2	2개 이상 소지		
		1	1개		
			↳ 있는 경우 자격증 유형: _____, _____		
0		없음			
국가 자격증		2	있음		
		0	↳ 있는 경우 자격증 유형: _____, _____		
			없음		

## 2) 건강영역

대상자의 건강은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들을 선별하는데 주요한 평가 항목이다. 대부분의 국내 관련 지표들과 해외 국가들에서 근로 능력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의 건강을 주목하여 세분화 기준을 설계하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역량 저하와 건강 상태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조건부 수급자들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본 개선 지표에서는 건강 부분을 세분화하여 근로능력평가에서 판단되지 못한 주관적 건강 상태나 건강으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사업 배치의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존의 건강 상태 점수 20점에 대해 신체적 근로능력과 정신적 근로능력으로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신체적 근로능력에서는 객관적 신체활동과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을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정신적 근로능력에서는 정신건강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문제를 개념화하여 측정하도록 하였고, 자활 현장에서 근로유지의 어려움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되었던 음주 또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을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V-3〉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건강영역

영역	영역 구성	세부 영역	항목(안)		
			등급	점수	세부 기준
건강 (20)	신체적 근로 능력 (10)	신체 활동 (5)	양호	5	현재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에는 영향이 없음
			보통	3	현재 신체 활동 어려움이 있어 단순 근로나 단시간 근로만 가능함
			미약	1	현재 신체 활동 어려움이 있어 근로를 하기 어려움
			※ 신체활동은 앉기, 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들거나 운반하기, 굽히기 등을 의미함		
			※ 질병,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피부질환, 심장질환, 암, 갑상선 장애, 간질환 등을 포괄함		
		질병 및 질환 (5)	양호	5	현재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보통	3	현재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미약	1	현재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 질병,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피부질환, 심장질환, 암, 갑상선 장애, 간질환 등을 포괄함		
			※ 질병,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피부질환, 심장질환, 암, 갑상선 장애, 간질환 등을 포괄함		

영역	영역 구성	세부 영역	항목(안)		
	정신적 근로 능력 (10)	정신 건강 (5)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양호	5	현재 정신적 문제*가 없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보통	3	현재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미약	1	현재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 장애, 공황 장애, 인격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진단받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 또는 그 의심증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건제시유예 사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역량표 뒤부분에 체크		
		음주 또는 약물 중독 (5)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양호	5	현재 음주 또는 약물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이나 근로에 영향이 없음
			보통	3	현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으며, 단순 근로나 단시간 근로만 가능함
			미약	1	현재 아침에 술을 마시는 등 음주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렵거나 근로에 영향이 큼 (예.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 음주(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의심증상 포함)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 사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역량표 뒤부분에 체크		

### 3) 직무능력

직무능력(job competency)은 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 및 지식,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표준수준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이형하 외, 2023). 자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자활역량평가표를 측정하는 주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에서는 기존의 역량평가표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직무능력을 측정하여,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영역구성에는 문제해결능력(6점), 의사소통 및 관계능력(9점), 업무태도(6점), 업무수행능력(12점)을 구성하였으며, 각각 세부 측정도구로서 문제해결 능력에는 업무이해와 문제처리, 의사소통 및 관계 능력에는 대인관계,

감정조절, 의사소통을, 업무태도에는 성실성, 업무책임성, 업무수행능력에는 문해력, 수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을 포함하였다. 각 측정 도구의 점수는 3점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V-4〉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직무능력

영역	영역 구성	세부 영역	항목(안)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직무 능력 (34)	문제 해결 능력 (6)	업무 이해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간혹 있어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시를 이해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문제 처리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큼
	의사 소통 및 관계 능력 (9)	대인 관계 능력 (3)	상	3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원활하고, 근로에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직장생활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
			하	1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자주 갈등이 있고, 대화로 해결하지 못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큼
		감정 조절 능력 (3)	상	3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근로에는 어려움이 없음
			중	2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 일을 하는 것이 힘들 때가 간혹 있음
			하	1	스트레스나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할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음

V.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방안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영역	영역 구성	세부 영역	항목(안)												
	의사 소통 능력 (3)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3</td> <td>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td> </tr> <tr> <td>중</td> <td>2</td> <td>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종종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td> </tr> <tr> <td>하</td> <td>1</td> <td>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종종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종종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												
	성실성 (3)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3</td> <td>지각 또는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출퇴근 등 업무 시간 및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함</td> </tr> <tr> <td>중</td> <td>2</td> <td>가끔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한적이 있거나,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td> </tr> <tr> <td>하</td> <td>1</td> <td>자주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지각 또는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출퇴근 등 업무 시간 및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함	중	2	가끔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한적이 있거나,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자주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지각 또는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출퇴근 등 업무 시간 및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함										
	중	2	가끔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한적이 있거나,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자주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													
업무 태도 (6)	업무 책임성 (3)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3</td> <td>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냄</td> </tr> <tr> <td>중</td> <td>2</td> <td>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td> </tr> <tr> <td>하</td> <td>1</td> <td>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냄	중	2	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냄											
중	2	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업무 수행 능력 (12)	문해력 (3)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3</td> <td>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td> </tr> <tr> <td>중</td> <td>2</td> <td>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순 근로가 적합함</td> </tr> <tr> <td>하</td> <td>1</td> <td>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순 근로가 적합함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순 근로가 적합함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영역	영역 구성	세부 영역	항목(안)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수리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사칙연산 등 계산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사칙연산 등 계산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순 근로가 적합함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사칙연산 등 계산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움
	컴퓨터 활용 능력 (3)		상	3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원활하지는 않음
			하	1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움
	정보 처리 능력 (3)		상	3	정보 검색, 이메일 발송, 자료업로드 등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정보 검색, 이메일 발송, 자료업로드 등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원활하지는 않음
			하	1	정보 검색, 이메일 발송, 자료업로드 등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움

#### 4) 구직 및 근로의지

구직 및 근로의지는 취업의사와 노동능력을 가지며 취업 전까지의 취업을 위한 모든 행동과 과거 직업 이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최영준, 2022). 즉, 구직을 위한 준비와 구직의지 그리고 구직을 위한 노력, 태도로 실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구직을 위한 행동으로 의미한다. 구직 및 근로의지는 기존 자활역량평가표에서도 직업 이력(20점), 구직요구(2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직 욕구(20점) 평가항목이 대상자의 구직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직업 이력(20점)의 경우 직무능력과 직업 경험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FGI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에는 구직 및 근로의지 점수 배점을 낮추고,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직업 이력(10점)과 근로의지(10점)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직업 이력은 일반노동시장 및 공공일자리 근로이력(5점)과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

(5점)으로 구성함으로써 대상자의 과거 일자리 경력과 과거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같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직 및 근로의지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근로의지는 구직경험(5점)과 자활계획(5점)을 통해 구직하려는 노력과 행동과 같은 주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직 및 근로의지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V-5〉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구직 및 근로의지

영역	영역 구성	세부 영역	항목(안)																					
구직 및 근로 의지 (20)	직업 이력 (10)	일반 노동 시장 및 공공 일자리 근로 이력 (5)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5</td> <td>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td> </tr> <tr> <td>중상</td> <td>4</td> <td>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3년 미만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td> </tr> <tr> <td>중</td> <td>3</td> <td>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기간 동안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td> </tr> <tr> <td>중하</td> <td>2</td> <td>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공공일자리에 종사함</td> </tr> <tr> <td>하</td> <td>1</td> <td>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공공일자리에 종사함</td> </tr> <tr> <td>일경험 없음</td> <td>0</td> <td>최근 5년 내 일 경험 없음</td> </tr> </tbody> </table> <p>※ 정부 일자리는 자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포괄함                  ※ 일반노동시장 경력과 공공일자리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배점이 높은 것으로 체크</p>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중상	4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3년 미만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중	3	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기간 동안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중하	2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공공일자리에 종사함	하	1	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공공일자리에 종사함	일경험 없음	0	최근 5년 내 일 경험 없음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중상	4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3년 미만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중	3	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기간 동안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중하	2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공공일자리에 종사함																						
하	1	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공공일자리에 종사함																						
일경험 없음	0	최근 5년 내 일 경험 없음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 (5)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5</td> <td>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규칙적으로 일함</td> </tr> <tr> <td>중</td> <td>3</td> <td>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불규칙적으로 일하였으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음</td> </tr> <tr> <td>하</td> <td>1</td> <td>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음</td> </tr> <tr> <td>일경험 없음</td> <td>0</td> <td>최근 3년 내 일 경험 없음</td> </tr> </tbody> </table> <p>※ 여기서의 일자리는 일반노동시장과 정부 일자리를 모두 포괄함                  ※ 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일자리(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한 것으로 봄;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봄</p>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규칙적으로 일함	중	3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불규칙적으로 일하였으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음	하	1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음	일경험 없음	0	최근 3년 내 일 경험 없음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규칙적으로 일함																						
중	3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불규칙적으로 일하였으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음																						
하	1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선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음																						
일경험 없음	0	최근 3년 내 일 경험 없음																						
근로 의지 (10)	구직 경험 (5)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5</td> <td>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는 편임</td> </tr> <tr> <td>중</td> <td>3</td> <td>일이 없을 때는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일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수동적)</td> </tr> <tr> <td>하</td> <td>1</td> <td>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일이 없을 때는 대체로 그냥 씬</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는 편임	중	3	일이 없을 때는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일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수동적)	하	1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일이 없을 때는 대체로 그냥 씬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는 편임																						
중	3	일이 없을 때는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일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편임 (수동적)																						
하	1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일이 없을 때는 대체로 그냥 씬																						
자활 계획 (5)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세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5</td> <td>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있음</td> </tr> <tr> <td>중</td> <td>3</td> <td>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으나, 목표를 위한 계획은 없으며 잘 모르겠음</td> </tr> <tr> <td>하</td> <td>1</td> <td>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음</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있음	중	3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으나, 목표를 위한 계획은 없으며 잘 모르겠음	하	1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음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5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있음																						
중	3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으나, 목표를 위한 계획은 없으며 잘 모르겠음																						
하	1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음																						

### 5) 근로여건(방해요인)

자활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구 여건 및 지역사회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활역량평가표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영역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별 자료를 이용해서 취업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구직자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면밀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자활역량평가표에서는 가구 여건(20점), 재량 점수(10점)을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구 여건이라는 평가항목의 개념과 취업장애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대상자의 가구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인지, 대상자가 근로하는데에 어려운 방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인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에서는 근로여건(방해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근로가능시간(6점)과 근로방해요인(6점)으로 구성함으로써 근로방해요인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V-6〉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근로여건(방해요인)

영역	영역 구성	항목(안)		
	근로 가능 시간 (6)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6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 가능
		중	3	1일 4시간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가능
		하	1	1일 4시간 미만,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 가능
근로 여건 (방해요인) (11)	근로방해 요인 (6)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상	6	근로 방해 요인이 없음
		중상	5	근로 방해 요인이 1개 있음
		중	3	근로 방해 요인이 3개 이하이며,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로 가능함
		하	1	근로 방해 요인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어 근로가 매우 곤란함
		↳ 가지고 있는 근로를 방해하는 요인을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채무과다·신용불량 <input type="checkbox"/> 불안정한 주거 상황 <input type="checkbox"/> 가족 돌봄 (아이, 부모, 배우자 등)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어려움(장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 <input type="checkbox"/> 범죄이력 <input type="checkbox"/> 가족갈등 <input type="checkbox"/> 식사하기, 씻기, 옷입기 등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자기관리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물건 구매, 운동, 병원가기 등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생활 및 자기관리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 방해 요인( )		

### 6) 지자체 종합의견

자활역량평가 프로세스에 따르면, 자활사업 배치는 자활욕구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의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 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에서는 점수체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지자체 자활담당공무원이 자활역량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V-7〉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_지자체 종합의견

영역	영역 구성	항목(안)	
지자체 종합 의견	자활경로	<input type="checkbox"/> 국민취업지원 연계	<input type="checkbox"/> I 유형(생계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II 유형(조건부수급자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자활근로사업 연계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도우미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 3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자활근로 (1일 4시간, 건강 및 양육 등 사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건강 및 양육 등 사정 고려 시)
	조건부과 (제시)유예 검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필요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필요함  ↳ 검토 필요 이유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문제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기타 참조사항	• • •		

## 2.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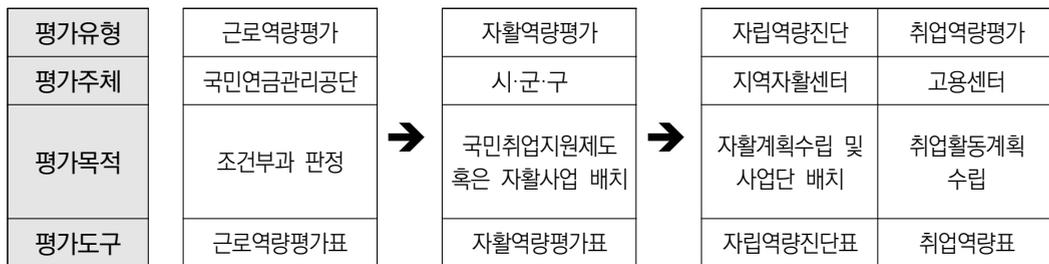
### 1) 평가 프로세스 : 연금공단,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의 근로 역량 평가 유기적 연계 및 연동

현재 수급자들의 근로 역량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아래 <그림V-1> 참조).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역량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 역량을 판정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조건부와 판정을 받으면 시군구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시군구의 자활역량평가는 자활담당공무원이 시행하며, 조건부 수급자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8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40점 이상 80점 미만), 고용유지형(45점 미만)으로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시·군·구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시행하여 수급자를 대체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배치하게 되는데 각 사업으로 배치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역량표를, 자활센터에서는 자립역량진단표를 활용하여 또 다시 근로 역량을 평가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취업역량표를,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립계획 수립 및 사업단 배치를 위해 자립역량표를 활용하여 각각 다시 참여자의 근로 의지 및 능력을 사정한다.

[그림 V-1] 수급자 근로 역량 평가 프로세스



이처럼 수급자들은 3번에 걸쳐 근로 능력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의 세부 목적은 조건부와 판정, 국취 혹은 자활사업 배치, 사업단 배치 혹은 자립계획 수립 등으로 모두 근로 능력을 사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앞서 3장 1절에서 분석, 제시하였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

즉 현재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저소득 구직자들의 근로 능력을 유사한 평가표를 활용하여 중복적으로 사정하면서 서로 결과를 공유하거나 연동하는 것 없이 완전히 분리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 부담과 비효율을 동반하며, 관료적 서비스에 따른 참여자의 저항을 야기한다. 또한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근로 능력에 대한 이해와 판정이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다 보니 시·군·구에서 자활 근로로 판정되어 배치되었다가도 다시 시·군·구로 돌아오며 상담과 배치가 반복되며 시·군·구 공무원들의 소진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중복적으로 구성된 평가표와 평가 프로세스를 통합한 근로능력 평가로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근로능력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는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근로 역량 평가 일원화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자활센터가 동일한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활역량평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자활역량평가 결과를 지역자활센터에 공유, 연동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 배치와 자립계획 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2) 평가 방식 : 대면평가와 교육, 매뉴얼 필요

현재 시·군·구의 근로능력 평가는 시·군·구의 자활담당공무원이 자활역량평가표를 활용하여 전화상담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전화상담으로 근로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자의 문해력, 시력, 인지능력 및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이는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배치된 수급자들이 시·군·구로 다시 돌아와서 상담과 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개편된 자활역량평가표는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며 참여자의 욕구와 의지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전화상담이 아닌 대면상담으로 근로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는 자활역량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자활담당공무원 대상 교육과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활역량평가표가 이전에 비해 복잡해졌으며 평가를 담당하는 시·군·구 담당자의 잦은 변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자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자활역량평가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도출되어 수급자들이 근로 능력에 적합한 곳으로 배치,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자들 대상으로 근로역량 사정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3) 자활역량평가표 활용의 방향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수급자에게는 수급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판정을 받는 시점이 될 것이다. 자활역량평가표는 시군구 공무원과 자활사업 실행기관 사이의 중요한 기점이며, 그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자활역량평가표는 중간 단계에서 자활사업 대상자의 탈빈곤과 자활의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개편(안)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성장 여지를 파악하고 고려하여 자활사업에 적절히 배치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활역량평가 점수만으로 기계적 사업단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의 한계 역시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자활역량평가 점수의 지역자활센터 활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참여자의 다변화를 고려한 자활역량평가표 개편 노력

현재 자활역량평가표에서는 근로 능력을 연령, 건강,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연령, 건강, 직업 이력은 객관적 지표이며, 구직 욕구와 가구 여건은 각각 취업의사와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성, 취업장애요인을 가지는 정도의 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및 구직 의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혹은 자활사업으로의 배치를, 취업장애요인은 근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구성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근로 능력, 특히 근로 의지와 장애요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의 변화 등에 따른 자활사업 성격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2,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서는 자활사업의 역할을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근로 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정서적 측면에서 자활 의지 고양을 포함하여 정서적 역량 강화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 향상을 지역자활센터의 중요한 성과로 보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정서적 측면에서의 변화, 자활이 되어가는 과정 또한 자활의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자활 의지와 같은 정서적 측면을 자활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음

직업 속에서 자활역량평가에서도 구직과 근로 의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 미약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 및 근로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자활역량평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참여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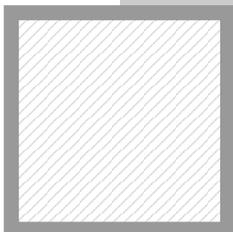
##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2023. 조건부수급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의뢰자 운영 지침.
- 김용석·이재완·한명미·김묘정·정한샘. 20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 참여기간, 자활의지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7(1), 143-163.
- 노대명·이현주·강신욱·이병희·박찬임·황덕순·전지현·우선희. 2011. 근로능력 및 자활 역량 판정체계 개편방안.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문준혁. 20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 제도와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8(2), 125-169.
- 보건복지부. 2023a. 2023 근로능력 판정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 자활사업 안내(1).
-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e.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2023년 개정판.
- 보건복지부. 2002-2023.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 이문국. 2016. 자활사업 제도 변화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참여 변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사회서비스연구, 6(1), 85-115.
- 이상아·최상미·김소형·고은새·설소희. 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정책효과성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은희. 2021.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723-737.
- 이진명·구혜경. 2021. 참여자 관점에서의 자활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제언. 인문사회21, 12(2), 563-576.
- 이형하·박인아·방희명·김진희. 2023. 임금근로 지체장애인의 직무능력이 삶의 만족에

- 미치는 영향 : 조직적응능력과 직무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2), 461-474.
- 최상미. 2018. 이용자중심적 관점으로부터의 자활에 대한 재개념화. 사회과학연구, 25(1), 98-124.
- Anderson, J. 2015. "Program Year 2015 Request for Proposals". <https://snohomishcountywa.gov/DocumentCenter/View/24784>
- Australian Government. 2023. "Job Seeker Snapshot". <https://www.dewr.gov.au/download/14002/job-seeker-snapshot-line-form/29558/job-seeker-snapshot-line-form/pdf>
-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irections for County Worker : Learning Need Screening". 2023. 07. 01 자료인출. <https://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WTW18.pdf>
- Centerlink, Service Australia. 2022. "Work Capac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aus142-2109-en-v2.pdf>
-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2023. Job Seeker Snapshot Off-line Form.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Australia Government.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Reauthorization of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Program; Final Rule.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Depar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1. Screening and Assessment in TANF\Welfare-to-Work : Local Answers to Difficult Question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Depar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Work Capacity - Customer information form (English Version). Services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 DWP. 2020. "Universal Credit : 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609/uc50-interactiv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609/uc50-interactive.pdf)

- ESA(Economic Services Administration),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2021. "Workfirst Handbook".  
<https://www.dshs.wa.gov/esa/manuals/workfirst-handbook>
- European Union, and SQW. 2019. "London Work and Health Programmes evaluation : Theme A report".  
[https://www.londoncouncils.gov.uk/sites/default/files/London%20WHP%20evaluation\\_0.pdf](https://www.londoncouncils.gov.uk/sites/default/files/London%20WHP%20evaluation_0.pdf)
- Ewing, J. A. 1984. Detecting Alcoholism : The CAGE Questionnaire. JAMA, 252(14), 1905-1907.
- Fassaert, T., Lauriks, S., van de Weerd, S., Theunissen, J., Kikkert, M., Dekker, J., Buster, M., and de Wit, M. 201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utch version of the self-sufficiency matrix (SSM-D).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0, 583-590.
-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2021. "Basic Skills Deficiency Assessment Requirements".  
<https://www.illinoisworknet.com/WIOA/Resources/Documents/WIOA%20Policy%205.9%20Basic%20Skills%20Deficiency%20Assessment%20Requirements.pdf>
- Johns Hopkins Health Plans. "CAGE Substance Abuse Screening Tool". 2023. 07. 01 자료인출.  
[https://www.hopkinsmedicine.org/johns\\_hopkins\\_healthcare/downloads/all\\_plans/CAGE%20Substance%20Screening%20Tool.pdf](https://www.hopkinsmedicine.org/johns_hopkins_healthcare/downloads/all_plans/CAGE%20Substance%20Screening%20Tool.pdf)
-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ren. 2022. Employability Screening Tool, 비공개 내부자료.
- Pearce, D. et al., 2011. The Self-Sufficiency Standard for Washington State.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Wider Opportunities for Women.
- Peck, J. 2001. Workfare states. New York, London : Guilford Press.
- State of California. 2019. "Welfare to Work Handbook".  
[https://www.sfhsa.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migrated/Handbooks\\_Welfare\\_to\\_Work\\_.rev\\_.9.2019.pdf](https://www.sfhsa.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migrated/Handbooks_Welfare_to_Work_.rev_.9.2019.pdf)
- State of Nevada. 2020.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Work Verification Plan”.
- <https://dwss.nv.gov/uploadedFiles/dwssnvgov/content/TANF/Proposed%20FFY2020%20TANF%20Work%20Verification%20Plan.pdf>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Screening and Assessment in TANF\Welfare-to-Work : Local Answers to Difficult Questions”.
- <https://aspe.hhs.gov/reports/screening-assessment-tanf-welfare-work-local-answers-difficult-questions-1>
-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3. 07. 01 자료인출. Arizona’s Self-Sufficiency Matrix.
-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1562/self-sufficiency-matrix-using-hmis-to-benchmark-progress-sample/>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2021. “Personal Pathway”.
- <https://www.dshs.wa.gov/sites/default/files/forms/pdf/11-154.pdf>
- Wright, S., Marston, G., and McDonald, C. 2011.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mixed economy of welfare-to-work in the UK and Australia.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5(3), 299-318.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8.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취업역량평가 설문지 - 국민취업제도”
- <https://www.kua.go.kr/uapdd020/selectFormListDtal.do?pageIndex=2&pageUnit=10&srchBizSecd=A&bizSecd=7&srchTy=&srchKwrd=&ntceStno=48>
- 영국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5/contents>
- 호주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 공식홈페이지. [www.servicesaustralia.gov.au](http://www.servicesaustralia.gov.au).
- 호주 워크포스오스트레일리아 공식홈페이지. [www.workforceaustralia.gov.au](http://www.workforceaustralia.gov.au).



## 부 록

---

부록1. 국내 유사지표 비교표

부록2.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부록1] 국내 유사지표 비교표

(단위 : 점, %)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표																																										
연령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8-35세 :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td> <td>10</td> </tr> <tr> <td>36-49세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td> <td>8</td> </tr> <tr> <td>50-55세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td> <td>6</td> </tr> <tr> <td>56세 이상 :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td> <td>4</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18-35세 :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10	36-49세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8	50-55세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6	56세 이상 :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4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연령에 따른 취업가능성 ※세부 기준 알 수 없음</td> <td>1-3</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성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1-3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20-34세</td> <td>5</td> </tr> <tr> <td>35-49세</td> <td>4</td> </tr> <tr> <td>50-64세</td> <td>3</td> </tr> <tr> <td>65-69세</td> <td>2</td> </tr> <tr> <td>15-19세</td> <td>1</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20-34세	5	35-49세	4	50-64세	3	65-69세	2	15-19세	1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34세 이하</td> <td>10</td> </tr> <tr> <td>35-44세</td> <td>8</td> </tr> <tr> <td>45-55세</td> <td>6</td> </tr> <tr> <td>56세 이상</td> <td>2</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34세 이하	10	35-44세	8	45-55세	6	56세 이상	2						
	범주	점수																																												
	18-35세 :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10																																												
	36-49세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8																																												
	50-55세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6																																												
56세 이상 :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4																																													
범주	점수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성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1-3																																													
범주	점수																																													
20-34세	5																																													
35-49세	4																																													
50-64세	3																																													
65-69세	2																																													
15-19세	1																																													
범주	점수																																													
34세 이하	10																																													
35-44세	8																																													
45-55세	6																																													
56세 이상	2																																													
건강 상태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양호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td> <td>10</td> </tr> <tr> <td>보통 :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상 태가 양호하며 근로 활동에 지장이 없 는 사람</td> <td>8</td> </tr> <tr> <td>보통 이하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td> <td>6</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양호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	10	보통 :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상 태가 양호하며 근로 활동에 지장이 없 는 사람	8	보통 이하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6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신체능력 : 운동기능</td> <td>팔벌기</td> <td rowspan="3">각 1-5</td> </tr> <tr> <td>뜨끄려 앉기</td> </tr> <tr> <td>평지이동 충간이동</td> </tr> <tr> <td rowspan="2">신체능력 : 만성적 증상</td> <td>입 · 통원</td> <td rowspan="2">각 1-5</td> </tr> <tr> <td>약복용</td> </tr> <tr> <td colspan="2">※ 운동기능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만성적 증상 : 판 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td> <td></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신체능력 : 운동기능	팔벌기	각 1-5	뜨끄려 앉기	평지이동 충간이동	신체능력 : 만성적 증상	입 · 통원	각 1-5	약복용	※ 운동기능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만성적 증상 : 판 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적 건강 상태 : 현재 나는 정신 적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td> <td>1-5</td> </tr> <tr> <td>정신적 건강 상태 •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어렵다 •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td> <td>각 1-5</td> </tr> <tr> <td>신체적 건강 상태 : 오랜시간 앉 아있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 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td> <td>1-5</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종합적 건강 상태 : 현재 나는 정신 적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1-5	정신적 건강 상태 •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어렵다 •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	각 1-5	신체적 건강 상태 : 오랜시간 앉 아있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 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5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질병 없음</td> <td>10</td> </tr> <tr> <td>단기치료가 필요한 질병</td> <td>8</td> </tr> <tr> <td>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td> <td>6</td> </tr> <tr> <td>만성질환</td> <td>0</td> </tr> <tr> <td colspan="2">※ 정서 · 심리 관련 질환 포함 ※ 단기치료 : 3월 이내, 장기치료 : 6월 이 내, 만성질환 : 6월 이상</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질병 없음	10	단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8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만성질환	0	※ 정서 · 심리 관련 질환 포함 ※ 단기치료 : 3월 이내, 장기치료 : 6월 이 내, 만성질환 : 6월 이상	
	범주	점수																																												
	양호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	10																																												
	보통 :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상 태가 양호하며 근로 활동에 지장이 없 는 사람	8																																												
보통 이하 :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6																																													
범주	점수																																													
신체능력 : 운동기능	팔벌기	각 1-5																																												
	뜨끄려 앉기																																													
	평지이동 충간이동																																													
신체능력 : 만성적 증상	입 · 통원	각 1-5																																												
	약복용																																													
※ 운동기능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만성적 증상 : 판 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범주	점수																																													
종합적 건강 상태 : 현재 나는 정신 적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1-5																																													
정신적 건강 상태 •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어렵다 •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	각 1-5																																													
신체적 건강 상태 : 오랜시간 앉 아있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 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5																																													
범주	점수																																													
질병 없음	10																																													
단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8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만성질환	0																																													
※ 정서 · 심리 관련 질환 포함 ※ 단기치료 : 3월 이내, 장기치료 : 6월 이 내, 만성질환 : 6월 이상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지립역량표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자립성	건강관리	각 1-5	신체활동능력	10점 이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자기관리							
		인지 능력: 사회성	의사소통	각 1-5					※ 신체활동능력은 활동역량 범주의 하위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나, 다른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건강 상태로 분류함	※ 장애정도는 우선선발 기준으로, 다른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건강 상태로 분류함
			감정조절							
대처능력	각 1-5	※ 신체활동능력의 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함	※ 장애정도는 우선선발 기준으로, 다른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건강 상태로 분류함							
공간지각력										
※ 자립성 :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회성 :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신체 활동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능력</li> <li>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연속</li> <li>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뼉쳐 달기</li> </ul>			3가지 충족	20					
		27가지 충족	10							
		17가지 충족	0							
※ 보행능력 : 신청자가 면접장에서 걸어 들 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체활동능력은 활동역량 범주의 하위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나, 다른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건강 상태로 분류함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지립역량표																																										
학력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4년제 대졸 이상</td> <td>5</td> </tr> <tr> <td>전문대졸</td> <td>4</td> </tr> <tr> <td>고졸</td> <td>3</td> </tr> <tr> <td>중졸 이하</td> <td>2</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4년제 대졸 이상	5	전문대졸	4	고졸	3	중졸 이하	2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제4직능수준 (~대학, 대학원)</td> <td>5</td> </tr> <tr> <td>제3직능수준 (~고등, 기술교육)</td> <td>4</td> </tr> <tr> <td>제2직능수준 (~중등)</td> <td>3</td> </tr> <tr> <td>제1직능수준 (~초등)</td> <td>2</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제4직능수준 (~대학, 대학원)	5	제3직능수준 (~고등, 기술교육)	4	제2직능수준 (~중등)	3	제1직능수준 (~초등)	2																						
범주	점수																																													
4년제 대졸 이상	5																																													
전문대졸	4																																													
고졸	3																																													
중졸 이하	2																																													
범주	점수																																													
제4직능수준 (~대학, 대학원)	5																																													
제3직능수준 (~고등, 기술교육)	4																																													
제2직능수준 (~중등)	3																																													
제1직능수준 (~초등)	2																																													
직업 이력 / 구직 역량 / 취업 가능 성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상 :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사장직임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야 함                      중 :                      • 최근 4-5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 없는 경우                      • 문해력 중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하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문해력 하                 </td> <td>20</td> </tr> <tr> <td></td> <td>10</td> </tr> <tr> <td></td> <td>5</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상 :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사장직임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야 함 중 : • 최근 4-5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 없는 경우 • 문해력 중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하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문해력 하	20		10		5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자격증 보유 여부                      1-2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2                      학습                      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3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활동능력평가는 취업가능성의 영향요인을 자격증, 근로경험, 구직동기, 연령, 학습능력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구직동기와 연령을 따로 떼어 보았음                 </td> <td>1-2</td> </tr> <tr> <td></td> <td>1-2</td> </tr> <tr> <td></td> <td>1-3</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자격증 보유 여부 1-2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2 학습 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3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활동능력평가는 취업가능성의 영향요인을 자격증, 근로경험, 구직동기, 연령, 학습능력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구직동기와 연령을 따로 떼어 보았음	1-2		1-2		1-3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필수 지표 : 직업 능력                      자격증                      3개 이상                      5                      보유                      1-2개                      4                      개수                      없음 (0개)                      3                      국가                      기술                      3개 이상                      5                      1-2개                      4                      자격                      3                      IT 활용                      능력                      오피스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5                      주로 인터넷 활용, 동영상 (유튜브 등) 시청 목적으로 사용한다                      4                      PC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3                 </td> <td>5</td> </tr> <tr> <td>                     선택 지표 : 직업 능력                      직업                      3개 이상                      5                      훈련                      1-2개                      4                      참여                      없음(0개)                      3                 </td> <td>5</td> </tr> <tr> <td></td> <td>4</td> </tr> <tr> <td></td> <td>3</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필수 지표 : 직업 능력 자격증 3개 이상 5 보유 1-2개 4 개수 없음 (0개) 3 국가 기술 3개 이상 5 1-2개 4 자격 3 IT 활용 능력 오피스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5 주로 인터넷 활용, 동영상 (유튜브 등) 시청 목적으로 사용한다 4 PC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3	5	선택 지표 : 직업 능력 직업 3개 이상 5 훈련 1-2개 4 참여 없음(0개) 3	5		4		3	<table border="1">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자격증                      2개 이상                      5                      1개 이상                      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없음                      0                 </td> <td>5</td> </tr> <tr> <td>                     근로                      능력                      8시간 이상 근로가능                      5                      4시간 이상 근로가능                      3                      4시간 미만 근로가능                      0                 </td> <td>5</td> </tr> <tr> <td>                     경력                      단절                      기간                      1년 이하                      10                      2-3년                      8                      4-5년                      6                      6년 이상                      4                      경력 없음                      0                 </td> <td>10</td> </tr> <tr> <td></td> <td>8</td> </tr> <tr> <td></td> <td>6</td> </tr> <tr> <td></td> <td>4</td> </tr> <tr> <td></td> <td>0</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자격증 2개 이상 5 1개 이상 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없음 0	5	근로 능력 8시간 이상 근로가능 5 4시간 이상 근로가능 3 4시간 미만 근로가능 0	5	경력 단절 기간 1년 이하 10 2-3년 8 4-5년 6 6년 이상 4 경력 없음 0	10		8		6		4		0
범주	점수																																													
상 :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사장직임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야 함 중 : • 최근 4-5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 없는 경우 • 문해력 중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하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문해력 하	20																																													
	10																																													
	5																																													
범주	점수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자격증 보유 여부 1-2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2 학습 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3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활동능력평가는 취업가능성의 영향요인을 자격증, 근로경험, 구직동기, 연령, 학습능력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구직동기와 연령을 따로 떼어 보았음	1-2																																													
	1-2																																													
	1-3																																													
범주	점수																																													
필수 지표 : 직업 능력 자격증 3개 이상 5 보유 1-2개 4 개수 없음 (0개) 3 국가 기술 3개 이상 5 1-2개 4 자격 3 IT 활용 능력 오피스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5 주로 인터넷 활용, 동영상 (유튜브 등) 시청 목적으로 사용한다 4 PC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3	5																																													
선택 지표 : 직업 능력 직업 3개 이상 5 훈련 1-2개 4 참여 없음(0개) 3	5																																													
	4																																													
	3																																													
범주	점수																																													
자격증 2개 이상 5 1개 이상 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없음 0	5																																													
근로 능력 8시간 이상 근로가능 5 4시간 이상 근로가능 3 4시간 미만 근로가능 0	5																																													
경력 단절 기간 1년 이하 10 2-3년 8 4-5년 6 6년 이상 4 경력 없음 0	10																																													
	8																																													
	6																																													
	4																																													
	0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지립역량표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직업 이력 / 구직 역량 / 취업 가능 성		필수 지표 : 활동역량		선택 지표 : 직업 능력		우선 선발 기준 : 사업 참여 경력					
		의사소통 역량	의사전달능력 (상)	5	인턴/일경험 프로그램	3개 이상 1-2개	5 4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의사전달능력 (중)	4	참여 횟수	없음 (0개)	3		최근 3년간 1년 참여경력이 있 는 자	25	
			의사전달능력 (하)	3	어학점수/ 어학연수	있음 없음 (0개)	5 3		최근 3년간 2년 참여경력이 있 는 자	20	
		경청능력	경청능력 (상)	5	경력 여부				최근 3년간 3년 참여경력이 있 는 자	15	
			경청능력 (중)	4	필수 지표 : 취업 이력			이래 평가 항목 중 선택 (50점 이내) • 자기관리 정도 (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 자기소개 (인적사항 등) •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 직무 수행 능력 • 지시에 대한 이해력 • 지시에 대한 수행능력 •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 문서 복사 가능 정도 • 문서 전달 가능 정도 •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정도 •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표의 여러 부분에 나누어 기술함	각 1-5점 (조절 가능)		
			경청능력 (하)	3	미취업 (창업)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12개월 이상	5 4 3 2				
		선택 지표		컴퓨터 활용 능력	활용능력 (상) 활용능력 (중) 활용능력 (하)	10 5 0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없음	5 4 3
		사무 역량	정보과 검색능력	활용능력 (상)	10	범주				점수	
			: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활용능력 (중)	5	관련 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활용능력 (하)	0		교육 이수자			5	
				※ 컴퓨터 활용 능력 : 전산관련 자격증, 관련 질문 또는 실습을 통해 판단			해당 없음			0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25 20 15 10 5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 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 사업단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직업 이력 / 구직 역량 / 취업 가능 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th> <th style="text-align: center;">범주</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선택 지표</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인성 역량</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적극성</td> <td>사업이해도(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사업이해도(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친절</td> <td>면접태도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면접태도 (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colspan="2"></td> <td>면접태도 (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인 관계 역량</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협조적 관계</td> <td>협조적관계(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협조적관계(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colspan="2"></td> <td>협조적관계(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갈등 해결 능력</td> <td>갈등해결능력(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갈등해결능력(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colspan="2"></td> <td>갈등해결능력(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colspan="4">가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자격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관</td> <td>자격증 유</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격증</td> <td>자격증 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colspan="4">※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td> </tr> <tr> <td colspan="4">※ 인성 및 대인관계 역량 : 면접을 통해 판단</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선택 지표				인성 역량	적극성	사업이해도(상)	5	사업이해도(하)	0	친절	면접태도 (상)	10	면접태도 (중)	5			면접태도 (하)	0	대인 관계 역량	협조적 관계	협조적관계(상)	10	협조적관계(중)	5			협조적관계(하)	0	갈등 해결 능력	갈등해결능력(상)	10	갈등해결능력(중)	5			갈등해결능력(하)	0	가점				자격증	유관	자격증 유	10	자격증	자격증 무	0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				※ 인성 및 대인관계 역량 : 면접을 통해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th> <th style="text-align: center;">범주</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활동 범주</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행 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 력 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colspan="2">※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함</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수행능력 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세부 기준 알 수 없음</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활동 범주	수행 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 력 등)		10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함				※ 수행능력 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th> <th style="text-align: center;">범주</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td> <td>가점 사항 중 자격증</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자격증 2개 이상 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점 10점</td> </tr> <tr> <td colspan="2"></td> <td>자격증 1개지 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점 5점</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해야 함</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가점 사항 중 자격증				자격증 2개 이상 소지	가점 10점			자격증 1개지 소지	가점 5점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해야 함	
			범주	점수																																																																																																			
	선택 지표																																																																																																						
	인성 역량	적극성	사업이해도(상)	5																																																																																																			
			사업이해도(하)	0																																																																																																			
		친절	면접태도 (상)	10																																																																																																			
			면접태도 (중)	5																																																																																																			
			면접태도 (하)	0																																																																																																			
	대인 관계 역량	협조적 관계	협조적관계(상)	10																																																																																																			
			협조적관계(중)	5																																																																																																			
		협조적관계(하)	0																																																																																																				
갈등 해결 능력		갈등해결능력(상)	10																																																																																																				
	갈등해결능력(중)	5																																																																																																					
		갈등해결능력(하)	0																																																																																																				
가점																																																																																																							
자격증	유관	자격증 유	10																																																																																																				
	자격증	자격증 무	0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																																																																																																							
※ 인성 및 대인관계 역량 : 면접을 통해 판단																																																																																																							
		범주	점수																																																																																																				
활동 범주	수행 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 력 등)		10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함																																																																																																					
		※ 수행능력 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범주	점수																																																																																																				
		가점 사항 중 자격증																																																																																																					
		자격증 2개 이상 소지	가점 10점																																																																																																				
		자격증 1개지 소지	가점 5점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해야 함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표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구직 욕구 / 근로 의욕	상: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20	구직 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0-2	취·창업하고 싶은 직업이나 기업을 정했다	각 1-5	근로의지 상	10
	중: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 계획이 없는 사람	10				취·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로의지 중
	하: 취업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5				기회(일자리 등)가 생기면 바로 취·창업할 생각이다		근로의지 하	0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취·창업을 목표로,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실제 임금이나 소득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각 1-5		
						기업의 규모나 안정성이 적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 사업단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일자리																																																	
구직 욕구 / 근로 의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선택 지표</td> </tr> <tr> <td rowspan="2">인성 역량</td> <td>적극성</td> <td>목표의식/ 자원동기 명확</td> <td>5</td> </tr> <tr> <td></td> <td>목표의식/ 자원동기 불명확</td> <td>0</td> </tr> <tr> <td colspan="3">※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 ※ 인성 및 대인관계 역량 : 면접을 통해 판단</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선택 지표			인성 역량	적극성	목표의식/ 자원동기 명확	5		목표의식/ 자원동기 불명확	0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 ※ 인성 및 대인관계 역량 : 면접을 통해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활동 역량</td> <td>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td> <td>10</td> </tr> <tr> <td colspan="3">※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함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td> </tr> <tr> <td rowspan="2">일자리 수용태도</td> <td>상담사가 추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td> <td rowspan="2">각 1-5</td> </tr> <tr> <td>업무상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 등도 고려할 수 있다.</td> </tr> <tr> <td rowspan="4">구직 행동 (최근 6개월 내)</td> <td>취업정보(취업공고)를 찾아 본 적이 있다.</td> <td rowspan="4">예= 5/ 아니오 =1</td> </tr> <tr> <td>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 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다.</td> </tr> <tr> <td>주변에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td> </tr> <tr> <td>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 자리 센터, 직업소개소 등) 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td> </tr> <tr> <td colspan="2">기업 만남의 날, 취업박 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 해본 적이 있다 (온라인 포함).</td> <td></td> </tr> <tr> <td colspan="2">면접을 받아본 적이 있다.</td> <td></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활동 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0	※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함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일자리 수용태도	상담사가 추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각 1-5	업무상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구직 행동 (최근 6개월 내)	취업정보(취업공고)를 찾아 본 적이 있다.	예= 5/ 아니오 =1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 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다.	주변에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 자리 센터, 직업소개소 등) 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기업 만남의 날, 취업박 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 해본 적이 있다 (온라인 포함).			면접을 받아본 적이 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아래 평가 항목 중 선택 (50점 이내)</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li> <li>• 적극적인 태도</li> <li>• 책임감</li> <li>•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li> </ul> </td> <td>                     각 1-5점 (조절 가능)                 </td> </tr> <tr> <td colspan="2">※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기본 직무 및 사회활동능력' 하위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을 구직 역량/취업 가능성 범주와 구직 욕구/ 근로 의욕 범주에 나누어 기술함</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아래 평가 항목 중 선택 (50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li> <li>• 적극적인 태도</li> <li>• 책임감</li> <li>•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li> </ul>	각 1-5점 (조절 가능)	※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기본 직무 및 사회활동능력' 하위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을 구직 역량/취업 가능성 범주와 구직 욕구/ 근로 의욕 범주에 나누어 기술함	
	범주		점수																																																		
선택 지표																																																					
인성 역량	적극성	목표의식/ 자원동기 명확	5																																																		
		목표의식/ 자원동기 불명확	0																																																		
※ 일부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표들과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 ※ 인성 및 대인관계 역량 : 면접을 통해 판단																																																					
범주		점수																																																			
활동 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0																																																			
※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여러 항목에 나누어 기술함 ※ 세부 기준 알 수 없음																																																					
일자리 수용태도	상담사가 추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각 1-5																																																			
	업무상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구직 행동 (최근 6개월 내)	취업정보(취업공고)를 찾아 본 적이 있다.	예= 5/ 아니오 =1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 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다.																																																				
	주변에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 자리 센터, 직업소개소 등) 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기업 만남의 날, 취업박 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 해본 적이 있다 (온라인 포함).																																																					
면접을 받아본 적이 있다.																																																					
범주	점수																																																				
아래 평가 항목 중 선택 (50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li> <li>• 적극적인 태도</li> <li>• 책임감</li> <li>•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li> </ul>	각 1-5점 (조절 가능)																																																				
※ 다른 평가표와의 비교를 위해 '기본 직무 및 사회활동능력' 하위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을 구직 역량/취업 가능성 범주와 구직 욕구/ 근로 의욕 범주에 나누어 기술함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지립역량표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취업 장애 요인 / 가구 여건	상 : 취업장애요인이 없어 근로가 용 이한 사람,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 가능	20															
	중 : 취업장애요인 1가지 이상으로 가구 여건개선이 필요한 사람, 1 일 8시간 이하 근로 가능	10								가족 부양	일상생활을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미취학 자녀, 고령의 부모님, 병간호 필요 가족 등)	각 항목 1-5 점으로 채점 후 합산	공적 부조	최대수령액의 0-43%	10		
	하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5												위과 관련,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 면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님, 정부 혹은 지자체)	가족 사항	최대수령액의 44-50%	8
	※ 취업장애요인 : 가구원의 질병·부상, 양육· 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 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 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															최대수령액의 51-70%	6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가족 생 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각 항목 1-5 점으로 채점 후 합산	최대수령액의 71% 이상	4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일 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장애요소 없음	10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 도 움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연계시 즉시 해소	8				
										개인 사정상 8시간 전일제가 아닌 특정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	각 항목 1-5 점으로 채점 후 합산	부분 돌봄대상 1명 이상	6				
										개인 사정상, 주 5일 근무가 어렵다.		부분 돌봄대상 2명 이상	4				
												직접 돌봄대상 1명 이상	0				
				관련 없음	5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 필요	3												
				파산 필요	0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국민연금 근로능력평가표 -활동능력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업역량표	지역자활센터 지립역량표										
취업 장애 요인 / 가구 여건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범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리적 위치</td> <td>개인 사정상, 출퇴근 왕복 2시간 이내 직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다</td> <td rowspan="2">각 항목 1-5점으로 채점 후 합산</td> </tr> <tr> <td>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자가용, 대중교통 등)</td> </tr> <tr> <td colspan="3">※ 역채점 문항 있음</td> </tr> </tbody> </table>	범주		점수	지리적 위치	개인 사정상, 출퇴근 왕복 2시간 이내 직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다	각 항목 1-5점으로 채점 후 합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자가용, 대중교통 등)	※ 역채점 문항 있음			
범주		점수												
지리적 위치	개인 사정상, 출퇴근 왕복 2시간 이내 직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다	각 항목 1-5점으로 채점 후 합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자가용, 대중교통 등)													
※ 역채점 문항 있음														
재량 점수 및 기타 요인	(재량 점수) 항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 치료 이력, 우울증· 감정조절장애· 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내에서 부여	(음주 문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1-3점으로 채점	(선택 항목) 대학전공과 희망 취업 분야의 관련성, 고교 유형, 대한민국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 수준, 해당 없음 중 참여자에게 적합한 하나의 지표를 선택하여 2-5점 혹은 3-5점 부여	(재량 점수)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서식태도, 취업가능성의 두 가지 항목에 각각 0/2/4/6/8/10 점 부과, 합산										

	자활사업 자활역량평가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 사업단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일자리						
		범주		점수		범주		점수		범주		점수				
취업 장애 요인/ 가구 여건		필 요 도	공적수급 여부 (만60세-64세)	차상위자격 有	10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 無 동거	10	공적 지원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우선선별기준	소득 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5
				차상위자격 無	0			독거노인가구			8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소득 수준
공적수급 여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0원 초과		5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 有 동거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 有	20	여성 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그 외	5	여성 가장	해당사항 없음	0		
	기초연금 미수급		0			노인독신가구		8			초과 미수급			0	여성 가장인 경우 그 외	2
				세대 구성	경제 능력 無 동거	1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 有	20			
					노인독신가구	8										
					노인부부가구	5										
					경제적 능력 有 동거	0										
재량 점수 및 기타 요인	(재량 점수) 향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 치료 이력, 우울증· 감정조절장애· 편 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 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내에서 부여		(재량 점수) 코로나 19 예방 접종 여부를 가점으로 고려				(재량 점수) 코로나 19 예방 접종 여부를 가점으로 고려							(가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시범사업 대 상자 (10점),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또는 5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5점),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 (5점) ※ 자격증 소지 여부도 가점 요인이나, 구 직 역량에 포함시켜 비교함		

[부록2] 현장적합형 자활역량평가표(안)

영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내용		
기초 역량 (15)	연령 (5)	연령 (5)	상	5	39세 이하 (청년)		
			중	3	40세 - 55세 (중장년)		
			하	1	56세 이상 (고령)		
	학력 (5)	학력 (5)	상	5	4년제 대졸 이상		
			중상	4	전문대졸		
			중	3	고졸		
	자격증 (5)	운전 면허 (1)	1	있음 ↳ 있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2종보통 <input type="checkbox"/> 1종보통 <input type="checkbox"/> 1종대형 <input type="checkbox"/> 1종특수			
			0	없음			
		민간 자격증 (2)	2	2개 이상			
			1	1개 ↳ 있는 경우 : 자격증 유형 : _____, _____			
			0	없음			
		국가 자격증 (2)	2	있음 ↳ 있는 경우 : 자격증 유형 : _____, _____			
			0	없음			
		국가 자격증	자격증 유형		자격증 종류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1급)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2급)	기술사	▶ 용접,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발송배전, 축전기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보일러, 금속, 정보통신,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축시공,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등 이공계열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조리, 제빵, 미용사, 세탁 등 ▶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한글 속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 비서 등 ▶ 전문사무 영역의 자격증은 1급일 경우와 산업기사 2급, 3급일 경우는 기능사에 해당됨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1급)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2급)						
	기타 국가 자격증	▶ 교사,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약사, 영양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법무사, 한약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경매사, 관세사, 보세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기관사, 운항사, 항해사, 경영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소방시설관리사, 생활체육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	▶ 정보검색사, TEPS, 한자능력급수, 번역사 1,2,3급, 증권분석사, 1종 투자 상담사, 정보검색사 1,2,3급, 사회보험관리사 1,2,3급, 웹프로그래머 1,2,3급, PC정비사1,2급, 인터넷 정보검색사 1,2급, 무역영어, 증권분석사, 맨스스포츠지도사					
	국제(외국) 자격증	▶ 일본어 능력시험(JLPT), TOEIC, TOEFL, 미국공인회계사(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선물중개인(AP) 등					

영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내용
건강 (20)	신체적 근로 능력 (10)	신체 활동 (5)	양호	5	현재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에는 영 향이 없음
			보통	3	현재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단시간 근로만 가능함
			미약	1	현재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를 하기 어려움
		※ 신체활동은 앉기, 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들거나 운반하기, 굽히기 등을 의미함			
		질병 및 질환 (5)	양호	5	현재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보통		3	현재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미약		1	현재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 질병,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피부질환, 심장질환, 암, 갑 상선 장애, 간질환 등을 포괄함				
	정신적 근로 능력 (10)	정신 건강 (5)	양호	5	현재 정신적 문제가 없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보통	3	현재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미약			1	현재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 이 큼	
※ 정신적 문제 :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 장애, 공황 장애, 인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진단받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 또는 그 의심증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건제시유에 사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역량표 뒤부분에 체크					
음주 및 약물 중독 (5)		양호	5	현재 음주 또는 약물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이나 근로에 영향이 없음	
	보통	3	현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으며, 단순 근로 나 단시간 근로만 가능함		
	미약	1	현재 아침에 술을 마시는 등 음주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렵거나 근로 에 영향이 큼 (예.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 음주(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의심증상 포함)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과유에 또는 조건제시유에 사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경우 역량표 뒤부분에 체크					
직무 능력 (33)	문제 해결 능력 (6)	업무 이해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간혹 있어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시를 이해하기 어 려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영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내용
의사 소통 및 관계 능력 (9)	문제 처리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큼	
	대인 관계 능력 (3)	상	3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원활하고, 근로에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직장생활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	
		하	1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자주 갈등이 있고, 대화로 해결하지 못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큼	
	감정 조절 능력 (3)	상	3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근로에는 어려움이 없음	
		중	2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 일을 하는 것이 힘들 때가 간혹 있음	
		하	1	스트레스나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할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음	
	의사 소통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종종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	
업무 태도 (6)	성실성 (3)	상	3	지각 또는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출퇴근 등 업무 시간 및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함	
		중	2	가끔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거나,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자주 지각 또는 결근을 하거나,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큼	
	업무 책임성 (3)	상	3	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냄	
		중	2	직장이나 일에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하	1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영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내용	
	업무 수행 능력 (12)	문해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순 근로가 적합함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필기, 메모 등 문해력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움	
		수리 능력 (3)	상	3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사칙연산 등 계산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사칙연산 등 계산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순 근로가 적합함	
			하	1	직장이나 일과 관련하여 사칙연산 등 계산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움	
		컴퓨터 활용 능력 (3)	상	3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원활하지는 않음	
			하	1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움	
		정보 처리 능력 (3)	상	3	정보 검색, 이메일 확인 및 발송, 자료 첨부 및 활용 등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중	2	정보 검색, 이메일 확인 및 발송, 자료 첨부 및 활용 등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원활하지는 않음	
			하	1	정보 검색, 이메일 확인 및 발송, 자료 첨부 및 활용 등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움	
	구직 및 근로 의지 (20)	직업 이력 (10) 근로이력 (5)	일반 노동시장	상	5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및 공공 일자리	중상	4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3년 미만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근로이력 (5)	중	3	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기간 동안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혹은 자영업으로 종사함

영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내용	
			중하	2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공공일자리에 종사함	
			하	1	최근 5년 동안 1년 미만 공공일자리에 종사함	
			일경험 없음	0	최근 5년 동안 일 경험 없음	
		※ 정부 일자리는 자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 인턴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포함 ※ 일반노동시장 경력과 공공일자리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배점이 높은 것으로 체크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 (5)	상	5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 규칙적으로 일함	
			중	3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 불규칙적으로 일하였으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음	
			하	1	지난 3년 중 가장 최근에 일한 일자리에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의 영향을 받음	
			일경험 없음	0	최근 3년 동안 일 경험 없음	
		※ 여기서의 일자리는 일반노동시장과 정부 일자리를 모두 포함함 ※ 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일자리(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한 것으로 봄;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봄				
		근로 의지 (10)	구직 경험 (5)	상	5	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는 편임
중	3			일이 없을 때는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일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편임(수동적)		
하	1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일이 없을 때는 대체로 그냥 씬		
자활 계획 (5)	상		5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있음		
	중		3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으나, 목표를 위한 계획은 없으며 잘 모르겠음		
	하		1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음		
근로 여건 (12)	근로 가능 시간 (6)	근로 가능 시간 (6)	상	6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 가능	
			중	3	1일 4시간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하	1	1일 4시간 미만, 주당 20시간 미만 근로 가능	
	근로 방해 요인 (6)	근로 방해 요인 (6)	상	6	근로방해요인이 없음	
			중상	5	근로방해요인이 1개이며,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로 가능함	
			중	3	근로방해요인이 2-3개이며,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로 가능함	
			하	1	근로방해요인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어,근로가 매우 곤란함	

영역	하위 영역	세부 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내용
					↳ 가지고 있는 근로를 방해하는 요인을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채무과다·신용불량 <input type="checkbox"/> 불안정한 주거 상황 <input type="checkbox"/> 가족 돌봄(아이, 부모, 배우자 등)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어려움(장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 <input type="checkbox"/> 범죄이력 <input type="checkbox"/> 가족갈등 <input type="checkbox"/> 식사하기, 씻기, 옷입기 등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물건 구매, 운동, 병원가기 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방해요인 (
		평가 점수	총 / 100점		
지자체 종합의견	자활 경로	<input type="checkbox"/> 국민취업지원 연계	<input type="checkbox"/> I 유형(생계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II 유형(조건부수급자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자활근로사업 연계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도우미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 3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자활근로 (1일 4시간, 건강 및 양육 등 사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건강 및 양육 등 사정 고려 시)		
	조건 부과 (제시) 유예 검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필요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필요함 ↳ 검토 필요 이유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문제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타 참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